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and Implications of Verdict Reversals
by Courts of Appeal in Criminal Cases

홍영오 · 최이문

KICJ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홍 영 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리학박사

공동연구자

최 이 문 경찰대학교 교수

연구 지원

홍 영 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손 은 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촉조사연구원

심 혜 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이 연 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장 혜 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진 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민 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해 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우 승 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조 수 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우리나라는 제1심에 대한 항소율이 매우 높아서, 2023년에는 항소율이 48.1%로 거의 절반 가까이 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1심에 대한 항소파기율과 상고파기율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나 상고를 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어 다시 항소율이 높아지는 순환구조를 띄게 됩니다. 항소율이 높게 되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부족, 소송의 지연, 법원과 관련 기관의 자원 낭비, 형사사건에서의 형벌 일관성 부족, 판결의 확정 지연, 항소 남용의 우려, 재판 당사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급별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거나 형량이 달라진 재판현상에 대한 심급별 차이와 함의에 대해 종합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법 외적인 요인으로서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판사와 변호사의 경력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2015년 사실심 충실화를 강조한 대법원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항소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소파기율 역시 40% 정도일 정도로 여전히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가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다 광범위한 심급별 판결번복의 법 외적 요인의 영향력 분석 및 축소 방안 수립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8월부터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적응하기에 바쁜 와중에도 공동연구진으로서 연구설계부터 복잡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최이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판사 재직 시의 경험 및 무죄판결 관련 박사논문 경험을 통해 중요한 자문을 해 주신 김상준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며, 방대한 법조인 경력조회를 위한 ‘한국법조인 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권용태 법률신문 국장님을 비롯한 법률신문 관계자분들께도

ii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느 연구보다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조사연구원님, 인턴연구원님, 조사연구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판결문 수집을 해주신 홍영은, 손가은 조사연구원님, 심혜선 인턴연구원님, 수천 명의 법조인 경력조사 및 엄청난 코딩 작업을 수행해 주신 이연제 연구보조원님을 비롯한, 장혜지, 김진백, 김민지, 김해민, 우승제, 조수훈 연구보조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홍 영 오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홍영오·최이문

서론	7
----------	---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13
제3절 연구방법	15
1. 문헌연구	15
2. 공식범죄통계 분석	15
3. 판결문 및 법조인 경력 조사	16
가. 강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16
나. 횡령·배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18
다. 대법원 판례가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영향: 성인지 감수성 판례의 변화	19
4. 자문회의	20

제2장 홍영오·최이문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21
----------------------------	----

제1절 오판과 법관의 심급별 판단차이(판결 번복)에 대한 이론	24
1. 오판에 대한 이론 및 연구동향	24
가. 정의와 유형	24
나. 오판 유형별 발생원인	27
2. 심급별 판단 차이에 대한 이론 및 연구 동향	40

iv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합의에 대한 연구

가. 법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	42
나. 심급별 판단에 대한 이론	50
제2절 판사와 변호사 간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	54
1. 판사와 변호사 간 사회적 자본의 영향	54
2. 전관예우에 관한 연구	55

제3장 홍영오

공식통계 분석

57

제1절 항소율 및 항소파기율 분석	59
1. 항소율 분석	59
가. 제1심 형사공판사건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및 항소율	59
2. 원심파기율 및 상고파기율 분석	65
제2절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수와 무죄율 분석	68
1. 검찰 통계	68
2. 법원 통계	70
가. 제1심 형사공판사건	70
나. 항소심 공판사건	71
제3절 소결	75
1. 항소율 분석	75
2. 무죄율 분석	76

제4장 최이문·홍영오

판결문 분석

77

제1절 강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의 요인에 대한 연구	79
1. 판결문 수집 방법과 내용	79
가. 표집	79
나. 변인구성	80
2. 판결문의 기술적 통계	81

가. 1·2심 법관 및 변호인 정보	81
나. 피고인 및 피해자 정보	88
다. 판결 정보	90
3. 1심과 2심 판결결과 차이	102
가. 심급별 양형의 차이	102
나. 2심에서 추가적 합의가 심급별 차이에 미치는 영향	103
다. 법관의 개인적 특성이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08
라. 변호사의 경험이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20
제2절 형령·배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요인에 대한 연구	128
1. 판결문 수집 방법과 내용	128
가. 표집	128
나. 변인구성	129
2. 판결문의 기술적 통계	130
가. 1·2심 법관 및 변호인 정보	130
나. 피고인 및 피해자 정보	136
다. 판결 정보	138
3. 1심과 2심 판결결과 차이	151
가. 법관의 개인적 특성이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급별 양형의 차이	151
나. 변호사의 개인적 특성이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54
다.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관계가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61
라. 범죄의 특성이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65
제3절 대법원 판례가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영향: 성인지 감수성 판례의 변화	171
1. 판결문 수집 방법과 내용	171
가. 표집	171
나. 변인 구성	173
2. 판결문의 기술적 통계	174
가. 재판정보	174
나. 피고인 및 피해자 정보	177
다. 판결 정보	181
3. 대법원 판례 전후 심급 간 판결 비교	190

가. 유무죄 판단 변화	190
나. 양형 변화	191
다. 재판기간	192
라. 심급별 판단이 달라진 경우와 그 이유	194
마. 대법원 판결 인용의 변화	196
제4절 소결	197
1. 강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요인	197
2. 횡령·배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요인	198
3. 대법원 판례가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영향: 성인지 감수성 판례의 변화	199

제5장 홍영오·최이문

결 론	201
참고문헌	211
Abstract	227

표 차례

〈표 3-1〉 제1심 형사공판사건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및 항소율	60
〈표 3-2〉 제1심 형사공판사건 범죄유형별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및 항소율	62
〈표 3-3〉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항소율	64
〈표 3-4〉 형사공판사건 원심파기율 및 상고파기율	65
〈표 3-5〉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원심파기율	67
〈표 3-6〉 제1심과 제2심 무죄현황	68
〈표 3-7〉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수 및 무죄율	70
〈표 3-8〉 항소심 공판사건 종국처리 인원 중 무죄인원 및 무죄율	72
〈표 3-9〉 항소심 공판사건 종국처리 인원 중 범죄유형별 무죄인원 및 무죄율	74
〈표 4-1〉 변인구성	80
〈표 4-2〉 1심 및 2심 재판장 성별 분포(N = 574)	81
〈표 4-3〉 1심 및 2심 재판장 이전 경력 분포(N = 574)	82
〈표 4-4〉 1심 및 2심 변호사 성별 분포(N = 574)	83
〈표 4-5〉 심급별 변호인(단)에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N = 574)	83
〈표 4-6〉 심급별 변호사 판사·검사 경력 여부(N = 574)	84
〈표 4-7〉 심급별 변호사 이전 경력 분포(N = 574)	85
〈표 4-8〉 심급별 변호인단 내 판사·검사 경력자 존재 여부(N = 574)	86
〈표 4-9〉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치 여부(N = 574)	86
〈표 4-10〉 재판장과 변호사의 판사 경력 중복 여부(N = 574)	87
〈표 4-11〉 재판장과 변호사 간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N = 574)	88
〈표 4-12〉 피고인 연령대 분포(N = 574)	89
〈표 4-13〉 피고인 전과 여부 분포(N = 574)	89
〈표 4-14〉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분포	90
〈표 4-15〉 1심 유죄 여부와 2심 유죄 여부 간 교차분석(N = 575)	92
〈표 4-16〉 1심과 2심의 형량별 판결 변화 교차분석(N = 575)	93
〈표 4-17〉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에 대한 기술통계(N = 572)	95
〈표 4-18〉 1심과 2심 판결문의 길이 차이에 대한 Paired t-검정 결과(N = 각 판결별)	96
〈표 4-19〉 1심 유죄 여부에 따른 2심 선고까지의 기간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97

〈표 4-20〉 1심 및 2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 판단 결과 분포(N = 574)	98
〈표 4-21〉 1심과 2심의 DNA 증거 판단 결과(N = 574)	99
〈표 4-22〉 1심과 2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N = 574)	100
〈표 4-23〉 1심과 2심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N = 574)	100
〈표 4-24〉 위력·무기 제압 등 여부(N = 574)	101
〈표 4-25〉 피해자의 음주 여부(N = 574)	102
〈표 4-26〉 심급별 형량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03
〈표 4-27〉 2심에서 합의 여부의 변화	104
〈표 4-28〉 판결문의 길이	105
〈표 4-29〉 1심-2심 기간(일)에 대한 기술통계(합의 여부별 구분)	105
〈표 4-30〉 1심 및 2심 유죄 여부에 따른 추가 합의 여부(N = 475)	106
〈표 4-31〉 2심 판결결과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7
〈표 4-32〉 2심 실행기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108
〈표 4-33〉 1심 및 2심 재판장 성별 분포	109
〈표 4-34〉 법관의 경력	110
〈표 4-35〉 항소심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일치 여부	110
〈표 4-36〉 항소심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대학교 일치 여부	111
〈표 4-37〉 항소심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동일법원 경험 여부	111
〈표 4-38〉 1심 및 2심 판결문 길이와 항소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대학교 일치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	112
〈표 4-39〉 1심 및 2심 판결문 길이와 항소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경력 중복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	113
〈표 4-40〉 1심 유죄 여부와 2심 유죄 여부 간의 교차분석(항소심 재판장 성별에 따른 결과)	115
〈표 4-41〉 2심에서의 유죄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116
〈표 4-42〉 형량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2심 실행기간: 종속변인)	119
〈표 4-43〉 1심 및 2심 변호인단 내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에 대한 빈도 분석	120
〈표 4-44〉 1심 및 2심 변호인단 내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에 대한 빈도 분석	121
〈표 4-45〉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에 따른 1심 및 2심 판결문 길이 기술통계	122
〈표 4-46〉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에 따른 1심 및 2심 판결문 길이 기술통계	122
〈표 4-47〉 변인구성	129
〈표 4-48〉 1심 및 2심 재판장 성별 분포(N = 754)	130
〈표 4-49〉 1심 및 2심 재판장 이전 경력 분포(N = 754)	131
〈표 4-50〉 1심 및 2심 변호사 성별 분포(N = 754)	132
〈표 4-51〉 심급별 변호사 이전 경력 분포(N = 754)	133

〈표 4-52〉 심급별 변호인단 내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N = 754)	133
〈표 4-53〉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치 여부(N = 754)	134
〈표 4-54〉 재판장과 변호사의 판사 경력 중복 여부 (N = 754)	135
〈표 4-55〉 재판장과 변호사 간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N = 754)	135
〈표 4-56〉 피고인 전과 여부 분포(N = 754)	137
〈표 4-5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포(N = 754)	138
〈표 4-58〉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분포	139
〈표 4-59〉 1심 유죄 여부와 2심 유죄 여부 간 교차분석(N = 754)	141
〈표 4-60〉 1심과 2심의 형량별 판결 변화 교차분석(N = 754)	142
〈표 4-61〉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에 대한 기술통계(N = 603)	144
〈표 4-62〉 1심과 2심 판결문의 길이 차이에 대한 Paired t-검정 결과(N = 각 판결별)	145
〈표 4-63〉 1심 유죄 여부에 따른 2심 선고까지의 기간 차이	146
〈표 4-64〉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피해금액	147
〈표 4-65〉 1심과 2심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N = 754)	149
〈표 4-66〉 배임·횡령 사건 유죄판결 시 고려된 양형인자 및 비율	150
〈표 4-67〉 법관의 경력	152
〈표 4-68〉 1심 판사의 경력이 이후 2심 판결에 미치는 영향	153
〈표 4-69〉 2심 판사 경력과 1심-2심 간 형종 변화 교차표	153
〈표 4-70〉 집단 간 효과 검정(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154
〈표 4-71〉 1심 및 2심 변호인단 전관변호사 유무에 따른 2심 형량 변화	155
〈표 4-72〉 집단 간 효과 검정(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156
〈표 4-73〉 전관변호사의 유무에 따른 1심과 2심 판결 기간 분석 결과	157
〈표 4-74〉 전관 변호사 선정 변화와 형종 변화 교차표	159
〈표 4-75〉 전관 변호사 선정 변화 유형과 심급 간 집행유예 변화	160
〈표 4-76〉 심급별 형량차이(2심 형량-1심 형량)	160
〈표 4-77〉 1심·2심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	161
〈표 4-78〉 1심·2심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출신 대학교 일치 여부	162
〈표 4-79〉 변인구성	173
〈표 4-80〉 사건판결 법원	175
〈표 4-81〉 판결선고 일자	176
〈표 4-82〉 여성 판사 참여 비율	176
〈표 4-83〉 판례군별 피고인 연령	177
〈표 4-84〉 판례군별 피고인 전과여부	178
〈표 4-85〉 판례군별 피해자 연령대	178

x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표 4-86〉 피해자 수	179
〈표 4-87〉 피고인-피해자 관계	180
〈표 4-88〉 양형	181
〈표 4-89〉 판례군별 인용횟수	183
〈표 4-90〉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185
〈표 4-91〉 판례군별 양형	186
〈표 4-92〉 판례군별 2심 재판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와 그 인용 횟수	187
〈표 4-93〉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190
〈표 4-94〉 판례군별 심급 간 유무죄 판단 변화	191
〈표 4-95〉 심급별 판단이 달라진 경우와 그 이유	195
〈표 4-96〉 2024년 판례군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경우와 그 주요 사유	195
〈표 4-97〉 2심에서 유무죄 판단, 판결변화여부에 따른 인용한 대법원 판결수	196
〈표 4-98〉 2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 수 평균 차이	196

[그림 3-1] 제1심 형사공판사건 판결인원수와 항소인원수 추이	61
[그림 3-2]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율 추이	61
[그림 3-3]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항소율	63
[그림 3-4]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항소율 추이	64
[그림 3-5] 형사공판사건 원심파기율 및 상고파기율 추이	66
[그림 3-6]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원심파기율 추이	67
[그림 3-7] 제1심과 제2심 무죄인원 추이	69
[그림 3-8] 형사공판사건 무죄율 추이	71
[그림 3-9] 항소심 공판사건 종국처리 인원 중 무죄인원 및 무죄율 추이	73
[그림 3-10] 항소심 공판사건 종국처리 인원 중 범죄유형별 무죄인원 및 무죄율 추이	75
[그림 4-1] 1심과 2심 실행기간 산점도	94
[그림 4-2] 1심과 2심 실행기간 산점도(전관 유무)	127
[그림 4-3] 1심과 2심 실행기간 산점도	143
[그림 4-4] 범죄피해금액 분포	147
[그림 4-5] 범죄피해자 수 분포	148
[그림 4-6] 1심과 2심 실행기간 산점도(전관 유무)	156
[그림 4-7] 1심과 2심 실행기간 산점도(전관 유무)	161
[그림 4-8] 2018년 판결군에서의 1심과 2심의 형량차이	191
[그림 4-9] 2024년 판결군에서의 1심과 2심의 형량차이	192
[그림 4-10] 판례군별 1심 2심 심급별 유무죄 판단 변화와 1심 판단에서 2심 판단까지의 시간	194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심급제도의 운영방식은 사법시스템 전반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및 재판의 효율성이나 판결의 정당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우리나라는 제1심에 대한 항소파기, 상고파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음. 이로 인해 항소나 상고를 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항소율과 상고율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항소율이 높은 것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부족, 소송의 지연, 법원과 관련 기관의 자원 낭비, 형사사건에서의 형벌 일관성 부족, 판결의 확정 지연, 항소 남용의 우려, 재판 당사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본 연구는 판결문과 법조인 경력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실무적으로 심급별 판단 차이(또는 판결변복)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법 외적인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심급제도의 특성과 한계 그리고 함의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심급별 판결변복 및 오판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봄. 또한, 법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및 법관의 사실인정과 인지적 편향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심급별 판단에 대한 이론 및 판사와 변호사 간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음

2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 공식통계분석

공식통계분석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 및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항소율, 상고율 및 항소파기율, 상고파기율 등 항소 및 판결번복에 대한 통계 및 대검찰청과 법원의 무죄율 통계를 분석함

○ 판결문 조사

항소심에서 판결번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판결문 상의 다양한 요인 및 판사와 변호사(법률신문의 ‘한국법조인대관’ 이용) 간의 다양한 관계에 대해 분석함.

분석 대상 범죄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각각 하나씩 분석하되, 폭력범죄 중에선 강간범죄를, 재산범죄 중에선 경제범죄인 횡령·배임범죄를 선택하여 1심과 2심 판결을 비교하였음. 강간범죄의 자료 수집은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검색을 통해 2020~2021년 판결문 중 547건의 2심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문 총 1,094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횡령·배임범죄는 2023년 한 해 동안 2심 판결이 이루어진 판결문을 검색하여, 1,243건의 판결문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 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요 죄명이 ‘배임’이나 ‘횡령’이 아닌 경우, 또는 판결문에 내용이 부족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판례 등을 제외하고 총 754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이 판결문 각각에 대해 법조인 경력조사는 본 연구원과 MOU를 맺고 있는 「법률신문」의 협조를 받아 ‘한국법조인대관’을 활용하되, 각각의 판결문에 대해 판사는 재판장 1명을, 변호사는 최대 3명까지의 경력을 조사함.

판례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재판결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함. 성인지 감수성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두 건의 주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함. 최종적으로 2018 판례군에 대해 44건의 판결문을, 2024년 판례군은 11건의 판결문을 분석함.

3. 주요 연구내용

○ 항소율 및 항소파기율 현황

범죄유형별로 항소율을 살펴본 본 결과, 강간과 추행의 죄는 2004년 40.0%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 52.1%로 처음으로 50% 대를 넘어섰고, 2023년 60.6%까지 증가하였음. 이와 달리 횡령과 배임의 죄는 2004년 44.8%에서 2009년 47.9%에 이르기까지 4천명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53.5%로 처음으로 50% 대를 넘었고, 다시 증감을 반복하며 2023년에는 59.5%까지 증가하였음

항소주체별 항소율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2008년 71.9%에서 2022년 47.8%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검사의 항소율은 2008년 59.4%에서 2018년 48.3%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51.4%, 2020년 58.3%, 2021년 64.3%, 2022년 63%로 최근 4년간 다소 증가함. 검사의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판결이 엄중하지 않아 검사가 구형한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함.

형사공판사건의 원심파기율을 살펴본 결과, 원심파기율은 2004년 48.2%에서 2017년 31.3%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34.0%로 증가한 이후 2022년 42.8%, 2023년 41.1%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상고파기율은 2004년 5.0%에서 2023년 1.6%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강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 판결차이의 원인 분석 결과

1심과 2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나, 집행유예 여부와 같은 형종보다는 형량의 감소가 관찰되었음. 여러 변인들 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는 2심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재판의 복잡성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음. 합의는 유무죄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량이나 형종 변경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음.

2심 재판장의 성별은 일부 재판 결과에 미미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됨. 재판장이 여성인 경우,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더 높았음. 그러나 이러한 성별 차이는 형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실행 선고

4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변복의 원인과 합의에 대한 연구

를 받은 경우 형량 변화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음

변호인의 전관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전관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에서는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법률적 판단 변화에 전관 변호인의 전문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러나 전관 변호인의 존재가 형종 변경이나 형량 감소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 법관과 변호인 간의 개인적 관계는 재판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사법적 판단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횡령·배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 판결차이의 원인 분석 결과

경제범죄인 횡령·배임범죄에서는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대부분이 2심에서도 유지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의 절반가량이 2심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는 경향을 보인 반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2심에서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법 외적인 요인으로서, 판사 및 변호사의 경력과 출신 배경이 판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1심과 2심 재판결과를 단순히 전관 변호사의 유무만을 고려할 경우 형종 변화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그러나 개별 사건 내에서 1심과 2심에서 전관 변호사의 선임 여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형종 감경 및 집행유예 판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보임. 특히, 1심에서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심에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반대로 1심에서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형종 감경과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이는 단순히 전관 변호사의 유무만으로는 명확한 효과를 찾기 어려웠지만, 같은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전관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을 의미함.

사건 특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앞의 강간범죄와 마찬가지로 양형 감경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 2심에

서 합의된 경우 형량 감경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법원의 형량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법원이 합의를 형량 감경의 주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음을 시사함.

○ 대법원 판례가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영향: 성인지 감수성 판례의 변화

2018년과 2024년 대법원 주요 판결이 항소심에서의 유무죄 판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판례군에서는 주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두드러졌음.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재평가와 새로운 증거 제출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였음. 반면, 2024년 판례군에서는 1심 무죄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이 2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관찰되었음.

판례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2018년과 2024년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력을 완벽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8년 판례는 주로 유죄로 판결된 사건에서 인용되는 반면, 2024년 판례는 무죄판결에서 자주 인용되는 경향이 확인됨. 특히 2018년 판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유죄로 번복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24년 판례는 반대로 1심 유죄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될 때 주로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법원 판례가 단순한 법적 기준을 넘어 사실관계 판단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

4. 정책제언

○ 전체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5년 사실심 충실화를 강조한 대법원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항소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소파기율 역시 40% 정도일 정도로 여전히 높은 편이었음.

이에 형사사건에서의 형벌 일관성 부족, 판결의 확정 지연, 항소 남용의 우려, 재판당사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 및 항소하면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 등 많은 문제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

6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대법원에서는 본 연구의 통계 결과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항소율뿐만 아니라 항소파기율도 여전히 높다는 점과 판결문 분석 결과에서 감경에 주로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현재의 심급제도 운용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임

○ 1심 판결에서 보다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법원의 양형 기준 설정 및 정책적 대응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1심 판결에서 보다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순히 전관 변호사의 유무를 기준으로 할 때 명확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별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전관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선임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전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법적·사회적 인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경제범죄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키워드

※ 판결번복, 오판, 항소율, 항소파기율, 성인지 감수성, 심급제도

제 1 장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변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서 론

홍영오 · 최이문

제1절 | 연구 목적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역할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게 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지 않는 것이다. 잘못된 판결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3번까지 재판의 기회를 부여한 심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항소심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1심의 판결이나 심리가 없었던 것처럼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복심주의), 1심에서 심리된 자료를 토대로 항소심의 심리를 속행할 것인지(속심주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원심에서 나타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절차 및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할 것인지(사후심주의) 등 다를 수 있다(안성수, 2009). 심급제도의 방식, 즉 심급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법시스템 전반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및 재판의 효율성이나 판결의 정당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안성수, 2009).

이와 같이 항소심의 구조 또는 운용방식이 사법시스템의 신뢰 및 재판의 정당성에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항소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제1심에 대한 항소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의 평균인원수는 234,842명, 평균 항소인원수는 85,113명으로 평균 항소율이 36.7%에 이른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40%를 넘을 정도로 높으며, 2023년에는 48.1%로 최근 20년 내 가장 높았다(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최근 들어 항소율이

10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예전보다 더 높아졌지만, 항소율이 높은 문제와 관련하여,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015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2015년 7월 제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기까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 재판사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피라미드형의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당시 심급구조가 높은 항소·상고율로 인해 원통형에 가까웠다고 진단하며, 1심의 충실화, 2심의 사후심적 운용 및 3심의 법률심·정책심으로 전환을 통해 피라미드형의 심급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대법원, 2015.7.9.일자 보도자료).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항소율은 2015년 27.2%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낮은 항소율을 보인 이후 2014년 전까지 30%대에 머무르던 항소율이 2016년 이후에는 오히려 매년 40%를 넘었다.

죄명별로 살펴보면,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최근 20년간 평균 판결인원수는 4473.7명, 항소인원수는 1847.5명으로 평균 항소율은 45.5%에 이르며, 최근에는 2021년 54.7%, 2022년 55.0%, 2023년 60.6%로 매우 높다. 또한 횡령과 배임의 죄의 경우, 최근 20년간 평균 판결인원수는 5177.7명, 항소인원수는 2659.8명으로 평균 항소율은 52.8%, 최근 3년간은 2021년 59.3%, 2022년 59.7%, 2023년 59.5%로 거의 6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이처럼 우리나라는 항소율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항소파기율, 상고파기율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2004년에서 2023년에 이르기까지 최근 20년간 평균 원심파기율은 39.6%에 이르며, 상고파기율은 평균 3.0%에 이른다. 원심파기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48.2%, 2005년 47.7%, 2006년 50.1%로 50% 내외의 원심파기율을 보이다가 2017년 31.3%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였고, 이후에는 2022년 42.8%, 2023년 41.1%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소 주체별로 보면, 검사가 단독으로 항소한 경우 원심 파기율은 2004년에서 2023년에 이르기까지 최근 20년간 평균 20.4%, 피고인이 단독으로 항소하는 경우는 평균 39.8%, 쌍방 항소의 경우는 평균 4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대법원의 ‘2008년~2019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항소율이 각각 80.3%와 63.5%, 이 중 검사항소율은 각각 48.6%와 28.6%

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XIII)-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연구’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 동안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무죄율은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 각각 8.0%와 1.4%, 성범죄는 각각 18.0%와 2.4%로 나타났다(박미숙·서주연·최이문, 2014). 2017년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항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판결 중 1심 파기율은 29.3%(438건/1천495건), 일반 형사 항소심 판결의 1심 파기율은 41.0%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변경된 사례는 25%,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사례는 17.7%, 일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의 양형 변경률은 32.2%이고, 양형 감경률은 25.2%였다.

우리나라는 제1심에 대한 항소파기율과 상고파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음으로 인해 항소나 상고를 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항소율과 상고율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안성수, 2009). 문제는 항소율이 높은 것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부족, 소송의 지연, 법원과 관련 기관의 자원 낭비, 형사사건에서의 형벌 일관성 부족, 판결의 확정 지연, 항소 남용의 우려, 재판 당사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심급별 판단이 반복된 사례 특히, 오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항소심이나 재심에서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증거를 통해 무죄임이 밝혀져 사면을 받는 무죄방면(exoneration) 사례를 유죄오판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창훈과 데이비드 존슨, 2017; 이정원과 이종섭, 2023).

오판을 다룬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오판의 개념을 진실과 판결의 일치 여부가 아닌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 일치 여부(혹은 원심과 재심의 판결 일치 여부)로 정의하였다. 즉 하급심에서의 사실 발견(fact finding)에 근거한 유무죄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경우에 그 하급심의 판결을 오판이라고 보고 있다.

심급별 재판의 판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1심 재판을 ‘오판’의 기준으로 삼는 연구들이 존재(김상준, 2013a, 2013b; 이정원과 이종섭, 2023; 조원철, 2009)하나, 이러한 심급별 차이가 반드시 오판의 기준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창훈과

12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데이비드 존슨(2017) 역시 심급별 판단 차이를 기준으로 1심의 판결이 ‘오판’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과 다를 경우 하급심의 판결이 오판이 되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심급별 판결의 차이를 오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차이만으로 하급심을 오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심급제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해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급심 재판부가 경험이나 연륜이 더 풍부한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심급별 재판부 판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반드시 오판의 기준이 될지는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의사결정은 3심을 거치면서 종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급별 차이와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심급별 차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급심 판단에 기초해 하급심 판단이 ‘오판’이었다고 전제하고 이 차이를 연구(김상준, 2013b; 이정원과 이종섭, 2023)하였다. 1심 대비 상고심 비율은 2.25-2.52%로 매우 희박하며, 원심 파기율은 5.9-6.5%로 매우 제한적이다(허성욱, 2015). 항소기각율은 58%대인데 이러한 기각의 이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으며,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심급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예, 박성훈과 최이문, 2014), 이러한 심급별 차이의 원인과 함의는 종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급별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거나 형량이 달라진 재판현상에 대한 심급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종합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오판 특히 유죄오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유죄오판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목격자 증언, 허위자백, 법과학 증거의 오남용, 수사기관의 부당행위, 부적절한 변호전략, 법의학적 오류 등으로 밝혀졌고(Garrett, 2020; Gould et. al., 2013;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23), 이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Carrett, 2011; Le. et. al., 2023; Mdewed, 2012), 우리나라의 유무죄 판단차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김상준, 2013a, 2013b).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관의 사실인정과정을 중심으로 유죄오판 및 유무죄 판단차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법 외적인 요인으로서 판사와 변호사 간의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판사와 변호사 간의 경력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긴 하나(이지은과 홍석민, 2014), 판사와 변호사 간의 관계를 전직 판사 여부, 대학 동창, 연수원 동기 등에 대해서만 분석한 한계가 있었고, 관련된 연구로 전관예우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황지태 등, 2019)가 있으나 이들 연구는 설문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판결문과 광범위한 법조인 경력을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심급별 판단 차이(또는 판결변복)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심급제도의 특성과 한계 그리고 함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 연구내용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심급별 판결변복 및 오판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심급별 재판의 판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심급별 차이가 반드시 오판의 기준이 될 지에 의문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오판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으로 심급별 판단차이 또는 판결변복이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한 사례가 아닌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변경된 사례 및 형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형량이 감경되거나 가중된 사례를 중심으로 심급별 판단차이 또는 판결변복의 사유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를 심급별 판단차이 또는 판결변복이라고 정의하고 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없어 본 장에서는 기존의 오판에 대한 이론 및 이에 대한 연구동향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 간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으로서, 판사와 변호사 간 사회적 자본의 영향 및 전관예우에 관한 연구를 알아보았다.

14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둘째, 법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및 법관의 사실인정과 인지적 편향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심급별 판결 차이에 대한 공식통계분석을 위해 먼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항소율, 상고율 및 항소파기율, 상고파기율 등 항소 및 판결번복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법원의 무죄율 통계를 분석하였다. 대검찰청과 법원의 무죄율 산출 방식이 차이가 있어 이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넷째, 항소심에서 판결번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판결문 및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에 대한 데이터 셀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범죄는 폭력범죄 중에서는 강간범죄, 재산범죄 중에서는 횡령·배임범죄이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3명 중 재판장을, 변호사는 최대 3명까지의 경력을 조사하였다.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 같이 법관의 사실인정과정 중심이나 판례의 질적 분석보다는 판결문 및 판사와 변호사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양적 분석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섯째, 판례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재판결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 판결결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재판 과정은 범죄 유형, 피고인 및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제출된 증거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므로, 개별 사건을 직접 비교하여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도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 중 해당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1심과 2심 판결 간 차이를 검토하여 성인지감수성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번복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

제3절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판결번복 및 오판에 대한 이론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판결번복에 대한 연구 및 이론보다는 주로 오판에 대한 이론이 주를 이루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판결번복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기보다는 오판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를 분석한 유죄오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유죄오판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비용을 초래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유죄오판의 당사자는 개인적으로 수 십년간 신체적 박탈을 당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University of Michigan, 2022). 또한 실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사회에 남아 재범할 가능성을 높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동시에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게 되며(Huff, 2004), 사법 자원의 낭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에 비해 실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고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무죄오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영미권 국가들에서 무죄오판보다 유죄오판을 더 큰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주로 유죄오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발생원인과 주요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판사와 변호사 간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2. 공식범죄통계 분석

먼저 공식범죄통계상 형사공판사건의 항소율, 항소파기율, 상고파기율을 분석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 및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를 활용하였다.

2004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최근 20년간의 형사공판사건의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및 항소율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범죄유형별 특히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성폭력(강간과 추행의 죄) 및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최근 20년간의 형사공판사건의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및 항소율을 분석하였다.

항소율과 함께 항소심에서의 원심파기율 및 상고파기율 또한 2004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최근 20년간의 통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원심파기율은 피고인인 단독으로 항소한 경우, 검사가 단독으로 항소한 경우 및 쌍방인 항소한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심과 제2심의 형사공판사건의 무죄인원수 및 무죄율 역시 2004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최근 2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죄율에 대한 분석에 있어 대검찰청의 통계와 법원의 통계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검찰청과 법원의 무죄율 산출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 판결문 및 법조인 경력 조사

판결문 및 법조인 경력조사는 먼저 강간범죄와 횡령 및 배임의 죄에 대해 대법원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검색한 후 연구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Casenote pro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수집하되, Casenote pro에 없는 판결문은 신청절차를 거쳐 최대한 수집하도록 노력하였다. 법조인 경력조사는 본 연구원과 MOU를 맺고 있는 「법률신문」의 협조를 받아 '한국법조인대관'을 활용하였다. '한국법조인대관'에 없는 법조인에 대해서는 구글 등 다양한 플랫폼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최대한 찾아보았다.

가. 강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본 연구에서는 심급별 재판 결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성범죄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강간범죄의 1심과 2심 판결을 비교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검색을 통해 2020~2021년 판결문 중 '강간&파기'와 '강간&기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이루어졌다.

대법원 판결문 검색을 통해 ‘강간&파기’ 건은 2020년 989건, 2021년 1,126건, ‘강간 &기각’ 건은 2020년 1,915건, 2021년 1,895건이 검색되었고, 이 중 2심 이상인 판결문을 먼저 추출한 후, 판결 번복, 감경 사건은 전체 사례를 수집 목표로 264건을 수집하였고, 기각된 사건은 번복과 감경사건과의 비교를 위해 무작위로 400건의 사건 판결문을 수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와 죄명이 강간이 아닌 사건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47건의 사건을 추출하였고, 이들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문 총 1,094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와 죄명이 강간이 아닌 사건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47건의 사건을 추출하였고, 이들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문 총 1,094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판결문 분석은 크게 사건정보, 피고인 정보, 피해자 관련 정보, 판결문 정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건정보는 파일명, 사건번호(1심), 사건번호(2심), 1심 양형, 2심 양형, 1심 집행유예 여부, 2심 집행유예 여부, 1심-2심 기간(일), 위력(무기, 제압 등) 여부를, 피고인 정보는 성별, 피고인 전과 여부, 피고인 연령, 반성 여부 (1심), 반성 여부 (2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1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2심), 피해자 관련 정보는 피해자 음주 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1심, 2심), 성적 결정권 판단 (1심, 2심), 성인지 감수성 표현 여부를, 판결문 정보는 1심 판결문 길이(문장), 2심 판결문 길이(문장), 1심 사실인정 (유죄/무죄), 1심 법률적 판단 (유죄/무죄), 2심 사실인정 (유죄/무죄), 2심 법률적 판단 (유죄/무죄), 1심/2심 DNA 증거 판단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Chatgpt를 활용하였고,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 판결문 각각에 대해 법조인 경력조사는 본 연구원과 MOU를 맺고 있는 「법률신문」의 협조를 받아 ‘한국법조인대관’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판결문에 대해 판사는 재판장 1명을, 변호사는 최대 3명까지의 경력을 조사하였다.

법조인 경력은 출신고교 및 대학교, 출신지역,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변호사인 경우 검사 또는 판사경력, 최종직위, 법무법인 소속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일치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대학교 일치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판사 경험 있는 경우)의 경력 중복 여부(같은 시기에 같은 지법에서 일한 경우),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사법(변호사)

시험 합격연도 차이(양수: 판사가 빠른 경우, 음수: 변호사가 빠른 경우) 등을 확인하였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표 4-1> 참조하기 바란다.

나. 횡령·배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본 연구에서는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범죄유형으로서 경제범죄인 배임·횡령죄에 대해서도 심급별 재판 결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배임·횡령죄의 1심과 2심 판결을 비교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검색을 사용하여, '배임'과 '횡령'이라는 키워드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심 판결이 이루어진 판결문을 검색하였다. '배임' '횡령'이라는 키워드로 기간 중 2심이 완결된 총 1,243건의 판결문이 검색되었고, Casenote pro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추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요 죄명이 '배임'이나 '횡령'이 아닌 경우, 또는 판결문에 내용이 부족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판례 등을 제외하고 총 754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판결문과 함께 판결문에 기재된 판사와 변호사의 경력에 대해서는 강간범죄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원과 MOU를 맺고 있는 「법률신문」의 협조를 받아 '한국법조인대관'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판결문의 판사에 대해서는 재판장 1인에 대해서, 변호사는 최대 3명까지의 경력을 조사하였다.

판결문 분석은 크게 사건정보, 피고인 정보, 피해 관련 정보, 판결문 정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건정보는 파일명, 사건번호(1심), 사건번호(2심), 1심 양형, 2심 양형, 1심 집행유예 여부, 2심 집행유예 여부, 1심-2심 기간(일), 위력(무기, 제압 등) 여부를, 피고인 정보는 성별, 피고인 전과 여부, 피고인 연령, 반성 여부 (1심), 반성 여부 (2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1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2심)를 그리고 강간범죄와 달리 횡령·배임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련 정보가 아닌 피해 관련 정보로서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을 조사하였고, 판결문 정보는 1심 판결문 길이(문장), 2심 판결문 길이(문장), 1심 사실인정 (유죄/무죄), 1심 법률적 판단 (유죄/무죄), 2심 사실인정 (유죄/무죄), 2심 법률적 판단 (유죄/무죄), 양형인자(감경·가중) 등을 조사하였다.

법조인 경력은 강간범죄와 동일하게 출신고교 및 대학교, 출신지역,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변호사인 경우 검사 또는 판사경력, 최종 직위, 법무법인 소속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일치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대학교 일치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판사 경험 있는 경우)의 경력 중복 여부(같은 시기에 같은 지법에서 일한 경우),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사법(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차이(양수: 판사가 빠른 경우, 음수: 변호사가 빠른 경우) 등을 확인하였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표 4-47>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대법원 판례가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영향: 성인지 감수성 판례의 변화

본 연구는 새로운 증거의 수집보다는 법적 판단의 기준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중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핵심 개념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두 건의 주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8년 판례군에 대한 판결문은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검색을 통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을 인용한 판결을 2018년 10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검색한 결과, 총 858건이 확인되었다. 연구원에서 판결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Casenote pro를 이용하여, 이 중 1심 판결이 2018년 10월 25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2심 판결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 중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을 인용한 사건만을 선별하였다. 성범죄가 아닌 사건(폭력 등)을 제외한 결과, 49건의 판결문이 추출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요 죄명이 성범죄가 아닌 사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건의 판결문을 2018 판례군으로 분류했다.

2024년 판례군은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검색을 이용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을 인용한 판결은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총 79건이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Casenote pro를 이용하여, 이 중 1심 판결이 2024년 1월 4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2심 판결이 그 이후에 내려진 사건을 선별하였다. 이들 중 성범죄가 아닌 사건을 제외한 결과, 18건이 추출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요 죄명이 성범죄가 아닌 사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건의 판결문을 2024 판례군으로 분류했다.

4. 자문회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확인한 이슈와 판결번복 및 오판 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는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법심리학 전공의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 2 장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변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홍영오 · 최이문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앞의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항소심이나 재심에서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증거를 통해 무죄임이 밝혀져 사면받는 무죄방면(exoneration) 사례를 유죄오판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창훈과 데이비드 존슨, 2017; 이정원과 이종섭, 2022). 특히 인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에서 DNA증거를 통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사건을 재검토하여 그들의 무죄를 입증하여 무죄방면(exoneration)된 사례를 유죄오판사례로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오판을 다룬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오판의 개념을 진실과 판결의 일치 여부가 아닌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 일치 여부(혹은 원심과 재심의 판결 일치 여부)로 정의하여, 하급심에서의 사실 발견(fact finding)에 근거한 유무죄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경우에 그 하급심의 판결을 오판이라고 정의하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상준, 2013; 이정원과 이종섭, 2023).

하지만, 심급별 재판의 판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심급별 차이가 반드시 오판의 기준이 될지에 의문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오판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으로 심급별 판단차이 또는 판결변복이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한 사례가 아닌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변경된 사례 및 형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형량이 감경되거나 가중된 사례를 중심으로 심급별 판단차이 또는 판결변복의 사유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를 심급별 판단차이 또는 판결변복이라고 정의하고 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없어 본 장에서는 기존의 오판에 대한 이론 및 이에 대한 연구동향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1절 | 오판과 법관의 심급별 판단차이(판결 번복)에 대한 이론

1. 오판에 대한 이론 및 연구동향

가. 정의와 유형

재판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오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며, 주로 재판 결과와 자료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오판의 유형은 실제 유무죄의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유죄오판(Wrongful Convictions)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를 유죄오판이라고 한다. 유죄오판의 빈도는 그 정의나 측정방법에 따라 다른데, 미국에서는 약 1-5% 정도로 추정한다(Campbell, 2022). 전미 재심 무죄 기록(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에 따르면, 1989년 이후 3,000명 이상의 무고한 피고인이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음이 DNA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재심을 통해서 밝혀졌다(University of Michigan, 2022).

유죄오판은 부정확한 증거, 잘못된 목격자 증언,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의 비윤리적인 수사 관행이나 행위, 변호인의 부실한 변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Zalman, 2016). 많은 연구에서 유죄오판이 단순히 수사과정에서의 오류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의 오판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적 상황과 시스템에 따라 무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유죄오판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Marvin, 2016; Lan et al., 2023). 특히 미국에서는 무리한 ‘마약과의 전쟁’이 유죄오판을 촉진했으며, 잘못된 고발 절차나 재판 전 절차가 잘못된 유죄 평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Leipold, 2005).

유죄오판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비용을 초래한다. 첫째, 특히 무고한 개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최소 몇 개월에서 수십년

간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며, 풀려난 이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 피해는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심리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여파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했던 3,000명 이상의 무죄로 판명된 수감자들의 경우 약 27,000년 이상의 자유가 부당하게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University of Michigan, 2022).

둘째, 유죄오판은 실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사회에 남아 재범할 가능성을 높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며, 동시에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Huff, 2004). 실제 범죄자는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수사기관은 일단 무고한 사람일지라도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의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이는 범죄자가 반성하지 않고, 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없이 사회에 남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인다(Mungan, 2017).

셋째, 피해자는 범죄의 실질적 정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지속적인 심리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피해자가 다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사법시스템의 역할이 단순히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에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실패로 간주된다(Huff et al., 1996; Roberts & Weathered, 2009).

넷째, 유죄오판은 사법 자원의 낭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소모된 자원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심 절차나 보상 절차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재정 뿐 아니라 억울한 시간을 보낸 개인과 그의 가족, 지역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감시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Scheck et al., 2000; Westervelt & Cook, 2010). 또한, 특정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이 유죄오판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이는 더 큰 사회적 불만과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사법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려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이는 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Gross & O'Brien, 2008; Poveda, 2001; Zalman, 2001).

2) 무죄오판(Wrongful Acquittals)

무죄오판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고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무죄오판보다 유죄오판을 더 큰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무죄오판 역시 중요한 오류로 간주된다. 특히 무죄오판은 사건을 미제로 남게 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Griffith & Roth, 2006).

무죄오판의 원인은 증거 부족, 증인의 부정확한 진술, 법적 절차상의 오류, 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과실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무죄오판이 유죄오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 유죄오판은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로 확인할 수 있지만, 무죄판결은 추가적인 조사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판여부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법 시스템과 법과학은 유죄오판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무죄오판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Lyon et al., 2017; Gould et al., 2013).

서구 사법체계에서는 유죄오판이 무죄오판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영국의 법학자 Blackstone은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보다 열 명의 범죄자가 풀려나는 것이 낫다”는 비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양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개인이 무죄로 간주되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로 판결받아야 한다는 법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Olalere, 2020).

반면, 대중은 유죄오판 뿐 아니라 무죄오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동양 국가의 대중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 통제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Moulin, Xiong et al., 2017). 이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을 중시하고, 범죄자가 사회에서 추가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꺼리는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Markus & Kitayama, 1991). 무죄 추정 원칙과 높은 입증 책임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필수 요소라는 믿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범죄 통제를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려는 요구 역시 무시할 수 없다(Garrett & Mitchell, 2022). Zalman(2016)은 이러한 오판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대중이 유죄오판, 무죄오판 모두를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점에서 형사사법 정책에 독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법 정책이 정의실현과 공공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단순 법적 절차의 개선을 포함해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나. 오판 유형별 발생원인

1) 유죄오판

가) 잘못된 목격자 증언

잘못된 목격자 식별과 증언은 유죄오판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목격자 증언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며,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목격자 증언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유죄오판으로 밝혀진 사건에서 약 72%가 잘못된 목격자 식별에서 이루어졌다는 통계도 존재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New England Innocence Project, 2017)

수사초기 단계에서 목격자 증언은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추가 조사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 미국에서는 라인업과 같은 절차를 통해 목격자를 식별하는데, 과학 수사 기술이 발전한 현재에도 목격자 진술은 법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증거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제임스 앨런은 목격자 증언과 수사기관의 증거은닉으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고 9년을 복역한 후에 무죄로 풀려났다(Fisher & Schreiber, 2017; Brewer & Palmer, 2010).

인간의 기억은 매우 유연하게 재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변형 왜곡될 수 있다. 목격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퍼지 트레이스 이론(fuzzy-trace theory)과 출처 모니터링(source monitoring) 같은 인지적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기억 왜곡은 목격자가 자신도 모르게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나중에는 왜곡된 기억을 실제 사건으로 믿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rainerd & Reyna, 2005; Loftus, 2005).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변호사의 유도 질문은 목격자의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암시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목격자는 자신이 본 범인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잘못된 인터뷰 기법은 구두 진술과 서면 진술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증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Luke, 2017).

잘못된 목격자 증언의 주요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사건 당시의 긴장감, 목격 조건, 시간 경과, 인종 간 식별 오류, 유도 질문, 사건의 중요성, 목격자의 신념 등은 모두 증언 오류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사건의 긴박한 상황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거나, 용의자의 인종이 목격자와 다른 경우, 목격자는 실제 범인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잘못된 신원 확인을 초래하여 유죄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Loftus, 2005; Roediger & McDermott, 1995; Loftus & Palmer, 1974).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요소 역시 목격자가 잘못된 증언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특정 용의자를 암시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목격자는 자신이 본 범인을 실제로 오인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수사 절차는 목격자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특정 용의자를 실제 목격한 범인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증언의 정확성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Wright & McDaid, 1996; Wells et al., 2006; Kassin et al., 200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1984년 Hendricks(Hendricks v. Commonwealth) 판례 이후 잘못된 목격자 증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블라인드 관리’ 방식을 통해 경찰이 피의자를 암시하지 않도록 하거나,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하는 과정을 녹화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포함된다. 또한, 목격자에게 범인이 없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비존재 경고’와,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학적 자문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기억을 평가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목격자 증언의 오류를 줄이고, 유죄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Albright & Garrett, 2021; Launay & Py, 2017; Innocence Project, 2022).

나) 법과학 증거의 오남용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은 다양한 범죄 사건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DNA 분석은 장기 미제 사건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경찰과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특정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대검찰청의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현장 등 DNA DB와

수형인 등 DNA DB의 일치 후 수사재개 건수는 2,670건, 구속피의자 등 DNA DB의 일치 후 수사재개 건수는 4,088건 이르며, 수형인 등 DNA DB 일치자에 대해 수사재개 후 처분한 결과를 보면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약 43.6%에 해당하는 1,163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2024). 이러한 통계는 DNA 기법이 실질적으로 미제 사건의 해결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aferstein, 2018). 예를 들어,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DNA 분석을 통해 밝혀졌고, 2022년에는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에서도 21년 만에 DNA 대조로 피의자가 검거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CCTV는 사건 현장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거짓말 탐지기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며, 지문 감식,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가 잘못 사용되거나 해석될 경우, 오히려 유죄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잘못된 법과학 증거와 그에 대한 해석은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실수와 편견이 작용하는 결과다. 법의학 증거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법의학 조사관이 증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예를 들어, 법의학 조사관은 자신의 분석이 검찰의 주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증거를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DNA 증거가 높아 보이는 정확도를 자랑할지라도, 범행과 무관한 DNA 시료가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이를 사건과 연관 짓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Dror & Hampikian, 2011; Saks & Koehler, 2005). 이러한 오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만의 장귀칭 사건이 있다. 1996년 대만 공군 작전사령부 영내에서 다섯 살 소녀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했는데, 발생한 이 사건에서, 경찰은 장귀칭의 자백을 강압적으로 유도하고, 그의 행위를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로 잘못 해석했다. 결국 장귀칭은 실제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해졌으며, 이는 대만 사법 역사상 대표적인 법과학 해석 오류 사례로 남아 있다(Kukucka & Dror, 2023). 또한, 2004년 마드리드 폭탄 테러 사건에서는 FBI가 잘못된 지문 분석으로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오인하는 일이 발생했고, 머리카락 감정의 오판 사례도 자주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의학적 증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잘못된 해석이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과학 증거 해석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의학 분석자에 대한 무의식적 편향 훈련, 독립적 검토 과정 추가, 블라인드 분석(blind analysis) 방식 도입 등은 유죄오판을 줄이는 중요한 전략이다. 이러한 조치는 법의학적 증거 해석에서 인간의 편향이 개입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법적 판단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Saks & Koehler, 2005; Dror & Hampikian, 2011).

다) 허위자백

허위자백은 오판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여론의 압박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허위자백이란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자백은 배심원과 판사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로 간주되기에 다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허위자백과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오인 지목 진술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2심 판결이 엇갈린 540건의 강력사건 중 약 93.3%가 무죄로 확정된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김상준, 2013a, 2013b). 또한, 허위자백이 유죄오판의 주요 원인이라는 가정 하에 46건의 허위자백 사례를 분석한 이기수(2012)의 연구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폭행(16.0%), 수사관의 기망(10.6%), 그리고 장기간의 조사(10.6%)가 허위자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심리적 압박과 유도성 질문과 같은 비합리적 수사 기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센트럴파크 파이프(Central Park Five)’ 사건은 대표적인 허위자백 사례로, 다섯 명의 청소년이 강압적인 심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하여 이후 진범의 자백과 DNA 증거로 무고함이 입증되기 전까지 장기 복역을 했다. 한국에서도 2000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으나, 2심에서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자백만을 근거로 하는 유죄판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강압적 수사가 허위자백을 유도하여 무고한 사람의 유죄판

결을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Kassin, 2005; Drizin & Leo, 2004).

허위자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자발적, 유도된-순응적 허위자백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허위자백(Voluntary False Confessions)은 개인적 동기나 심리적 이유에서 비롯되며, 유도된 허위자백(Compliant False Confessions)은 경찰의 심문 압박에 의해, 순응적 허위자백은 장시간 심문으로 인한 체력 소진과 혼란으로 발생한다. 강압적 수사는 이러한 허위자백 발생 확률을 높이며, 이는 허위자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내재화된 허위자백(Internalized False Confession)은 암시나 수사기법에 의해 개인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다(Perillo & Kassin, 2011).

특히 미성년자와 정신장애인은 허위자백에 더욱 취약하다. 미성년자는 경찰의 권위에 쉽게 순응하고, 심리적 발달이 미숙하여 강압적 상황에서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정신장애인은 심문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거나 질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허위자백의 위험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심문 과정에서 취약 집단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Redlich, 2007; Cleary, 2017).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심문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을 보장하며, 자백을 물적 증거와 결합하여 평가하는 제도적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시대에 따라 허위자백의 원인도 변화하여, 1990년대의 고문이나 폭행 대신 2000년대에는 회유나 유도신문 등 비물리적 수단이 증가하는 추세다. 허위자백과 편향된 수사가 결합하면 터널 비전과 확증 편향으로 인해 사법적 판단의 공정성이 훼손되므로, 자백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기준이 필요하다(Lassiter, 2010; Leo, 2008).

라) 유죄협상과 합의의 유도

미국과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각각 유죄협상(plea bargaining)과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통해 사건 처리를 효율화하고 있으나, 두 제도 모두 사법 정의와 피고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유죄협상 제도는 재판 절차를 단축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지만, 무고한 피고인들이 경제적 부담이나 검찰의 압박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는 문제를 낳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정한 반성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합의를 강조하게 할 위험이 있다. 미국과 한국 모두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에 치우친 나머지 오판 가능성과 사법 정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유죄협상 제도는 피고인들이 긴 재판 과정과 높은 비용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데, Dan Simon 교수는 이러한 제도가 특히 경제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Simon의 연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재판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유죄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다(Simon, 2012).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검찰이 높은 형량을 제시하며 피고인을 협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피고인의 자발적 결정보다는 검찰의 전략적 압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Kassin & Gudjonsson, 2004; Garrett, 2011).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유죄협상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효율성을 위해 피고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플리바게닝과 같은 유죄협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형량 결정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김웅재, 2021). 최이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반대하거나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할 경우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연구는 301건의 성범죄 사건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처벌 반대와 가해자의 반성이 집행유예 판단에서 90% 이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입증했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거나 가해자의 반성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형량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웅재, 2021).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무고한 피고인도 형량 경감을 위해 형식적 반성이나 합의 시도를 하는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다(김혜경, 2021).

마) 수사기관의 부당행위

오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찰과 검찰의 부당행위로, 이는 강압적 심문, 증거 조작, 증거 은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당행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여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사기관의 성과 중심 문화와 조직적 압박은 특정 용의자를 신속히 유죄로 몰아가는 경향을 강화하며, 이는 고의적인 증거 조작이나 불리한 증거의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이정원과 이종섭, 2023). 이러한 부당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특정 가설에 맞추려는 행동을 촉진하며, 이는 사법 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경찰과 검찰의 부당행위는 터널 비전(tunnel vision)과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을 유발하여, 초기 수사 가설에 부합하는 증거에만 집중하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터널 비전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특정 용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시키며, 이후 증거 해석 및 수사 방법에서 객관성을 잃게 한다(이정원 & 이종섭, 2023). 이러한 편향적 접근은 무죄를 시사할 수 있는 증거를 간과하거나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 국내 연구에서도 터널 비전이 수사 과정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증거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었다(이정원과 이종섭, 2023).

또한, 경찰과 검찰의 부당행위는 심문 과정에서의 강압적 접근을 통해 허위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강압적 심문은 피의자가 장시간 심문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특히 무죄 피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김희은·박준영·김면기, 2024). 국내 연구에 따르면 강압적 심문은 피의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실제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자백을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강압적 수사 방식은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촉진하며, 피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검찰의 증거 은폐 및 선택적 증거 제출은 오판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 수사기관이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유리한 증거만을 법정에 제출하는 행위는 피의자가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정영수, 2022). 국내의 특정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불리한 증거만을 제출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심문 과정의 녹화를 의무화하여 강압적 심문을 방지하고 자백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터널 비전 및 확증 편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개하는 절차적 개선은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고 오판을 예방하는 중요한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재현, 2021, 이상원, 2012).

바) 부적절한 변호전략

부적절한 변호전략은 유죄오판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이는 특히 자원 부족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공공 변호인 시스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공 변호인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과다한 사건을 맡아야 하며, 이로 인해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공공 변호인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Lefstein, 2011; Bright, 2010), 피고인을 위한 충분한 변호 준비 없이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잦다(Heise, 2004; Justice Policy Institute, 2011). 그 결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약화되고 무고한 피고인들이 부적절한 변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높아진다(Lefstein, 2011; Bright, 2010; Heise, 2004).

불충분한 변호가 잘못된 판결로 이어진 사례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Scottsboro Boys” 사건에서 아홉 명의 흑인 청소년들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들이 충분한 증거 수집과 방어 전략을 준비하지 못해 결국 무고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Steiker & Steiker, 2005). 이들의 무죄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부적절한 변호로 인해 오랜 기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또 다른 사례인 “Clarence Earl Gideon” 사건에서 Gideon은 변호인 없이 스스로를 변호했으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후 공공 변호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로 남았다(Langbein, 1979). 이러한 사례들은 변호인의 준비 부족이 무고한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사기관은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갖추고 있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큰 손실

을 입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적인 싸움을 지속하기 어렵다(Garvey, 2000; Alschuler, 1979).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허위자백이나 유죄협상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다(Bibas, 2004). 수사기관은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지속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을 받지만, 피고인은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유죄협상을 수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Dervan & Edkins, 2013).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허위자백과 유죄협상으로 이어지며, 오판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Garvey, 2000; Bibas, 2004).

부적절한 변호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피고인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변호(Freedman, 1994; White, 2001), 부실한 증거 반박(Joy, 2016), 그리고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어 전략이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한다(Zimmerman, 2001).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나 언어적 장벽을 겪는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한 변호전략은 방어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Joy, 2006). 또한, 사건의 구체적 맥락을 무시한 일반적인 방어 전략은 피고인의 무죄 입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Freedman, 1994; White, 2001). 이처럼 부적절한 변호전략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의 경우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Zimmerman, 2002; Joy, 2016).

이와 같이, 부적절한 변호전략은 유죄오판의 중요한 원인으로, 공공 변호 시스템의 자원 부족과 인력 과중이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Lefstein, 2011; Bright, 2010). 피고인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수사기관과의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쉬우며, 자원이 풍부한 수사기관과의 불균형은 허위자백 및 유죄협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Bibas, 2004; Gross, 2013).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변호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피고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Lefstein, 2011; Joy, 2016).

사) 미디어와 대중의 부당한 압력

범죄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와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은 오판을 초래한다. 미디어는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선정적이거나 감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대중의 여론을 자극하고 사건 해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고조시킨다(Greer & McLaughlin, 2010). 이러한 보도 방식은 사건 관련 인물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형성하여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Perloff, 2013). 특히 범죄 사건이 미디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때, 수사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라는 외부 압력에 노출되어 적법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urette, 2011).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높은 사건 해결 압력은 수사관의 터널 비전을 강화하여 사건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초기 가설에 집중하게 하며, 이는 오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rown, 2003).

또한, 대중의 관심과 미디어의 선정주의는 검찰과 사법부의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경우, 검찰은 여론을 의식하여 더욱 강경한 기소 방침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Tonry, 2012). 검찰이 피고인에게 강도 높은 기소를 통해 엄벌을 추진할 경우, 피고인이 충분한 변호를 받지 못하거나 허위자백과 유죄협상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Joy, 2006). 특히 미디어가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룰 경우, 배심원과 판사 역시 피고인의 유죄를 쉽게 확신하게 되어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Kovera, 2002). 이처럼 미디어와 여론의 압력은 검찰과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고, 사건의 공정성을 위협하게 된다(Sunstein, 2003).

검찰과 사법부는 대중의 관심과 미디어의 선정주의로부터 독립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여론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강력 범죄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경우, 사법기관이 여론을 의식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경향이 커진다(Garapon, 1996). 이러한 경향은 사법기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신속한 판결을 내리게 하며, 이는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연구에 따르면 검찰과 사법기관은 여론을 의식한 과도한 기소와 절차 생략을 통해 무고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사법 절차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andes, 1999; Tyler & Huo, 2002).

이와 같은 미디어와 여론의 영향에서 사법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어책이 필요하다. 첫째, 배심원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법적 사실과 증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Kovera & Borgida, 1997). 둘째, 재판 과정에서 미디어 보도 접근을 제한하여 사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Beale, 2006). 셋째, 검찰과 법원이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를 강화하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Tonry, 2012). 이러한 조치는 사법기관이 미디어와 여론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사건을 판단하고 오판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 누적 불이익 프레임워크

누적 불이익 프레임워크는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용의자로 식별된 피의자가 이후 일련의 불이익을 겪으며 점차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초기의 오판이 수사 단계 전반에서 심리적, 제도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누적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며, 결국 피의자가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조한다(Scherr et al., 2020). 이러한 누적 불이익은 수사 초기에 특정 용의자를 목표로 삼은 후, 그 용의자에 맞춘 방식으로 수사와 증거 해석이 진행되면서 발생한다. 초기 판단 오류가 조사 및 법적 절차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피의자가 실질적인 방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Greer & McLaughlin, 2010).

오판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인지적 편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특정 용의자를 지목한 후 “터널 비전”에 빠지기 쉽고, 이는 수사관이 초기 가설에만 집중하며 다른 가능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조장한다(Brown, 2003). 터널 비전은 수사관이 자신의 초기 판단을 지지하는 증거에만 주목하게 하여 무고한 피의자가 유죄로 몰릴 가능성을 높인다. 더불어, 수사관과 검찰은 초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강할 경우 확증 편향에 빠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무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증거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포렌식 분석과 같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편향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Kassin et al., 2013). 특히, 검찰 측에서 증거 해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Greer & McLaughlin, 2010).

제도적 요인 또한 누적 불이익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사건 해결 압력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화시키며, 신속한 유죄판결을 유도할 수 있다(Sunstein, 2003). 검찰이나 법원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자 할 때, 피의자에게 불리한 절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피의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 외부 압력이 강한 사건일수록 법 집행 기관은 실제적 진실을 추구하기보

다는 유죄판결을 목표로 삼게 되어 오판의 가능성을 높인다(Surette, 2011).

누적 불이익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심문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의 표준화를 도입하고, 편향된 수사를 줄이기 위한 심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Scherr et al., 2020). 둘째, 포렌식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독립적 검토를 도입하여 증거 분석의 편향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된다(Kassin et al., 2013). 셋째, 검찰과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죄판결률보다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Greer & McLaughlin, 2010). 이러한 대책들은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누적적 불이익을 줄이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누적 불이익 프레임워크는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편향적 요인과 절차적 문제를 분석하여 무고한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2) 무죄오판

무죄오판이 형사사법시스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유죄인 범죄자가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 형사절차 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자신의 실수를 밝혀내는 것은 수사조직과 재판의 특성상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또한 무죄오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오판의 경우에 특히 성범죄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 무죄 오판의 원인으로 심리적 및 제도적 요인은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지적 편향과 휴리스틱은 무죄오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심원은 DNA, 지문 등 정황 증거를 과소평가하는 반면, 목격자 신원 확인이나 자백과 같은 직접적 증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은 “웰스 효과(Wells Effect)”로 알려져 있으며, 배심원이 정황 증거가 충분히 유죄를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할 수 있다(Heller, 2006). 또한, 배심원이 사건에서 무죄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는 과정인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은 배심원이 정황 증거에만 의존하는 사건에

서 무죄 선고를 내리도록 유도하여 허위 무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Koehler, 1991).

강간 문화는 성폭력 사건에서 배심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강간 문화는 배심원들이 강간 신화를 수용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성폭력 사건을 방어 가능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향을 촉진한다. 특히 피해자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때, 배심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유죄판결을 꺼리게 되며 허위 무죄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Hildebrand & Najdowski, 2015). 이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사 또한 인지적 편향으로 인해 무죄 오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사는 특정 증거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여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기 어려우며, 이는 판결에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Cantone, Foge, Hoopes, 2024). 판사는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를 배제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증거가 재판 중 판사의 무의식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의 제도적 설계와 심리적 편향이 결합되어 잘못된 판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검사의 의사 결정 또한 무죄 오판의 중요한 요인이다. 검사는 사건 초기 평가에서부터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방어적 강화와 같은 인지적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O'Brien, 2009). 검찰이 유죄판결에 유리한 증거를 강조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무시하면서 사법적 공정정보보다 승소 가능성을 우선시할 때 무죄 오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환경은 검찰의 승소 사건 확보라는 제도적 인센티브에 의해 강화되며,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기각되어 실제 범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심원 제도의 구조적 특성도 무죄 오판에 기여할 수 있다. 배심원은 법원의 지시를 무효화할 권한을 가지므로, 그들이 개별적인 편향이나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아 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무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Kadish & Kadish, 1971). 특히, 배심원은 적절한 심리 훈련 없이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이나 외부적 조작에 취약하며, 이는 허위 무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Beloded & Minenko, 2021).

이러한 심리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허위 무죄판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인지 편향에 대한 배심원 교육 강화, 검찰의 관행 개혁, 증거 사용 기준 강화 등은 잘못된 판결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인지력의 한계와 사회적 규범의 영향은 여전히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 심급별 판단 차이에 대한 이론 및 연구 동향

법관의 의사결정 자체는 법심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상급심과 하급심 판사 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법관은 동일한 법적 규범과 사건을 다루고, 심급에 따라 독립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판단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이나 제도적 맥락은 상이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심급별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심급별 차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일반적으로 1심 재판 결과와 2심 재판 결과가 다른 경우,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오판이었음을 가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김상준, 2013a, 2013b; 이정원·이종섭, 2023; 조원철, 2009). 조원철(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살인죄 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사례는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 목격증인의 범인식별 진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 전과 등으로 인해 형성된 불공정한 선입관,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무비판적 수용, 알리바이 주장의 무시, 공범의 허위 진술,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오판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준(2013a, 2013b)의 연구는 항소심에서 1심 유죄판결이 무죄판결로 바뀐 사례, 즉 “무죄취지의 항소심 파기자판” 사례 540건을 분석하여, 심급 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사건의 특징과 주요 요인을 밝혔다. 분석 결과, 성폭력 범죄가 5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명침해 범죄 21.3%, 강도죄 12.2%, 방화죄 4.6%를 차지했으며, 범죄 유형에 따라 심급간 유무죄 판단차이에 영향을 초래한 주요 증거 유형도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생명침해 범죄에서는 정황 증거(53.0%)와 자백(38.3%)이,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허위진술 또는 피해오인진술(77.2%)이, 강도죄에서는 목격자 또는 피해자 지목 진술의 오인(56.1%)이, 방화죄에서는 정황증거의

문제(56.0%)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는 심급 간 판결 변화가 법관의 사실인정 과정과 증거 해석 방식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정원과 이정섭(2023)의 연구는 국내 살인 사건 748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오판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1심과 상급심의 판결 차이를 오판으로 가정했다. 연구 결과, 실제적 무죄 기준으로 원심과 최종심 판결이 달라진 사례는 6건(0.8%)에 불과했으나, 베이지안 관점에서 유죄오판 가능성은 2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법관의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고의 여부 판정에서 오판 가능성이 높았고, 목격자 진술·증언이 중요하게 고려될수록 오판 가능성이 증가했다. 이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보다는 원심에서 적절히 수집된 증언의 증명력을 과소평가한 데 따른 문제로 분석되었다.

반면, 심급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하급심 판결이 오판이고, 상급심 판결이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2심 재판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주로 법적·사실적 오류를 시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거나 법률 적용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증거와 심리를 통해 판단을 보완한다. 1심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2심은 이를 다시 평가하면서 법률적 기준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2심이 반드시 더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1심과 2심의 목적과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에 기반해 보면, 심급별 차이는 재판의 목적과 절차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사건과 구체적인 증거를 최초로 접하게 되고 판결문을 작성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과 함께 증거를 살펴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기록을 살펴보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법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인용하는 경우와 파기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 설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급별 차이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과 상급심 재판부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급심 판결을 오류라고 보고 분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두 판단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 특히 2심 재판부 판단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법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

1) 인지적 편향

가) 확증편향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지지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Wason, 1960; Nickerson, 1998). 이는 다양한 심리학 연구들에서 입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논리적 추론 문제를 제시하고, 그들이 선택한 답변이 자신의 선입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반대 증거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확증편향은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피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Klayman & Ha, 1987).

항소심 판사가 하급심 판결에 대해 가지는 특징에서도 확증편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결을 검토할 때, 자신의 사법 철학이나 이전에 내렸던 판결에 부합하는 해석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그들이 하급심 판결의 오류를 발견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결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할 경우,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하급심 판결의 오류가 쉽게 수정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번복이 발생할 수 있다.

확증편향은 판사들의 판결 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사가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더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증거를 경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향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적 결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앵커링 편향

앵커링 편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처음에 제시된 정보를 너무 중시하여 (anchoring), 이후 판단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을 제대로 교정하지 못하는 인지적 편향이다(Tversky & Kahneman, 1974). 한 연구에서는 법관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무관한 초기 정보(앵커)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조사했다(Englich, Mussweiler, & Strack, 2006). 실험에서 법관들에게 주사위를 굴려 무작위로 정한 숫자를 제시한 후, 이 숫자가 그들이 결정하는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법관들은 무작위로 주어진 숫자에 의해 형량을 더 높거나 낮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전문가들도 무관한 숫자(앵커)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초기 정보가 사법적 판단에 있어 큰 편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앵커링 편향에 따라 항소심 판사는 초기 결정을 평가할 때 하급심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이 잘못된 증거나 논증에 기반했더라도, 항소심 판사는 이러한 실수를 쉽게 배제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한 당사자가 동일한 증거로 재판하는 경우 더 불리해 질 수도 있다.

다) 사후과잉확신 편향

사후과잉확신 편향은 사건 발생 후 결과를 알고 나서 그 결과가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다고 믿는 인지적 편향이다. 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마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판단이나 결정을 더 쉽게 비난하게 된다.

Harley(2007)의 연구는 배심원들이 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후과잉확신 편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제 법정 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 제시되었고, 사건의 증거와 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참가자에게는 사건의 결과, 즉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무죄판결을 받았는지를 미리 알려주었고, 다른 참가자들은 사건의 결과를 모른 채 평가를 진행하였다(Harley, 2007). 연구

결과, 사건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배심원들은 사건의 결과가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다고 믿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는 결과를 모르는 배심원들에 비해 사건의 결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확신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사후과잉확신 편향은 법적 평가 과정에서 초기 사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는 사후과잉확신 편향이 법적 판단에서 과거 사건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후과잉확신 편향에 따라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결을 평가할 때 그 결과가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하급심 판사의 결정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사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위험이 높아진다. 사후과잉확신 편향은 항소심 판사가 하급심 판결을 평가할 때 과거의 결정이 쉽게 예측 가능했다고 믿게 만든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한다. 따라서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결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과잉확신 편향

과잉확신 편향(Overconfidence Bias)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이다. 이는 자신이 내린 결론이나 예측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고,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과잉확신은 의사결정에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Johnson & Fowler, 2011).

Carlson과 Russo(2001)의 연구는 배심원들이 사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잉확신 편향(overconfidence bias)과 사전 결정적 왜곡(predelictional distortion)을 경험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모의 배심원들의 경우 배심원들이 특정한 평결(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초기 경향을 가지게 되면 이후 제시되는 증거를 주로 기존 판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실제 배심원 후보자들이 학생 집단보다 이러한 왜곡을 두 배 이상 심하게 보였으며, 이는 법적 의사결정에서 배심원의 초기 판단이 증거 평가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점점 더 높은 확신을 가지게 되며, 이는 법원이 명시적

으로 증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라고 지시함에도 따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Carlson & Russo, 2001).

과잉확신 편향은 항소심 판사가 하급심 판결을 평가할 때 자신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게 만든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에 맞춰 판단하게 한다. 따라서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사의 결정을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편향은 특히 항소심 판사가 자신의 법적 경험이나 지식에 대한 확신이 클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법적 공정성을 저해하고, 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판결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마) 현상유지 편향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은 사람들이 현재 상태나 기존 결정을 유지하려 하고, 변화를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다(Thaler, Kahneman, & Knetsch, 1992). 이는 변화를 회피하고 새로운 선택이나 변화가 수반하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경향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종종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된다.

Samuelson과 Zeckhauser(1988)의 연구는 현상유지편향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법적 시나리오에서 참가자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지를 평가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기존의 판결이나 결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는 특히 기존의 판결이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경우에 두드러졌다. 연구는 법적 의사결정에서 현상유지편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재판에서도 형사사건의 항소기각율이 민사사건의 항소기각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민사사건이 양 당사자의 주장에 기반하는 반면, 형사사건은 1심 재판과 별다르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상유지편향에 따라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결을 평가할 때 기존 결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을

변복하기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쉽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항소심 판사는 새로운 증거나 논쟁이 제기되더라도 하급심 판결을 변복하기보다는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결을 변복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상유지편향은 항소심 판사의 판단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판결의 변화 가능성이 줄어들고, 기존 결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법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 적절한 변화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도 있다.

바) 가용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은 특정 주제, 개념, 결정 또는 질문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예시에 의존하는 인지적 편향이다(Tversky & Kahneman, 1974). 이 편향은 최근의 사건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실제보다 더 흔하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 휴리스틱은 잘못된 판단과 특정 사건의 가능성에 대한 과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Fox와 Birke(2002)는 가용성 휴리스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한 시나리오에서는 회사의 제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여러 증거를 평가했으며, 일부 참가자에게는 사고의 결과에 대한 강렬하고 기억에 남는 설명을 제공했다. 이러한 생생한 설명은 참가자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책임 할당에 있어서도 편향된 판단을 내리게 했다. 강렬한 이미지나 이야기로 인해 쉽게 기억되는 정보가 실제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Fox & Birke, 2002).

가용성 휴리스틱은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의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심 재판에서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생생한 증언이 처음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판사나 배심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에

서는 이미 한 번 내려진 판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한, 1심 재판의 생생한 정보가 기억에 더 강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 판사들은 1심 판결에 의존하게 되고, 가용성 휴리스틱에 따라 1심 재판의 강렬한 정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사) 제3자효과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는 사람들이 특정 메시지나 미디어 콘텐츠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믿는 인지적 편향이다. 이 편향은 다른 사람들이 메시지의 효과가 크다고 과대평가하게 하고, 자신은 그 영향으로부터 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판단을 평가절하하게 만든다.

Cohen 등 (1988)의 연구는 제3자 효과가 명예훼손 법률과 관련된 배심원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다(Cohen, Mutz, Price, & Gunther, 1988). 연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명예훼손 신문 기사를 노출시키고, 이러한 기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결과는 독자들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 메시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다른 사람들’이 독자 자신과 더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더욱 증폭되었다. 부정적으로 편향된 출처에서 나온 명예훼손 메시지일수록 독자들은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더 강하게 믿었다.

제3자 효과에 따라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사들이 법률 외적인 영향, 특히 외부적 상황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항소심 판사가 자신은 이러한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면역이 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결을 평가할 때 자신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하급심 판사의 판단에 대해 더 비판적이거나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 사법적 과장

사법적 과장(Judicial Overstatement)은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이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말한다(Simon & Scurich, 2013). 이는 판사들이

자신의 결정을 더욱 일관되게 만들고자 하는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판사들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Dan Simon과 Nicholas Scurich의 연구는 사법적 과장이 판사들의 법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연구는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된 논리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향은 판사들이 자신의 판단을 과도하게 확신하게 만들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연구는 법적 판단 과정에서 판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인지적 편향과 그로 인한 왜곡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법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사법적 과장 편향에 따라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사의 판결을 평가할 때 그 판결이 지나치게 정당화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결이 논리적으로 과장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왜곡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항소심 판사가 하급심 판결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그 결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를 철저히 검토하면서, 그 논리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사의 판단이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확신에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판사는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법적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때로는 항소심 판사 역시 자신의 판단에 대해 과도한 확신을 가질 위험이 있다.

2) 정서

법관의 의사결정에 정서가 영향을 미치며, 이는 판결의 공정성과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인지적 편향과 휴리스틱도 정서의 형태에 따라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서는 증거를 인지하고, 주장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antone et al., 2024). 또한 정서의 영향력을 부정하더라도 인간의 판단에는 자연스럽게 정서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Eren과 Mocan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 결과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판사의 감정 상태가 더 가혹한 형량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스포츠 팀과 연관이 있는 경우 혹은 피고인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Eren & Mocan, 2018). 이러한 결과는 감정이 의사결정의 강력한 동인이며, 때로는 긍정적, 때로는 부정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Lerner et al., 2015). Ugazio 등은 분노와 혐오 같은 감정이 상황에 따라 도덕적 허용성을 다르게 평가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감정이 동기적 차원에서 도덕적 판단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Ugazio et al., 2012).

법적 맥락에서 감정은 정보 처리 전략에 영향을 미쳐 판단이 감정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기울게 하고, 의사결정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Feigenson & Park, 2006). 감정의 영향은 해석, 판단, 추론과 같은 고차원적 인지로 확장되며, 부수적 감정과 필수적 감정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Blanchette & Richards, 2010).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대법원에서 실시된 구두 변론 중 판사 언어의 감정적 내용이 사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언어는 특정 측면에 유리한 판결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lack et al., 2011). 법의 현상학적 접근법은 감정이 직관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윤리적 판단을 이끌며, 법체계가 초법적 가치 판단에 열려 있음을 강조한다(Haenni, 2012). 마지막으로, Wiener 등은 의사결정 모델에 감정적 반응을 통합하면 감정이 법적 과정에 미치는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판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Wiener et al., 2006).

이러한 감정의 역할을 인식하여 미국의 사법 교육 프로그램은 판사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심리학적 통찰을 포함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판결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Cantone et al., 2024). 감정은 사법적 공정성에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면 판결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Elek, 2019).

3) 개인적 특성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법관의 성격, 지역적 특성, 정치적 신념, 학연, 지연 등이다(Carvacho et al., 2022; Rachlinski & Wistrich, 2017).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은 바로 법관과 변호사의 학연이나 같이 근무한 경험이다.

최한수(2021)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할 가능성 즉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전직 판사나 검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두 집단 사이의 집행유예 선고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기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318명의 피고인과 이들을 대리한 1,306명의 변호사의 경력 정보를 통해 양형 결정 과정에 전관예우가 실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 집행유예의 선고확률이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언론 보도와 같은 외부 감시가 존재하는 경우 이 효과가 희석됨을 알 수 있었다.

나. 심급별 판단에 대한 이론

법관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보편적인 심리학 이론에 더해 본 장에서는 법률적인 절차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항소심 법관이 하급심 재판 결과를 인용하거나 변경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론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중 처리 모형

1심 재판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Kahneman과 Tversky의 이중 처리 모델(dual process model)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는 두 가지 주요 체계로 이루어진다. 체계 1(System 1)은 직관적이고 신속한 사고로, 감정과 직감에 기반해 이루어지며 빠른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체계 2(System 2)는 느리고 논리적인 사고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특징으로 한다(Kahneman, 2011).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검토할 때 이 두 사고 체계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체계 1 사고는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처음 접할 때 발생하는 초기 반응을 설명한다. 1심 판결은 이미 사법적 심리와 법적 검토를 거쳐 나온 결과이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직관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Kahneman과 Tversk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초기 정보를 정박점(anchor)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후속 결정을 내리는 정박 효과(anchoring effect)를 보인다(Tversky & Kahneman, 1974). 따라서 항소심 판사들은 1심 판결을 초기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체계 2 사고는 1심 판결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재평가 과정으로 설명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논리적 근거, 증거의 신뢰성, 그리고 법률 해석 등을 체계 2 사고를 통해 깊이 있게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절차적 오류가 밝혀지면 항소심 판결은 기존 결론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Kahneman, 2011). 그러나 체계 2가 작동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정박점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초기 판단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노력이 크기 때문이며, 체계 2는 정박 효과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 2 사고에서도 인지적 편향이 영향을 미친다.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설명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로 이를 반박하는 증거는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Nickerson, 1998).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강력한 증거에 기반한 것이라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되풀이하거나 지지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체계 2 사고가 편향된 결론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판결을 반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적 책임감 역시 체계 2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초기 결정을 반복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심리적 부담이 수반되며, 특히 법적 결정을 다룰 때 이러한 책임감은 재판부가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Kahneman, 2011). 이는 항소심 판사들이 체계 2 사고를 통해 1심 판결을 분석적으로 검토하면서도, 1심 판결을 반복하는 데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Kahneman과 Tversky의 이중 과정 모델을 적용해 볼 때, 항소심 재판부는 초기의 체계 1 사고로 인해 1심 판결을 수용하고 이를 정박점으로 삼아 판단을 시작한다. 이후 체계 2 사고가 작용하면서 기존 판단을 분석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정박 효과와 확증 편향, 사법적 책임감 등이 결합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중 과정 모델은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며, 사법적 결정 과정에서 인지적 요인과 책임감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준다.

2) 전략적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라도 서로 다른 전략을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성범죄 재판에서 두드러진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초기 심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할 때, 1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건 해결에 있어 합의를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서 합의가 가져오는 안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김혜정, 2018).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인자로 작용한다. 이는 1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감형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법원의 판단에 근거한다(최이문, 2018). 이러한 전략은 법적 처벌과 사회적 재통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재판부의 의도를 반영한다. 반대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차이로 인해 1심과 2심 간에는 유무죄보다는 형량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사건의 합법성과 형량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형량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2심에서는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했던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거나, 반대로 1심에서 형량이 과도했다고 판단되면 감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량 조정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사회적 정의를 함께 고려한 결과이며, 사법부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사건에 적합한 형벌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3) 계층구조 모형

사법 계층 구조에서 상위 법원으로 올라갈수록 판사의 개인적인 정책 선호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이론이 있다. 이는 하급심에서 판결이 주로 법적 및 사건별 요인에 좌우되는 반면, 상급 법원에서는 이념적이고 정책적인 결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Zorn & Bowie, 2007).

중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국유기업은 상급 법원에서, 민간기업은 하급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위계 구조나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와 같은 외부 요인이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Wang, 2014).

판사들은 종종 자신의 이념적 선호에 부합하는 판례를 선호하며, 이로 인해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판사들이 동일한 결과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에 명확히 드러난다(Niblett & Yoon, 2014).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생명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객관적인 법률 해석보다 판사의 개인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주관성은 하급 법원과 상급 법원 간 판결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Moabelo, 2014).

4) 평가수준모형(Construal Level Theory(CLT))

평가수준 모형은 사람들이 사건이나 사물을 심리적으로 가까이 또는 멀리 두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Trope & Liberman, 2010). CLT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예: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인식하는 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은 법원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처음으로 접하고, 증인, 증거, 피고인의 태도 등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세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의 기록을 검토하여 판결의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하므로, 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세부적인 요소보다는 법적 원칙과 추상적 규범에 중점을 두어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하급심은 첫째, 세부사항을 초점을 맞추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처음으로 접하고, 증인, 증거, 피고인의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낮은 수준의 해석과 일치한다. 평가수준모형을 적용하면 1심법원은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며 주로 증인과 물리적 증거에 의존할 것이다. 이 절차에는 각각의 증거에 대한 신빙성과 관련성을 최초로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평가수준 모형에 근거하면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지적 편향이나 선입견의 영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는데, 법률의 이념이나 추상적인 원칙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적인 편견이 줄어드는 편견 부식(Bias Erosio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Haire, Lindquist, & Songer, 2003). 사법체계의 위계성은 하나의 사건을 사실관계 혹은 추상적인 법률 원칙 중 중요도를 변경함으로써, 상급심이 법률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2절 | 판사와 변호사 간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

1. 판사와 변호사 간 사회적 자본의 영향

판사와 변호사 간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없으나, 이지은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이지은과 홍석민(2014)의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있다.

이지은과 홍석민(2014)의 연구는 판사와 변호인 간의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전관예우나 법조계의 사회적 관계가 법적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인과 판사 간의 관계가 판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414개의 판결문을 분석하되,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분석하여 총 594개의 표본 분석)을

하였으며, 변호인과 판사의 사회적 관계(전직 판사 여부, 대학 동창, 연수원 동기 등)와 판결 내용(유무죄, 형량, 구속 여부 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변호인이 전직 판사일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더 높고, 구속될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변호인과 판사 간의 대학 동창이나 연수원 동기 등의 관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죄판결 사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판결 결정은 주로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유죄판결의 이유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를 전직 판사 여부, 대학 동창, 연수원 동기만으로 구체화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2. 전관예우에 관한 연구

판사와 변호사 간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다루진 않았으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2018)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법조직역 종사자(판사, 검사, 법원과 검찰의 일반직원, 변호사 및 변호사 사무원)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황지태 등(2019)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II):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변호사들과 소송외인들(변호사 선임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관예우 경험을 분석하였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2018)의 연구에서는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율은 일반국민의 41.9%였으며, 법조직역 종사자 중에서는 변호사사무원이 7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변호사가 75.8%였다. 이에 비해 검사는 42.9%, 판사는 23.2%만이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황지태 등(2019)의 연구에서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사례 경험률은 최근 10년 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1.8%, 5년 내 20.6%, 1년 이내 5.6%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변호사의 77.7%, 여성 변호사의 78.1%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81.8%로 가장 높았다. 또한 변호사 출신별로 살펴보면,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는 비율이 79.7%로

56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변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가장 높았다. 또한 의뢰인들의 조사에서는 의뢰인의 95.1%가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의 총 90%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떤 정도로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조인 특히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 및 변호사들이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가 소송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제 3 장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변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공식통계 분석

홍 영 오

제1절 | 항소율 및 항소파기율 분석

1. 항소율 분석

가. 제1심 형사공판사건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및 항소율

먼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을 활용하여,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및 항소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판결인원수는 2004년 219,669명에서 2023년 216,434명에 이르기까지 2015년 346,513명으로 30만명 대를 넘은 해와 2006년 192,772명으로 20만명 대에 이르지 못한 두 해를 제외하고는 20만명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에도 20만명 초반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항소인원수는 2004년 72,059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에 104,755명, 2017년 100,680명으로 10만명을 넘는 이후 2018년부터 최근까지는 9만명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 다시 104,099명으로 10만명을 넘었다.

항소율은 2004년 32.8%에서 2014년 38.6%로 20%와 30%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2015년 항소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비판으로,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015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2015년 7월 제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기까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다양한 실현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27.2%로 감소한 이후 2016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4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 41.6% 이후 2023년 48.1%에 이르기까지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

60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고 있다. 즉 2023년에는 판결인원의 거의 절반 가량이 항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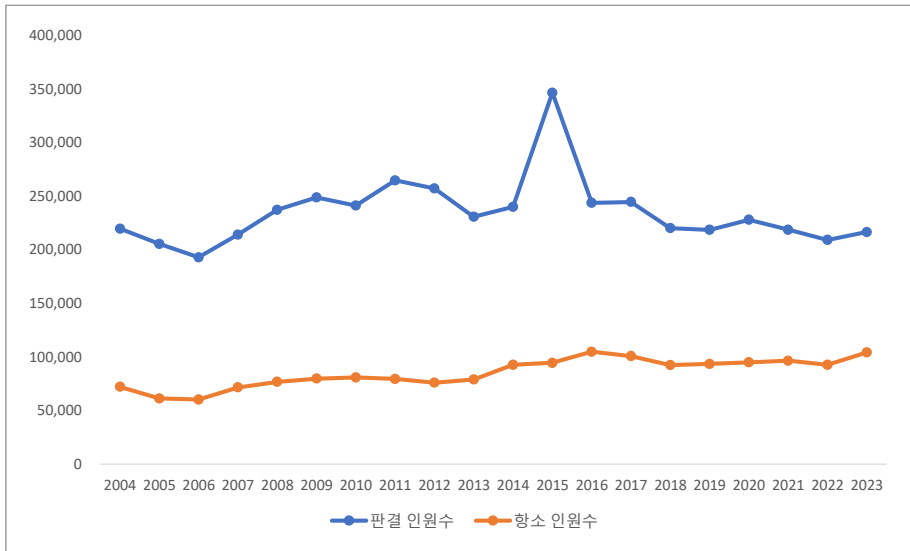
▶▶▶ <표 3-1> 제1심 형사공판사건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및 항소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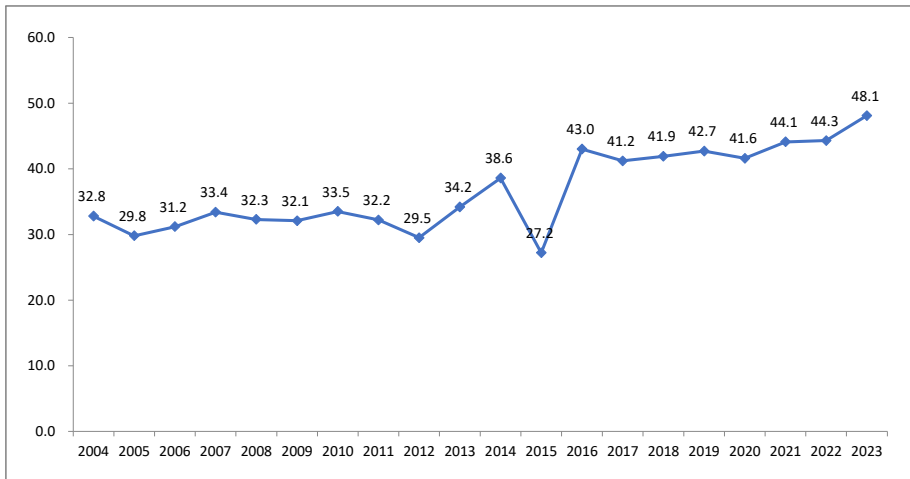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항소율
2004	219,669	72,059	32.8
2005	205,402	61,132	29.8
2006	192,772	60,139	31.2
2007	214,005	71,454	33.4
2008	237,234	76,711	32.3
2009	248,704	79,717	32.1
2010	241,105	80,794	33.5
2011	264,619	79,421	32.2
2012	257,091	75,896	29.5
2013	230,691	78,886	34.2
2014	239,960	92,624	38.6
2015	346,513	94,366	27.2
2016	243,781	104,755	43.0
2017	244,489	100,680	41.2
2018	220,123	92,267	41.9
2019	218,510	93,369	42.7
2020	227,920	94,863	41.6
2021	218,648	96,419	44.1
2022	209,166	92,602	44.3
2023	216,434	104,099	48.1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 [그림 3-1] 제1심 형사공판사건 판결인원수와 항소인원수 추이



» [그림 3-2]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율 추이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및 항소율을 범죄유형별, 특히 강간과 추행의 죄와 횡령과 배임의 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판결인원수는 2004년 1,716명에서 2013년 2,904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다소 증감이 반복되긴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037명으로 급증한

62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이후 2023년 6,240명에 이르기까지 역시 증감을 반복하긴 하다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소인원수 역시 2004년 687명에서 2023년 3,780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항소율은 2004년 40.0%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 52.1%로 처음으로 50% 대를 넘어섰다가 2023년 60.6%까지 증가하였다.

횡령과 배임의 죄의 경우, 판결인원수는 2004년 5,284명에서 2017년 5,309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5~6천명 대에서 증감이 반복되다가 2018년 4,984명으로 처음으로 4천명대를 보이다가 2021년 3,967명, 2022년 3,132명, 2023년 3,316명으로 최근 3년간은 3천명대를 보이고 있다. 항소인원수 역시 2004년 2,368명에서 2023년 1,974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항소율은 2004년 44.8%에서 2009년 47.9%에 이르기까지 4천명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53.5%로 처음으로 50% 대를 넘어섰다가 증감을 반복하며 2023년에는 59.5%까지 증가하였다.

즉, 강간과 추행의 죄는 2004년 이후 판결인원수 및 항소인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항소율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3년에는 60.6%까지 높았다. 이와 달리 횡령과 배임의 죄는 2004년 이후 판결인원수 및 항소인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항소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59.5%로 높았다.

▶▶▶ <표 3-2> 제1심 형사공판사건 범죄유형별 판결인원수, 항소인원수 및 항소율

(단위: 명, %)

	강간과 추행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판결 인원수	항소 인원수	항소율	판결 인원수	항소 인원수	항소율
2004	1716	687	40.0	5284	2368	44.8
2005	1706	606	35.5	5203	2338	44.8
2006	1765	674	38.2	6089	2873	47.2
2007	1944	750	38.6	5292	2529	47.8
2008	2062	763	37.0	5659	2661	47.0
2009	1888	733	38.8	6141	2940	47.9
2010	1958	860	43.9	6038	3230	53.5
2011	1966	906	46.1	5502	2885	52.4
2012	2188	965	44.1	5041	2657	52.7
2013	2904	1175	40.5	5376	2903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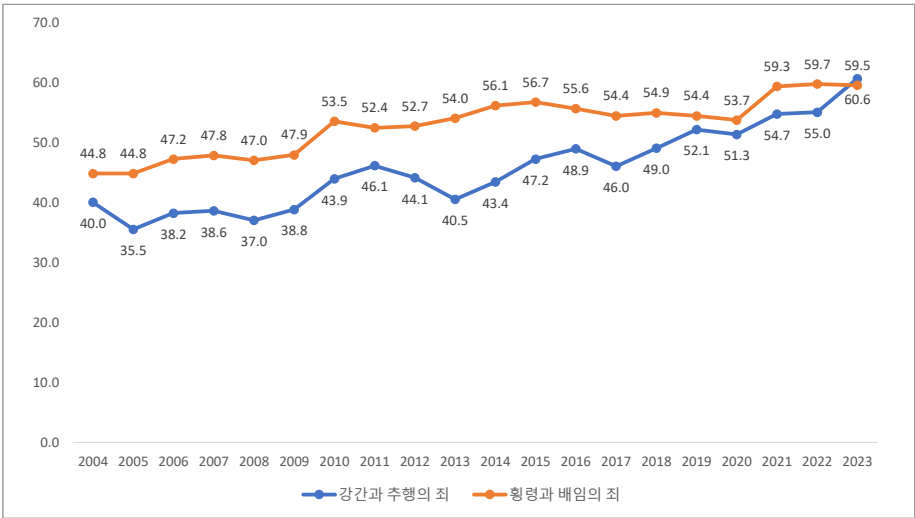
» **〈표 3-2〉의 계속**

	강간과 추행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판결 인원수	항소 인원수	항소율	판결 인원수	항소 인원수	항소율
2014	5037	2188	43.4	6159	3454	56.1
2015	5136	2425	47.2	5978	3389	56.7
2016	5320	2599	48.9	5951	2211	55.6
2017	5553	2592	46.0	5309	2886	54.4
2018	5826	2853	49.0	4984	2736	54.9
2019	5677	2955	52.1	4730	2575	54.4
2020	5781	2963	51.3	4403	2364	53.7
2021	5751	3144	54.7	3967	2352	59.3
2022	6055	3332	55.0	3132	1871	59.7
2023	6240	3780	60.6	3316	1974	59.5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 **〔그림 3-3〕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항소율**

(단위: %)



항소주체별 항소율을 살펴보았다. 피고인의 항소는 2008년 71.9%에서 2022년 47.8%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검사의 항소율은 2008년 59.4%에서 2018년 48.3%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

64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기는 하나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51.4%, 2020년 58.3%, 2021년 64.3%, 2022년 63%로 최근 4년간 다소 증가하였다. 검사의 항소율이 높다는 것이 판결이 엄중하지 않아 검사가 구형한 것에 비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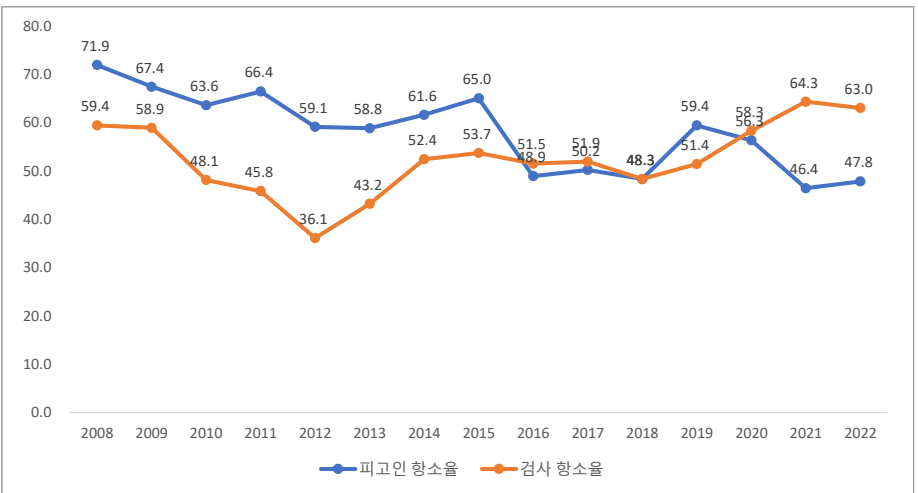
▶▶ <표 3-3>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항소율

(단위: %)

연도	피고인 항소율	검사 항소율
2008	71.9	59.4
2009	67.4	58.9
2010	63.6	48.1
2011	66.4	45.8
2012	59.1	36.1
2013	58.8	43.2
2014	61.6	52.4
2015	65.0	53.7
2016	48.9	51.5
2017	50.2	51.9
2018	48.3	48.3
2019	59.4	51.4
2020	56.3	58.3
2021	46.4	64.3
2022	47.8	63.0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 [그림 3-4]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항소율 추이



2. 원심파기율 및 상고파기율 분석

최근 20년간의 원심파기율 및 상고파기율¹⁾을 살펴보았다. 먼저 원심파기율은 2004년 48.2%에서 2017년 31.3%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34.0%로 증가한 이후 2022년 42.8%, 2023년 41.1%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고파기율은 2004년 5.0%에서 2023년 1.6%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3-4> 형사공판사건 원심파기율 및 상고파기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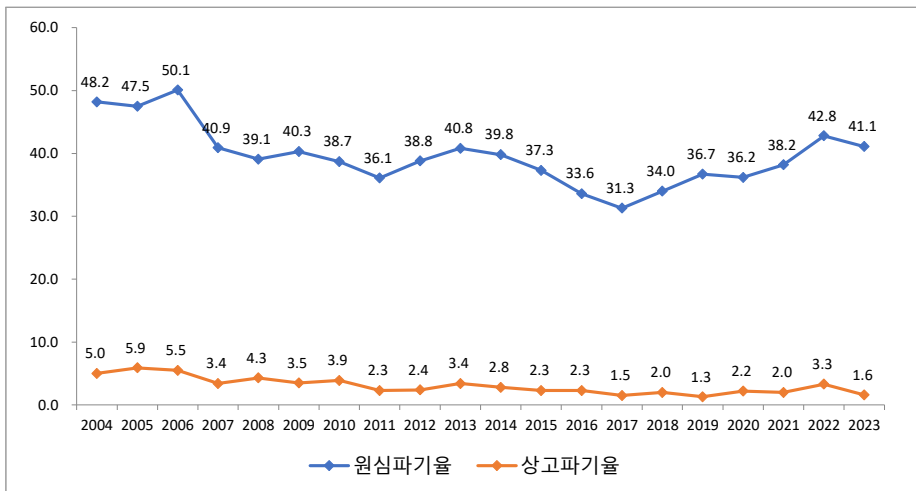
연도	원심파기율	상고파기율
2004	48.2	5.0
2005	47.5	5.9
2006	50.1	5.5
2007	40.9	3.4
2008	39.1	4.3
2009	40.3	3.5
2010	38.7	3.9
2011	36.1	2.3
2012	38.8	2.4
2013	40.8	3.4
2014	39.8	2.8
2015	37.3	2.3
2016	33.6	2.3
2017	31.3	1.5
2018	34.0	2.0
2019	36.7	1.3
2020	36.2	2.2
2021	38.2	2.0
2022	42.8	3.3
2023	41.1	1.6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1) 파기율(%) = 파기인원/(판결인원 + 상고기각결정인원) X 100

* 판결(기각)로 처리되던 다수의 사건의 처리형식이 대법원 2010.4.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상고기각결정으로 변경되어, 2010년 이후의 파기율은 이 공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정함

» [그림 3-5] 형사공판사건 원심파기율 및 상고파기율 추이



다음은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원심파기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피고인 단독으로 항소한 경우의 원심파기율은 2004년 45.9%에서 2023년 41.0%에 이르기까지 3~4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3.8% 이후에는 2022년 41.6%, 2023년 41.0%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사가 단독으로 항소한 경우에는 2004년 25.2%에서 2023년 22.1%에 이르기까지 1~2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9.8%에서 2021년 18.9%에 이르기까지 10%대에 머무르다가 2022년 28.2%, 2023년 22.1%로 최근 2년간 다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2004년 51.3%에서 2006년 51.1%로 50%대를 유지하다가 2007년 46.0%로 감소한 이후 2017년의 39.0%를 제외하고는 4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22년 48.9%, 2023년 48.5%로 최근 2년간은 4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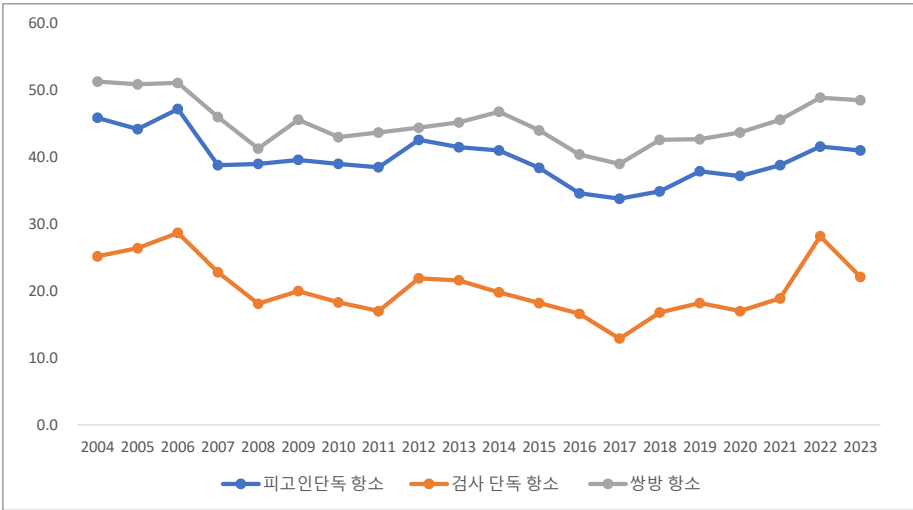
» **〈표 3-5〉**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원심파기율

(단위: %)

연도	원심파기율		
	피고인단독 항소	검사 단독 항소	쌍방 항소
2004	45.9	25.2	51.3
2005	44.2	26.4	50.9
2006	47.2	28.7	51.1
2007	38.8	22.8	46.0
2008	39.0	18.1	41.3
2009	39.6	20.0	45.6
2010	39.0	18.3	43.0
2011	38.5	17.0	43.7
2012	42.6	21.9	44.4
2013	41.5	21.6	45.2
2014	41.0	19.8	46.8
2015	38.4	18.2	44.0
2016	34.6	16.6	40.4
2017	33.8	12.9	39.0
2018	34.9	16.8	42.6
2019	37.9	18.2	42.7
2020	37.2	17.0	43.7
2021	38.8	18.9	45.6
2022	41.6	28.2	48.9
2023	41.0	22.1	48.5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 **〔그림 3-6〕** 형사공판사건 항소주체별 원심파기율 추이



제2절 |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수와 무죄율 분석

1. 검찰 통계

형사재판의 심급별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의 법원의 무죄율 통계에는 재심사건 결과도 포함되어 있는 데 비해 검찰의 무죄율 통계에는 재심사건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심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검찰의 통계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최근 20년간 1%를 넘지 않았다. 다만, 2004년 0.16%에서 2021년 0.99%, 2022년 0.94%, 2023년 0.92%에 이르기까지 연도별로 증감이 반복되긴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0.9% 대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제2심의 무죄율은 1~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27%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01%, 2019년 2.18%를 제외하고는 모두 1%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0년 1.49%, 2021년 1.47%, 2022년 1.56%, 2023년 1.38%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표 3-6> 제1심과 제2심 무죄현황

(단위: 명, %)

	제1심무죄					제2심무죄			
	계	무죄율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계	무죄율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2004	2,265	0.16	253	850	1,162	751	1.27	96	655
2005	2,158	0.18	195	829	1,134	848	1.51	91	757
2006	2,336	0.21	160	949	1,227	891	1.76	89	802
2007	3,160	0.26	165	1,400	1,595	1,112	1.87	110	1,002
2008	4,003	0.30	184	1,774	2,045	1,165	1.81	71	1,094
2009	4,587	0.37	223	2,027	2,337	1,252	1.84	102	1,150
2010	5,420	0.49	190	2,274	2,956	1,203	1.72	110	1,093
2011	5,772	0.63	163	2,187	3,422	1,145	1.70	87	1,058
2012	5,395	0.57	201	2,339	2,855	1,140	1.83	115	1,025
2013	5,003	0.52	143	2,175	2,685	1,260	2.01	138	1,122
2014	5,264	0.56	194	2,533	2,537	1,188	1.78	131	1,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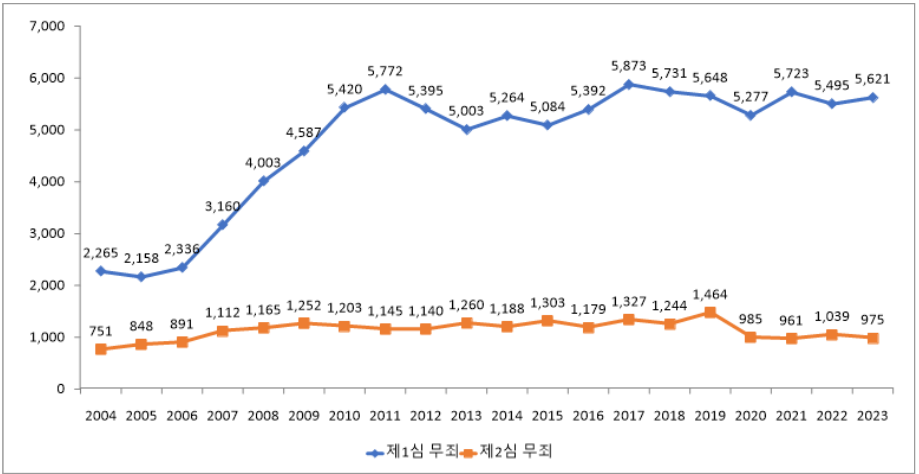
▶▶▶ <표 3-6>의 계속

	제1심무죄					제2심무죄			
	계	무죄율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계	무죄율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2015	5,084	0.58	176	2,669	2,239	1,303	1.72	168	1,135
2016	5,392	0.59	170	2,839	2,383	1,179	1.47	128	1,051
2017	5,873	0.71	211	3,073	2,589	1,327	1.58	134	1,193
2018	5,731	0.79	135	3,068	2,528	1,244	1.69	105	1,139
2019	5,648	0.82	145	3,237	2,266	1,464	2.18	128	1,336
2020	5,277	0.81	136	2,907	2,234	985	1.49	101	884
2021	5,723	0.99	109	3,112	2,502	961	1.47	98	863
2022	5,495	0.94	118	3,175	2,202	1,039	1.56	94	945
2023	5,621	0.92	123	3,193	2,305	975	1.38	90	885

출처: e-나라지표(검찰통계시스템)

- 1심 무죄율: (1심 무죄선고인원/1심 전체선고인원)*100
(‘1심 전체선고인원’은 구공판과 구약식 인원을 합한 것이며 면소, 공소기각은 포함하지 않음)
- 2심 무죄율: (2심 무죄선고인원/2심 전체선고인원)*100
(2심 무죄율의 무죄인원 산출시 1심 무죄 선고, 검사 항소후 2심에서 항소 기각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무죄율에 일부 무죄는 포함하지 않음
- 법원 무죄율 통계(사법연감)에는 재심사건 결과도 포함하고 있으나, 검찰 통계에는 제외됨

▶▶▶ [그림 3-7] 제1심과 제2심 무죄인원 추이



2. 법원 통계

가. 제1심 형사공판사건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수와 무죄율을 살펴보았다. 최근 20년간 무죄인원수는 2004년 2,469명에서 2009년에 6,240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21,229명, 2011년 47,947명, 2012년 60,399명으로 평년과 달리 급증하였다. 이후 2013년 32,543명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20년 6,267명에 이르기까지 감소한 이후 2021년 7,090명, 2022년 7,016명, 2023년 7,097명으로 다시 7천명 대로 증가하였다. 무죄율은 2004년 1.1%에서 2008년 1.7%에 이르기까지 1% 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의 8.8%에서 2015년 5.1%에 이르기까지 평년에 비해 무죄율이 무척 높았던 해를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는 3%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0년 즈음에 무죄율이 급증한 이유는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2011년 도로법, 식품위생법, 약사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은 사례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2008년 이전에는 1% 대를 유지하였고, 최근에는 3%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3-7〉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수 및 무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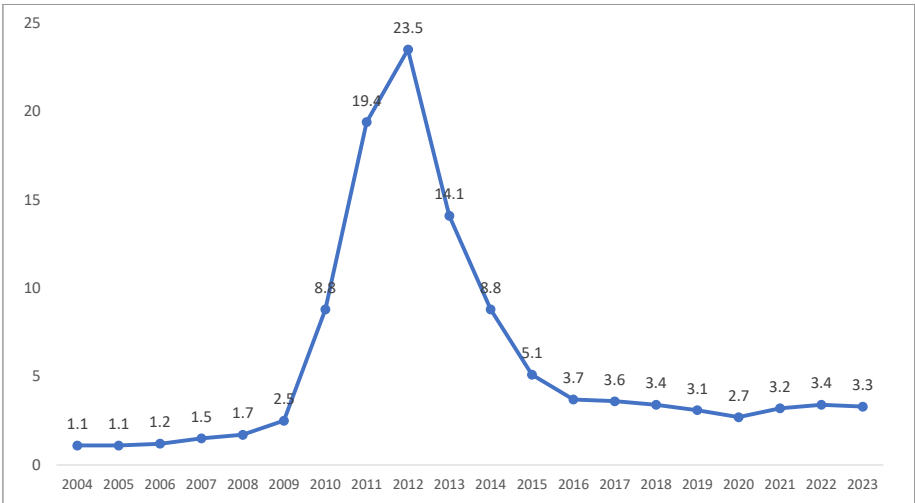
	판결 인원수	무죄 인원수	무죄율
2004	219,669	2,469	1.1
2005	205,402	2,190	1.1
2006	192,772	2,314	1.2
2007	214,005	3,166	1.5
2008	237,234	4,024	1.7
2009	248,704	6,240	2.5
2010	241,105	21,229	8.8
2011	264,619	47,947	19.4
2012	257,091	60,399	23.5
2013	230,691	32,543	14.1
2014	239,960	20,014	8.8
2015	346,513	11,858	5.1

» **〈표 3-7〉의 계속**

	판결 인원수	무죄 인원수	무죄율
2016	243,781	9,080	3.7
2017	244,489	8,916	3.6
2018	220,123	7,496	3.4
2019	218,510	6,868	3.1
2020	227,920	6,267	2.7
2021	218,648	7,090	3.2
2022	209,166	7,016	3.4
2023	216,434	7,097	3.3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 **[그림 3-8] 형사공판사건 무죄율 추이**



나. 항소심 공판사건

항소심 공판사건의 중국처리인원 중 무죄인원 및 무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범죄의 항소심 공판사건의 무죄인원 및 무죄율은 2004년 전체 61,552명 중 969명이 무죄였으며 무죄율은 1.6%였다. 이후 무죄인원은 2007년 1,179명으로 처음 천명 대를 넘어선 이후 2022년 1,183명에 이르기까지 2020년 1,098명의 최소 인원에서 2019년 1,652명의 최대 인원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무죄율 역시 2019년 2.4%로

72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최고를 기록하고, 2013년 2.2%, 2014년 2.0%로 2% 대 이후 나머지 해에는 1%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6%, 2022년 1.7%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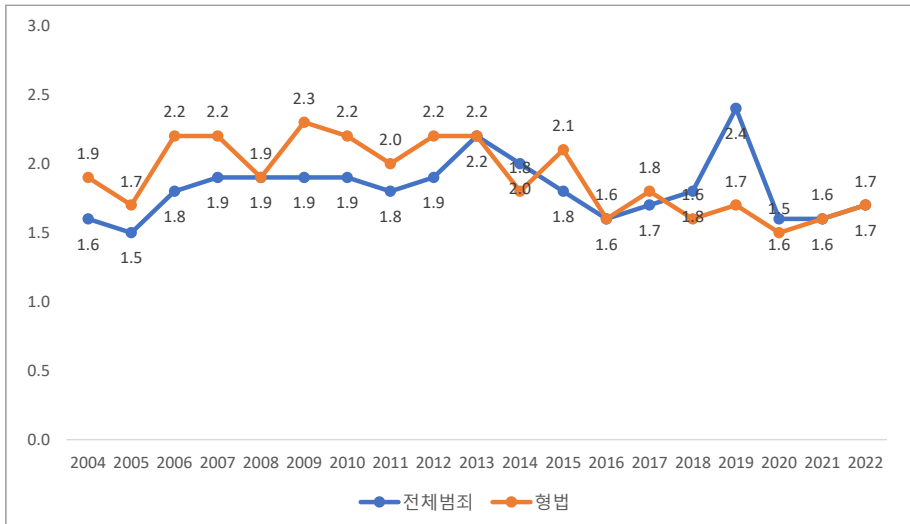
▶▶▶ <표 3-8> 항소심 공판사건 종국처리 인원 중 무죄인원 및 무죄율

(단위: 명, %)

연도	전체 범죄			처리인원계	형법	
	처리인원계	무죄			무죄	
		인원	%		인원	%
2004	61,552	969	1.6	29,075	554	1.9
2005	58,052	896	1.5	27,629	474	1.7
2006	51,925	935	1.8	25,131	542	2.2
2007	60,865	1,179	1.9	31,191	673	2.2
2008	66,686	1,235	1.9	33,340	635	1.9
2009	70,096	1,330	1.9	35,873	836	2.3
2010	71,938	1,357	1.9	37,288	827	2.2
2011	69,422	1,245	1.8	36,049	718	2.0
2012	64,618	1,223	1.9	33,612	756	2.2
2013	66,348	1,439	2.2	33,142	713	2.2
2014	68,916	1,387	2.0	43,529	792	1.8
2015	79,043	1,417	1.8	44,092	907	2.1
2016	83,759	1,306	1.6	53,994	881	1.6
2017	87,160	1,456	1.7	54,113	958	1.8
2018	76,233	1,391	1.8	47,438	781	1.6
2019	69,853	1,652	2.4	43,458	726	1.7
2020	68,789	1,098	1.6	42,602	616	1.5
2021	68,455	1,123	1.6	42,391	693	1.6
2022	70,036	1,183	1.7	41,873	708	1.7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각 연도

» [그림 3-9] 항소심 공판사건 종국처리 인원 중 무죄인원 및 무죄율 추이



형법범의 항소심 공판사건의 무죄인원 및 무죄율은 2004년 전체 29,075명 중 554명이 무죄였으며 무죄율은 1.9%였다. 이후 무죄인원은 2022년 708명에 이르기까지 2005년 474명의 최소 인원에서 2017년 958명의 최대 인원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무죄율 역시 2009년 2.3%로 최고를 기록하고, 2006년, 2007년, 2012년, 2013년 각각 2.2%, 2015년 2.1%, 2011년 2.0%로 2% 대를 기록한 해 이외의 해에는 1%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 1.5%, 2021년 1.6%, 2022년 1.7%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

형법범의 항소심 공판사건의 무죄인원 및 무죄율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살인범죄는 2004년 1.6%와 2014년 1.0%를 기록한 해를 제외하면 0%대에 머물렀으며, 최근 3년간은 2020년 0.4%, 2021년 0.2%, 2022년 0.3%를 기록하였다. 성폭력범죄는 2010년 2.7%, 2015년 2.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2004년 0.9%, 2022년 0.2%로 낮았으며, 이 외에는 대부분 1%대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최근 3년간은 2020년 0.2%, 2021년 1.5%, 2022년 1.0%를 기록하였다. 횡령·배임죄는 2017년 4.2%, 2020년 4.1%, 2008년 4.0% 등 3년만 4%대, 2015년 2.9%로 2%대 이외에는 2022년까지 3%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고, 2022년 6.5%로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74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즉 살인범죄는 2022년 0.3%로 예년과 비슷했으며, 성폭력범죄는 1.0%로 예년에 비해 낮았고, 횡령·배임죄는 6.5%로 최근 20년 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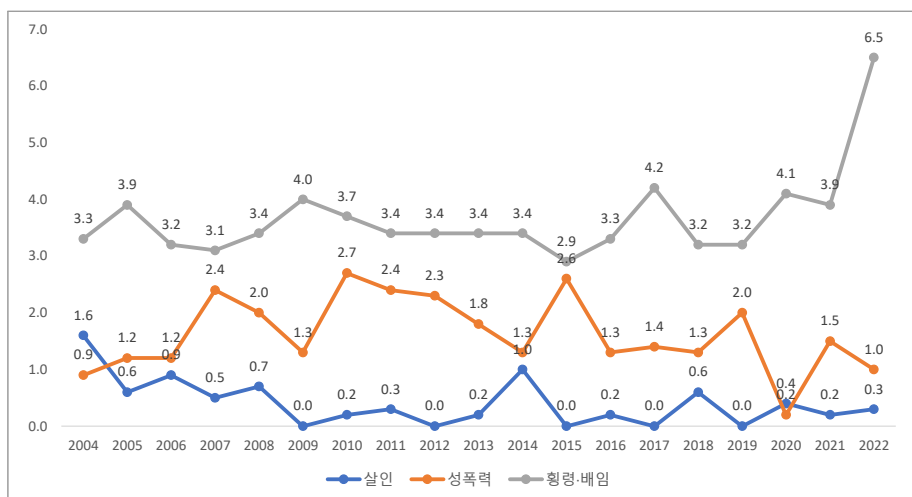
▶▶▶ <표 3-9> 항소심 공판사건 종국처리 인원 중 범죄유형별 무죄인원 및 무죄율

(단위: 명, %)

연도	살인			성폭력			횡령·배임		
	처리 인원계	무죄		처리 인원계	무죄		처리 인원계	무죄	
		인원	%		인원	%		인원	%
2004	677	11	1.6	760	7	0.9	1,917	63	3.3
2005	670	4	0.6	588	7	1.2	1,980	77	3.9
2006	564	5	0.9	599	7	1.2	1,935	61	3.2
2007	647	3	0.5	763	18	2.4	2,229	69	3.1
2008	576	4	0.7	733	15	2.0	2,258	77	3.4
2009	662	-	-	754	10	1.3	2,480	100	4.0
2010	618	1	0.2	830	22	2.7	2,872	107	3.7
2011	627	2	0.3	844	20	2.4	2,707	91	3.4
2012	544	-	-	868	20	2.3	2,265	78	3.4
2013	529	1	0.2	973	18	1.8	2,319	80	3.4
2014	579	6	1.0	3,729	50	1.3	2,647	89	3.4
2015	610	-	-	2,256	59	2.6	2,803	81	2.9
2016	570	1	0.2	4,838	65	1.3	2,742	91	3.3
2017	533	-	-	4,767	65	1.4	2,554	108	4.2
2018	473	3	0.6	4,556	58	1.3	2,330	75	3.2
2019	462	-	-	4,951	100	2.0	2020	64	3.2
2020	461	2	0.4	4,868	96	0.2	1,856	76	4.1
2021	435	1	0.2	4,974	77	1.5	1,711	67	3.9
2022	400	1	0.3	5,358	52	1.0	1,533	99	6.5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각 연도

▶▶ [그림 3-10] 항소심 공판사건 중국처리 인원 중 범죄유형별 무죄인원 및 무죄율 추이



제3절 | 소결

1. 항소율 분석

항소율은 2004년 32.8%에서 2014년 38.6%로 20%와 3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2015년 항소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비판으로,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다양한 실현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27.2%로 감소한 이후 2016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4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 41.6% 이후 2023년 48.1%에 이르기까지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23년에는 판결인원의 거의 절반 가량이 항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특히 강간과 추행의 죄 및 횡령과 배임의 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강간과 추행의 죄는 2004년 이후 판결인원수 및 항소인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항소율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3년에는 60.6%까지 높았다. 이와 달리 횡령과 배임의 죄는 2004년 이후 판결인원수 및 항소인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항소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59.5%로 높았다.

항소주체별 항소율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2008년 71.9%에서 2022년 47.8%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검사의 항소율은 2008년 59.4%에서 2018년 48.3%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51.4%, 2020년 58.3%, 2021년 64.3%, 2022년 63%로 최근 4년간 다소 증가하였다.

2. 무죄율 분석

재심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검찰의 통계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최근 20년간 1%를 넘지 않았다. 다만, 2004년 0.16%에서 2021년 0.99%, 2022년 0.94%, 2023년 0.92%에 이르기까지 연도별로 증감이 반복되긴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0.9% 대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제2심의 무죄율은 1~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27%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01%, 2019년 2.18%를 제외하고는 모두 1%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0년 1.49%, 2021년 1.47%, 2022년 1.56%, 2023년 1.38%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재심사건이 포함된 법원통계에서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무죄율은 2004년 1.1%에서 2008년 1.7%에 이르기까지 1%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의 8.8%에서 2015년 5.1%에 이르기까지 평년에 비해 무죄율이 무척 높았던 해를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는 3%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0년 즈음에 무죄율이 급증한 이유는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2011년 도로법, 식품위생법, 약사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은 사례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2008년 이전에는 1%대를 유지하였고, 최근에는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소심 공판사건의 무죄율은 2019년 2.4%로 최고를 기록하고, 2013년 2.2%, 2014년 2.0%로 2%대 이후 나머지 해에는 1%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6%, 2022년 1.7%를 기록하고 있다.

제 4 장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변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판결문 분석

최이문 · 홍영오

제1절 | 강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요인에 대한 연구

1. 판결문 수집 방법과 내용

가. 표집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주로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건수가 많고 법관의 판단이 비교적 일관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강간범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강제추행의 경우 1심에서 벌금 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2심까지 진행되는 판결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수강간과 같은 범죄는 범죄의 양태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본 연구의 분석 조건을 충족하는 판결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강간범죄를 중심으로 1심과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검색을 통해 2020~2021년 판결문 중 '강간&파기'와 '강간&기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이루어졌다.

대법원 판결문 검색을 통해 '강간&파기' 건은 2020년 989건, 2021년 1,126건, '강간&기각' 건은 2020년 1,915건, 2021년 1,895건이 검색되었고, 연구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Casenote pro를 이용하여 이 중 2심 이상인 판결문을 먼저 추출한 후, 판결 반복, 감경사건은 전체 사례 수집을 목표로 264건을 수집하였고, 기각된 사건은 반복과 감경사건과의 비교를 위해 무작위로 400건의 사건 판결문을 수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와 죄명이 강간이 아닌 사건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47건의 사건을 추출하였고, 이들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문 총 1,094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판결문 각각에 대해 법조인 경력조사는 본 연구원과 MOU를 맺고 있는 「법률신문」의 협조를 받아 ‘한국법조인대관’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판결문에 대해 판사는 재판장 1명을, 변호사는 최대 3명까지의 경력을 조사하였다.

나. 변인구성

판결문 및 ‘한국법조인대관’을 활용하여 수집한 변인은 아래 <표 4-1>과 같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변인을 추출하였으며, 일부 변인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아 결측값이 다소 많이 나타났다. 법관, 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추출하였기 때문에, 동명이인 중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비실명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측값으로 표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분석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이 활용되었으나, 이 중에서 중요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표 4-1> 변인구성

분류	변인 목록
사건 정보	파일명, 사건번호(1심), 사건번호(2심), 1심 양형, 2심 양형, 1심 집행유예 여부, 2심 집행유예 여부, 1심-2심 기간(일), 위력(무기, 제압 등) 여부
피고인 정보	성별(1=남자, 2=여자), 피고인 전과 여부, 피고인 연령, 반성 여부 (1심), 반성 여부 (2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1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2심)
피해자 관련 정보	피해자 음주 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1심, 2심), 성적 결정권 판단 (1심, 2심), 성인지 감수성 표현 여부
판결문 정보	1심 판결문 길이(문장), 2심 판결문 길이(문장), 1심 사실인정 (유죄/무죄), 1심 법률적 판단 (유죄/무죄), 2심 사실인정 (유죄/무죄), 2심 법률적 판단 (유죄/무죄), 1심/2심 DNA 증거 판단
재판장 정보 (1심)	재판장 성별(1=남자, 2=여자), 재판장 고교졸업연도, 재판장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재판장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재판장 출신지역, 재판장 출신고교명, 재판장 출신대학명, 재판장 출신학과명, 재판장 변호사/검사 경력 여부(0, 변호사경력=1, 검사경력=2, 모두=3), 재판장의 선고 당시 직위

» **〈표 4-1〉의 계속**

분류	변인 목록
재판장 정보 (2심)	재판장 성별(1=남자, 2=여자), 재판장 고교졸업연도, 재판장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재판장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재판장 출신지역, 재판장 출신고교명, 재판장 출신대학명, 재판장 출신학과명, 재판장 변호사/검사 경력 여부(0, 변호사경력=1, 검사경력=2, 모두=3), 재판장의 선고 당시 직위
변호인 정보 (1심)	변호사1~3 성별, 고교졸업연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출신지역, 출신고교명, 출신대학명, 출신학과명, 판사/검사 경력 여부, 최종직위(부장검사 등), 법무법인 소속 여부
변호인 정보 (2심)	변호사1~3 성별, 고교졸업연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출신지역, 출신고교명, 출신대학명, 출신학과명, 판사/검사 경력 여부, 최종직위(부장검사 등), 법무법인 소속 여부
재판장-변 호사 관계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일치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대학교 일치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판사 경험 있는 경우)의 경력 중복 여부(같은 시기에 같은 지법에서 일한 경우),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사법(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차이(양수: 판사가 빠른 경우, 음수: 변호사가 빠른 경우)

2. 판결문의 기술적 통계

가. 1·2심 법관 및 변호인 정보

1) 1·2심 재판장 특성

가) 성별

1심과 2심 재판장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두 심급 모두 남성 재판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심 재판장의 경우 85.5%가 남성이며, 여성 재판장은 13.4%로 나타났다. 2심 재판장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남성 재판장이 87.6%, 여성 재판장은 10.8%를 차지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여성 재판장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항소심에서 여성 재판장 비율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 1심 및 2심 재판장 성별 분포(N = 574)**

성별	1심	2심
남성	491(85.5%)	503(87.6%)
여성	77(13.4%)	62(10.8%)
결측값	6(1.0%)	9(1.6%)
합계	574(100.0%)	574(100.0%)

나) 경력

1심과 2심 재판장 경력 분석에서 검사 출신 재판장이 1심에서는 40.4%, 2심에서는 32.4%로 나타나 두 심급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변호사 출신 재판장은 1심에서 5.7%, 2심에서는 0.2%로 2심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검사와 변호사 경력을 모두 가진 재판장은 1심에서 1.4%였으며, 2심에서는 전무했다. 이전 경력이 없는 재판장은 1심에서 51.7%, 2심에서 65.9%로 나타나, 항소심에서는 재판장의 절반 이상이 검사나 변호사 경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러한 결과, 항소심으로 갈수록 변호사·검사 경력이 없는 재판장이 더 많았다.

》》〈표 4-3〉 1심 및 2심 재판장 이전 경력 분포(N = 574)

경력 구분	1심 N(%)	2심 N(%)
검사	232 (40.4%)	186 (32.4%)
변호사	33 (5.7%)	1 (0.2%)
검사&변호사	8 (1.4%)	0 (0.0%)
없음	297 (51.7%)	378 (65.9%)
결측값	4 (0.7%)	9 (1.6%)
합계	574 (100.0%)	574 (100.0%)

2) 변호인 특성

가) 성별

(1) 변호사 별 성별 분포

1심과 2심 변호사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 변호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심 변호사1의 경우 남성 비율이 80.8%로, 여성 비율 19.2%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심 변호사1에서도 남성 비율이 69.2%로 높았으며, 여성 비율은 13.8%로 나타났다.

그러나 1심 변호사2와 변호사3, 2심 변호사2와 변호사3에서는 결측값이 상당히 많아 각각 83.1%와 95.6%, 84.3%, 95.5%를 차지했다. 특히 1심 변호사3과 2심 변호사3에서는 확인된 인원이 매우 적었다.

▶▶▶ <표 4-4> 1심 및 2심 변호사 성별 분포(N = 574)

구분	남성 N(%)	여성 N(%)	결측값 N(%)	총계
1심 변호사1	464 (80.8%)	110 (19.2%)	0 (0.0%)	574
1심 변호사2	71 (12.4%)	26 (4.5%)	477 (83.1%)	574
1심 변호사3	22 (3.8%)	3 (0.5%)	549 (95.6%)	574
2심 변호사1	397 (69.2%)	79 (13.8%)	98 (17.1%)	574
2심 변호사2	75 (13.1%)	15 (2.6%)	484 (84.3%)	574
2심 변호사3	23 (4.0%)	3 (0.5%)	548 (95.5%)	574
합계	1052 (61.0%)	236 (13.7%)	2156 (25.3%)	3,444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의 수 제한으로 인해 각 변호인(단) 별로 여성 변호인의 유무로 변환하여 계산한 값은 다음과 같다.

▶▶▶ <표 4-5> 심급별 변호인(단)에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N = 574)

심급	여성 변호사 있음 N(%)	여성 변호사 없음 N(%)	총계
1심	132 (23.0%)	442 (77.0%)	574
2심	110 (19.2%)	464 (80.8%)	574

심급별 여성 변호사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는 여성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이 23.0%로 나타났으며, 2심에서는 19.2%로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다. 반면, 여성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사건은 1심에서 77.0%, 2심에서는 80.8%로 2심에서 여성 변호사의 부재 비율이 더 높았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1심과 2심에서 여성 변호사 참여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1) = 2.31$, $p = .13$). 기대빈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여성 변호사가 121명, 여성 변호사 부재는 453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1심과 2심에서 여성 변호사의 참여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여성 변호사의 참여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경력

1심과 2심 변호사들의 판사 또는 검사 경력 여부를 분석한 결과, 1심 변호사 중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이 있는 경우는 21.0%, 2심 변호사의 경우 28.4%로 2심에서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1심보다 2심에서 경력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1심과 2심에서 변호사의 판사·검사 경력 여부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1) = 1.05$, $p = .31$). 기대빈도는 1심에서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약 106.6명, 2심에서 약 22.4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빈도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판사·검사 경력 변호사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표 4-6> 심급별 변호사 판사·검사 경력 여부(N = 574)

구분	있음 N(%)	없음 N(%)	합계
1심 변호사1	111 (22.0%)	393 (78.0%)	504
1심 변호사2	18 (17.0%)	88 (83.0%)	106
1심 변호사3	4 (16.0%)	21 (84.0%)	25
1심 합계	133 (21.0%)	502 (79.0%)	635
2심 변호사1	144 (28.5%)	361 (71.5%)	505
2심 변호사2	29 (28.4%)	73 (71.6%)	102
2심 변호사3	7 (25.9%)	20 (74.1%)	27
2심 합계	180 (28.4%)	454 (71.6%)	634
전체 합계	313 (25.8%)	956 (74.2%)	1269

1심과 2심 변호사의 이전 경력 중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변호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이 26명, 일반 판사가 35명으로 총 61명이 판사 출신이었다. 2심 변호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이 50명으로 1심보다 많았으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총 32명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1심에서 43명, 2심에서 55명으로 확인되어, 2심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지청장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1심과 2심에서 고르게 활동하고 있었다. 군 법무관 및 군 관련 직책을 가진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공익법무관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군판사 및 고등군판사 출신 변호사도 일부 활동하고 있었으며, 항소심에서 군 관련 직책을 가진 변호사의 활동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기재된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총 1,559건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 4-7> 심급별 변호사 이전 경력 분포(N = 574)

직위	1심 변호사1	1심 변호사2	1심 변호사3	2심 변호사1	2심 변호사2	2심 변호사3	총계
부장판사	19	6	1	37	10	3	76
판사	26	7	2	25	7	0	67
부장판사/지원장	1	1	0	0	0	0	2
수석부장판사	2	0	0	4	1	0	7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0	0	0	1	0	0	1
법관	1	0	0	0	0	0	1
부장검사	22	1	0	27	5	0	55
검사	20	3	0	16	2	0	41
지청장	1	0	0	1	0	1	3
공익법무관	4	0	0	8	1	0	13
군판사	3	0	0	5	0	1	9
고등군판사	1	1	0	2	0	0	4
공군법무관	1	0	0	2	0	0	3
육군법무관	0	1	0	1	0	0	2
군법무관	0	0	0	1	0	0	1
군검찰	0	0	0	1	0	0	1
법무참모	0	0	0	1	0	0	1
고등검찰관	0	0	0	1	0	0	1
변호사	407	86	22	373	76	22	986
미기재 (-)	22	468	0	50	472	547	1559
합계	574	574	574	574	574	574	3444

심급별 변호인단 내 판사 또는 검사 출신 경력자가 포함된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는 31.0%의 사건에서 경력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심에서는 37.3%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 반대로, 경력자가 없는 사건은 1심에서 69.0%, 2심에서 62.7%로 나타나, 항소심에서 경력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심급별 변호인단 내 판사·검사 경력자 존재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chi^2(1) = 3.14$, $p = .076$).

▶▶ <표 4-8> 심급별 변호인단 내 판사·검사 경력자 존재 여부(N = 574)

심급	경력자 있음 N(%)	경력자 없음 N(%)	총계
1심	178 (31.0%)	396 (69.0%)	574
2심	214 (37.3%)	360 (62.7%)	574

3) 법관-변호인 관계

가) 출신학교 일치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1심에서는 0.8%, 2심에서는 0.6%만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으며, 불일치율은 99%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고등학교 일치 여부에 대한 1심과 2심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 = 0.00$, $p = 1.00$). 이는 고등학교 출신 일치 여부가 심급에 따라 차이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대학교의 경우, 일치율이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심에서는 17.5%, 2심에서는 22.8%가 같은 대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 간의 학연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교 일치 여부에서는 1심과 2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4.24$, $p = 0.04$). 이는 2심에서 같은 대학교 출신 변호사가 재판장과 함께하는 경우가 1심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 <표 4-9>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치 여부(N = 574)

구분	출신고교		출신대학		총계
	일치 N(%)	불일치 N(%)	일치 N(%)	불일치 N(%)	
1심	4 (0.8%)	501 (99.2%)	89 (17.5%)	421 (82.5%)	510
2심	3 (0.6%)	491 (99.4%)	114 (22.8%)	385 (77.2%)	499
합계	7 (0.7%)	992 (99.3%)	203 (20.0%)	806 (80.0%)	2008

나) 경력 중복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 간 판사 경력 중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는 판사 경력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지방법원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2.1%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경우인 86.4%는 중복되지 않았다. 2심에서는 판사 경력 중복 비율이 6.1%로 1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복되지 않은 비율은 93.9%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가 과거에 판사로서 같은 시기에 같은 지방법원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1심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중복되는 경력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심급 간 판사 경력 중복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chi^2 = 10.57$, $p = 0.001$). 이는 항소심에서 판사 경력의 중복이 1심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음을 의미하며, 재판장과 변호사 간의 과거 네트워크가 항소심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 **〈표 4-10〉 재판장과 변호사의 판사 경력 중복 여부(N = 574)**

심급	중복 있음 N(%)	중복 없음 N(%)	총계
1심	12 (2.1%)	496 (86.4%)	508
2심	31 (6.1%)	475 (93.9%)	506

다) 경력 차이(법관-변호사 간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

재판장과 변호사 간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장과 변호사 간의 평균 차이는 6.30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판장이 변호사보다 평균적으로 약 6년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심에서는 평균 차이가 10.58년으로, 항소심에서는 재판장이 변호사보다 평균적으로 약 10년 이상 사법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최솟값을 살펴보면, 1심에서는 -31로 변호사가 재판장보다 최대 31년 먼저 합격한 경우도 있었지만, 2심에서는 -20이 최솟값으로, 변호사가 재판장보다 먼저 합격한 경우의 최대 차이는 1심보다 작았다. 이는 2심에서 재판장의 연공서열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며, 변호사가 재판장보다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례가 더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1심과 2심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심급 간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5.44, p < .001$). 이는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 간의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가 1심보다 유의미하게 크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항소심에서 재판장의 연차가 변호사보다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조계에서의 경력과 지위 차이가 2심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 **〈표 4-11〉 재판장과 변호사 간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N = 574)**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양수: 판사 빠름, 음수: 변호사 빠름)	표준편차
1심 재판장과 변호사	510	-31	26	6.30	10.54
2심 재판장과 변호사	508	-20	35	10.58	11.46
유효 사례 (listwise)	466				

나. 피고인 및 피해자 정보

피고인의 연령, 성별, 전과 여부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강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위력·무기 사용 등)과 범죄 경력이 양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유사 사건에서 판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법 판단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 피고인 연령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은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실명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고인의 연령만을 추출한 결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표본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피고인의 연령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가 16.7%, 20대는 9.8%로 뒤를 이었다. 10대는 3.1%, 50대는 6.3%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고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결측값(Missing)이 40.8%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표본 중 연령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다. 이는 비실명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삭제된 결과로 추정되며, 분석에 있어 표본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표 4-12> 피고인 연령대 분포(N = 574)

연령대 (세)	빈도 (N)	비율 (%)
10대	18	3.1
20대	56	9.8
30대	114	19.9
40대	96	16.7
50대	36	6.3
60대	11	1.9
70대 이상	9	1.6
결측값	234	40.8
합계	574	100.0

2) 피고인 전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61.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35.0%였으며, 이 중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26.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는 8.2%로 비교적 낮았다. 전과 여부는 재판에서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측값(Missing)은 3.8%로, 일부 표본에서 전과 기록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으나 전체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 <표 4-13> 피고인 전과 여부 분포(N = 574)

전과 여부	빈도 (N)	비율 (%)
동종 전과 있음	154	26.8
전과 있음 (동종 전과 없음)	47	8.2
없음	351	61.1
결측값	22	3.8
합계	574	100.0

다. 판결 정보

1) 심급별 양형

가) 유무죄 판단, 집행유예 비율

〈표 4-14〉는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분포와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72건(12.5%)으로, 2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벌금형은 1심과 2심 모두 8건(1.4%)으로 변화가 없었다. 집행유예 및 실형에서는 2심에서 형량 변화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는 1심 9명에서 2심 37명으로 크게 늘어나, 2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장기 실형(60개월 이상)에서는 감경 사례가 일부 관찰된다. 72개월 실형의 경우, 1심에서 40명(7.0%)이었으나 2심에서는 28명(4.9%)으로 줄어들었다. 120개월(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서도 감경 사례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480개월(40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심과 2심 모두 1건(0.2%)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장기 형량에서는 일부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표 4-14〉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분포

			1심		2심	
무죄			72		72	
유죄	벌금형		8		8	
	징역형	개월수	집행유예	실형	집행유예	실형
		6	1	2	1	1
		8	2	2	4	3
		9		1		1
		10	1	4	1	2
		12	2	7	5	6
		18	18	17	38	23
		20		3		
		21		1		1
		24	9	37	32	36
					20	28
						1
		30	9	38		1

»» **〈표 4-14〉의 계속**

			1심		2심	
		32		2		
		36	11?12	68	33	42
		42		33		28
		48		48		39
		54		4		3
		60		61		56
		72		40		28
		84		27		18
		96		13		10
		108		2		5
		120		10		7
		144		11		10
		156		2		2
		180		4		3
		192		1		1
						1
		300		1		2
		360		1		
		480		1		

나) 심급별 판단 차이

(1) 유무죄 판단

1심과 2심의 유죄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된 비율은 95.5%로 매우 높았다. 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도 무죄로 유지된 비율은 64.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5.6%는 유죄로 변경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1심과 2심의 유죄 여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89.37$, $p < .001$). 이는 1심과 2심 간 유죄 여부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특정 조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라도 2심에서 유죄로 번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표 4-15> 1심 유죄 여부와 2심 유죄 여부 간 교차분석(N = 575)

1심	2심		합계
	유죄 N(%)	무죄 N(%)	
유죄	476 (95.5%)	26 (35.6%)	502
무죄	27 (4.5%)	46 (64.4%)	73
합계	503 (87.5%)	72 (12.5%)	575

(2) 집행유예 비율

앞서 결과를 조금 더 확장하여, 무죄,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징역형(실형)으로 구분하여 심급별 판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심과 2심에서의 판결 변화를 분석한 결과, 형량에 따라 2심에서의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2건 중 46건(63.9%)은 2심에서도 무죄로 유지되었지만, 23건(31.5%)은 2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며,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실형으로 직행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2심에서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8건 중 2건(25%)은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6건(75%)은 실형으로 판결이 강화되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2심에서는 상당수가 실형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벌금형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4건 중 46건(86.8%)은 2심에서도 유지되었지만, 6건(11.1%)은 실형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집행유예가 비교적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정 비율에서 형이 강화될 위험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중 일부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완전히 안정적인 형량은 아님을 시사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41건 중 332건(91.0%)은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었으며, 86건(6.1%)은 집행유예로 감경되었다. 나머지 23건(5.2%)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로 바뀌

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형이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며, 일부 사건에서만 판결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심에서 선고된 판결 중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중형은 2심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무죄나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은 2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1심에서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더 엄격하게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 **〈표 4-16〉 1심과 2심의 형량별 판결 변화 교차분석(N = 575)**

	1심 판결결과	2심				합계
		무죄 N(%)	벌금형 N(%)	징역형(집행유예) N(%)	징역형(실형) N(%)	
1심	무죄	46 (63.9%)	2 (25.0%)	1 (1.9%)	23 (5.2%)	72
	벌금형	2 (2.7%)	0 (0.0%)	0 (0.0%)	6 (1.4%)	8
	집행유예	2 (2.7%)	0 (0.0%)	46 (86.8%)	6 (1.4%)	54
	실형	23 (31.5%)	0 (0.0%)	86 (64.7%)	332 (91.0%)	441
	합계	73	2	133	367	575

(3) 실형기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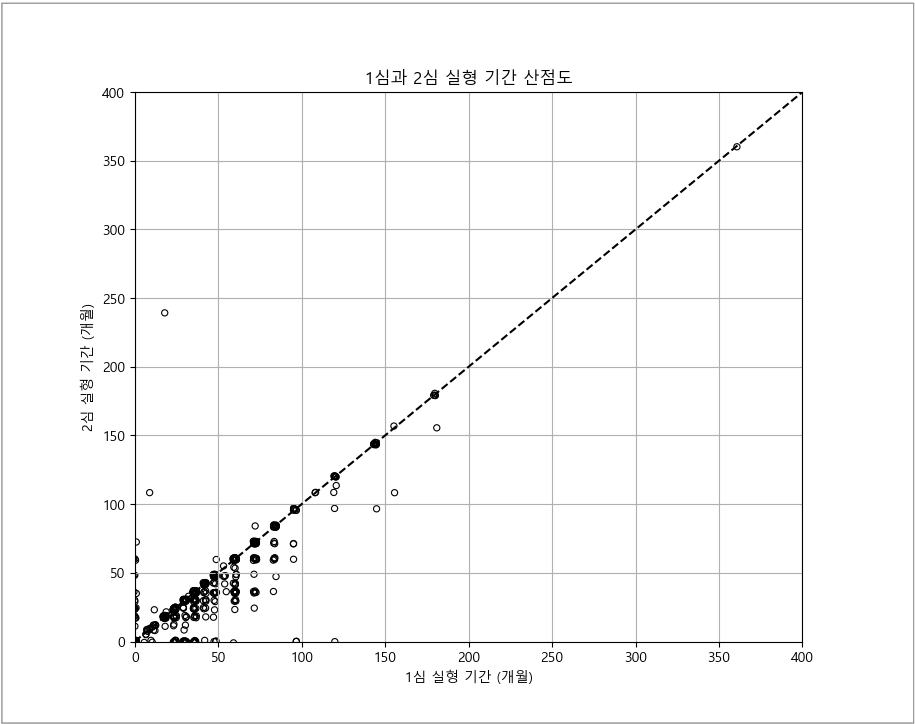
[그림 4-1]은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실형기간을 비교한 그래프로, 1심의 형량(개월 단위)을 x축, 2심의 형량을 y축으로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많은 점들이 대각선(45도 선)을 따라 분포하는데, 이는 1심과 2심의 형량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각선 아래에 분포하는 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2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사례가 상당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0)로 변경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일부는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대각선 위에 위치한 점들은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한 경우를 나타내지만,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2심에서 더 줄어드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죄 및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바뀐 경우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2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변화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재판부가 형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와 산점도 간의 차이는 분석 대상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표는 1심과 2심의 판결결과를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구분하여 형량의 변화와 판결 뒤집힘 여부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반면, 산점도는 실형기간에만 집중하여 1심과 2심의 형량 변화를 시각화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표에서는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2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지만, 산점도에서는 2심에서 형량이 감경되거나 실형이 집행유예(0)로 바뀌는 사례가 더 두드러진다. 이는 산점도가 벌금형이나 무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집행유예와 무죄를 0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표는 형량 변화의 전반적 흐름을, 산점도는 실형에 초점을 맞춘 변화의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그림 4-1] 1심과 2심 실형기간 산점도



2) 판결 정보

가) 사건 복잡성 지표

(1) 심급별(1심, 2심) 판결문 길이

(가) 평균

1심과 2심 판결문의 평균 길이를 비교한 결과, 1심 판결문이 평균 199.62문장으로 2심 판결문(평균 180.10문장)보다 길었다. 판결문 길이의 표준편차는 1심에서 173.49, 2심에서 165.69로 두 집단 간의 변동성이 유사했다.

상관분석 결과,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 간의 상관계수는 .975로 매우 높으며, 유의 확률 $p < .001$ 로 두 판결문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aired t -검정에서는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 간에 평균 19.52문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571) = 12.13$, $p < .001$). 효과 크기 (Cohen's d)는 .507로 중간 수준의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1심 판결문이 2심 판결문보다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 <표 4-17>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에 대한 기술통계($N = 572$)

변인	평균 (Mean)	표준편차 (SD)	표준오차 (SE)
1심 판결문 길이 (문장)	199.62	173.49	7.25
2심 판결문 길이 (문장)	180.10	165.69	6.93

(나) 심급별 유무죄 여부에 따른 판결문 길이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의 차이를 형량 변화별로 분석한 결과, 심급에 따라 판결문 길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무죄에서 무죄로 유지된 경우, 1심 판결문이 2심보다 평균 32.11문장 더 길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45) = 6.34$, $p < .001$). 이는 무죄판결이 유지되더라도 1심에서는 판결문이 보다 자세하게 작성되고, 2심에서는 판결문이 축약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실형에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2심 판결문이 1심보다 평균 23.74문장 더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 = -4.03$, $p = .001$). 이는 2심에서 실형이 유지되더라도 판결문이

간결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에서 집행유예로 유지된 경우, 2심에서 판결문이 1심보다 평균 25.76문장 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45) = 4.22, p < .001$), 이는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될 경우에도 2심에서 판결문이 보다 간략하게 작성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반면, 실형에서 무죄로 변경된 경우에는 판결문 길이 차이가 평균 -5.96문장으로 나타났으나,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22) = -1.76, p = .093$). 이와 유사하게, 벌금형에서 무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1심 판결문이 20.50문장 더 길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 = -0.80, p = .569$). 이는 일부 형량 변경 사례에서는 판결문 길이 차이가 크지 않으며, 판결문 길이 변화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무죄나 집행유예와 같은 경우 2심 판결문이 축약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2심에서 판결문이 간결해지는 패턴이 관찰된다. 이는 2심에서 판결문이 1심보다 전체적으로 짧아지며, 사건의 주요 쟁점이나 결론 부분이 간략하게 서술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4-18> 1심과 2심 판결문의 길이 차이에 대한 Paired t-검정 결과(N = 각 판결별)

비교쌍	평균 차이 (Mean Diff.)	표준편차 (SD)	표준오차 (SE)	t	df	p (2-tailed)	95% 신뢰구간 (CI)
무죄 → 무죄	32.11	34.35	5.07	6.34	45	.000	21.91 – 42.31
벌금형 → 벌금형	-38.00	8.49	6.00	-6.33	1	.100	-114.24 – 38.24
실형 → 실형	-23.74	28.22	5.89	-4.03	22	.001	-35.94 – -11.54
벌금형 → 무죄	-20.50	36.06	25.50	-.80	1	.569	-344.51 – 303.51
실형 → 무죄	31.80	32.44	14.51	2.19	4	.093	-8.48 – 72.08
실형_집행유예 → 무죄	-42.50	43.13	30.50	-1.39	1	.396	-430.04 – 345.04
실형_집행유예 → 실형_집행유예	25.76	41.42	6.11	4.22	45	.000	13.46 – 38.06
실형 → 실형_집행유예	1.00	13.07	5.34	.19	5	.859	-12.72 – 14.72
실형 → 무죄	-5.96	16.28	3.40	-1.76	22	.093	-13.00 – 1.08
실형_집행유예 → 실형	7.52	24.15	2.62	2.87	84	.005	2.31 – 12.73
실형 → 실형	25.99	39.72	2.18	11.91	330	.000	21.70 – 30.29

(2) 1-2심 판결 간 기간

1심에서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간 2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2심까지 평균 206.24일이 소요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평균 152.57일이 소요되었다. 이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보다 항소심까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571) = 5.54, p < .001$). 평균 차이는 53.66일이며, 95% 신뢰구간에서 이 차이는 34.64일부터 72.69일까지 범위를 가진다.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78.58) = 3.84, p < .001$), 신뢰구간은 25.86일부터 81.47일까지로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되거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항소심에서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는 재판부가 1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표 4-19〉** 1심 유죄 여부에 따른 2심 선고까지의 기간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1심 유죄 여부	N	평균 (Mean)	표준편차 (SD)	표준오차 (SE)
무죄	72	206.24	115.54	13.62
유죄	501	152.57	69.64	3.11

(3) 사실인정 및 법률적 판단

1심과 2심에서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 판단 유·무죄 개수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1심보다 2심에서 유죄판결 개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1심에서는 사실인정 유죄 3개 이상의 사건이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실인정 무죄 0개(즉, 모든 쟁점에서 무죄로 인정된 사건)는 47.9%를 기록했다. 반면 2심에서는 사실인정 유죄 3개 이상이 29.5%로 감소하였고, 무죄 0개 사건은 50.3%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2심에서 사실인정 단계에서 유죄 개수가 줄어드는 경우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률적 판단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1심에서는 법률적 판단 유죄 2개 이상이 4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심에서는 41.3%로 소폭 감소하였다. 무죄 0개 사건(즉, 법률적으로도 모든 쟁점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건)은 1심에서 47.3%, 2심에서 50.8%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심에서 다수의 쟁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더라도, 2심에서 일부 쟁점이 무죄로 뒤집히거나 법률적 판단에서 감경되는 사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1심에서 3개 이상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2심에서 줄어드는 현상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 <표 4-20> 1심 및 2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 판단 결과 분포(N = 574)

구분	0	1	2	3	4	5	합계	결측값
1심 사실인정 유죄 개수	65	82	185	192	33	11	568	6
1심 사실인정 무죄 개수	264	206	51	26	3	1	551	23
1심 법률적 판단 유죄 개수	67	163	246	83	9	1	569	5
1심 법률적 판단 무죄 개수	261	241	44	6	-	-	552	22
2심 사실인정 유죄 개수	62	105	198	168	24	12	569	5
2심 사실인정 무죄 개수	278	205	49	21	-	-	553	21
2심 법률적 판단 유죄 개수	63	202	235	60	8	1	569	5
2심 법률적 판단 무죄 개수	280	234	33	4	-	-	551	23

(4) 증거 및 주요 판단 요소

(가) DNA 증거

DNA 증거가 존재하고 주장 및 입증된 사건은 1심에서 32.1%(184건), 2심에서는 33.1%(19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DNA 증거의 입증력이 보다 강화되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일부 존재함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1심과 2심에서 DNA 증거에 대한 판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DNA 증거가 부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일부 사건에서만 주장 및 입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심에서 DNA 증거의 입증력이 1심보다 다소 강화되는 경향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 전략이 보강되거나, 증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4-21> 1심과 2심의 DNA 증거 판단 결과(N = 574)

DNA 증거 판단	1심 N(%)	2심 N(%)
증거부재	380 (66.2%)	379 (66.0%)
증거존재_증명력부재	10 (1.7%)	5 (0.9%)
증거존재_주장입증	184 (32.1%)	190 (33.1%)
합계	574 (100.0%)	574 (100.0%)

(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1심과 2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비교한 결과, 1심과 2심 모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가 85.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1심에서 12.1%, 2심에서는 11.2%로, 2심에서 신빙성을 부정하는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뢰성 있게 평가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강화된 경우를 반영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1심에서 2.8%였으나, 2심에서는 3.7%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2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부분적인 의문이 제기되거나, 일부 진술에 한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1심과 2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사건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2심에서 진술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며, 일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부분적으로만 신뢰된다는 판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 <표 4-22> 1심과 2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N = 574)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1심 N(%)	2심 N(%)
신빙성이 있음	487 (85.1%)	487 (85.1%)
부분적으로 신빙성이 있음	16 (2.8%)	21 (3.7%)
신빙성이 없음	69 (12.1%)	64 (11.2%)
합계	572 (100.0%)	572 (100.0%)
결측값	2 (.3%)	2 (.3%)

(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비교한 결과, 1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86.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12.9%에 불과했다.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1.0%로 매우 적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2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34.5%로 1심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64.1%로 감소하였다. 부분합의의 비율도 소폭 상승하여 1.4%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음을 시사한다. 특히,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2심에서 합의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이 높아지며,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 감경을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 <표 4-23> 1심과 2심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N = 574)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1심 N(%)	2심 N(%)
합의있음	74 (12.9%)	198 (34.5%)
부분합의	6 (1.0%)	8 (1.4%)
합의없음	494 (86.1%)	368 (64.1%)
합계	574 (100.0%)	574 (100.0%)

(라) 위력 및 무기 사용 여부

〈표 4-24〉는 사건에서 위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제압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574건 중 562건(97.9%)에서 유효한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344건(61.2%)에서 위력 또는 무기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18건(38.8%)에서는 위력이나 무기 사용이 없었다. 이는 상당수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나 무기 사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표 4-24〉 위력·무기 제압 등 여부(N = 574)

위력·무기 제압 여부	N	Percent (%)
없음	218	38.0
있음	344	59.9
합계	562	97.9
결측값	12	2.1
총합	574	100.0

(마) 피해자의 음주 상태 여부

〈표 4-25〉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 여부에 대한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574건 중 542건(94.4%)에서 유효한 응답이 기록되었으며, 197건(36.3%)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45건(63.7%)에서는 피해자가 음주하지 않은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32건(5.6%)은 결측값으로 기록되어,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주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사건의 상당 부분에서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사건의 진행 및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표 4-25〉 피해자의 음주 여부(N = 574)

피해자 음주 여부	N	Percent (%)
없음	345	60.1
있음	197	34.3
합계	542	94.4
결측값	32	5.6
총합	574	100.0

3. 1심과 2심 판결결과 차이

피고인 특성 변인(연령, 성별), 사건의 특성(위력의 여부, 피해자 음주 여부 등) 등은 1심과 2심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의 참고사항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의 판단에도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분석의 목적은 2심 판결에서 변화한 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주요 변화된 요인으로 세 가지를 분석했다. 합의 여부의 변화, 2심 법관의 개인적인 특성, 2심 변호사의 경력 등이 어떻게 2심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가. 심급별 양형의 차이

심급별 형량의 차이를 보기 위해, 1심 형량과 2심 형량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법관의 특성, 변호사의 특성, 법관과 변호사의 특성, 피고인 전과 여부, 추가적 합의 여부, 위력의 행사 여부 등의 인자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중요 예측변인들 중 하나인 ‘전관’의 경우 평가적인 개념의 ‘전관예우’보다는 변호사가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 판사 또는 검사였는지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기 위해 사용했다.

▶▶▶ <표 4-26> 심급별 형량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B	표준 오차 (SE)	β	t	p
상수(Constant)	4.757	3.637	-	1.308	.192
항소심재판장 성별 (1=남자, 2=여자)	-3.400	2.696	-.058	-1.261	.208
항소심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사법(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차이(양수: 판사가 빠른 경우, 음수: 변호사가 빠른 경우)	-.011	.093	-.007	-0.117	.907
추가합의 여부	10.681	1.836	.268	5.818	< .001
피고인 전과	.973	.954	.047	1.020	.308
위력 무기 제압 등 여부	-.170	1.776	-.005	-0.096	.924
피해자 음주	.531	1.714	.014	0.310	.757
전관변호사 2심 존재 여부	2.685	2.368	.067	1.134	.258
여성 변호사 2심 존재	1.538	2.127	.033	0.723	.470

선형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들이 심급별 형량의 차이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462) = 36.14$, $p < .001$, 총 변량의 7.3%를 설명하였다($R^2 = 0.73$). 회귀분석 결과, 추가합의 여부는 형량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B = 10.681$, $p < .001$), 추가합의가 있을 경우 형량 차이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반면, 항소심 재판장의 성별, 재판장과 변호사의 사법시험 합격연도 차이, 피고인의 전과 여부, 위력 또는 무기 사용 여부, 피해자의 음주 여부, 전관변호사 및 여성 변호사의 2심 존재 여부 등은 형량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 결과는 형량 차이에 있어 추가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나. 2심에서 추가적 합의가 심급별 차이에 미치는 영향

1) 2심에서 합의 여부의 변화

1심에서 합의가 없었던 경우 2심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360건(72.9%)으로 가장 많았으며, 2심에서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132건(26.7%)에 불과했다. 반면, 1심에서 합의가 있었던 경우 2심에서도 합의가 유지된 경우는 65건(87.8%)으로, 합의가 유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심에서

의 합의가 2심에서 파기되는 경우는 8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1심에서 합의 여부가 2심에서의 판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1심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2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차분석 결과, 1심과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405.315$, $df = 4$, $p < .001$).

»» **〈표 4-27〉 2심에서 합의 여부의 변화**

	2심: 합의 없음	2심: 부분 합의	2심: 합의 있음	합계
1심: 합의 없음	360	2	132	494
1심: 부분 합의	0	5	1	6
1심: 합의 있음	8	1	65	74
합계	368	8	198	574

2) 재판복잡성

부분합의 사례는 판례 수가 적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2심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심에 비해 2심 재판의 복잡성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판결문의 길이와 1심 선고 후 2심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을 비교하였다.

가) 판결문의 길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문의 길이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2심에서는 1심보다 판결문 길이가 더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된다. 특히, 1심에서 합의가 없는 경우 판결문이 가장 길었으며, 2심에서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판결문이 더 짧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합의가 사건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표 4-28> 판결문의 길이

1심 합의 여부	2심 합의 여부	N	1심 판결문 길이 (M, SD)	2심 판결문 길이 (M, SD)
없음	없음	359	221.07 (201.59)	196.24 (194.80)
없음	있음	133	160.18 (85.37)	152.65 (73.14)
있음	없음	8	225.00 (137.35)	211.88 (150.12)
있음	있음	72	162.74 (122.74)	146.81 (115.40)

나) 2심 판결 시간

<표 4-29>는 1심과 2심 간의 기간(일)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1심 및 2심에서의 합의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1심과 2심에서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기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1심과 2심 간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1심에서 합의가 없었고, 2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평균적으로 7.53일 재판이 단축되었다($t(132) = 3.65, p < .001$). 이는 2심에서 사건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심과 2심 모두 합의가 없는 경우, 평균 165.39일($SD = 85.52$)이 소요된 반면, 1심에서 합의가 없고 2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평균 146.60일($SD = 56.48$)로 상대적으로 단축되었다. 1심에서 합의가 있었으나 2심에서 합의가 없는 경우($N = 8$) 평균 148.00일($SD = 53.35$)이 소요되었고, 1심과 2심 모두 합의가 있었던 경우, 평균 153.68일($SD = 79.57$)로 나타났다.

▶▶▶ <표 4-29> 1심-2심 기간(일)에 대한 기술통계(합의 여부별 구분)

1심 합의 여부	2심 합의 여부	평균	표준편차	N
없음	없음	165.39	85.52	360
없음	있음	146.60	56.48	133
있음	없음	148.00	53.35	8
있음	있음	153.68	79.57	72
합계	합계	159.32	78.82	573

3) 양형의 변화

가) 유무죄 판단의 변화

〈표 4-30〉은 1심 및 2심에서의 유죄 여부에 따른 추가 합의 상태를 보여준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도 추가적인 합의가 없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판결 27건(100%)은 추가적인 합의가 없었다.

유죄에서 유죄로 유지된 사례 중 333건(70.1%)은 합의 상태에 변화가 없었으며, 134건(28.2%)은 1심에서는 합의가 없었으나 2심에서 합의에 도달하였다. 반면, 8건(1.7%)은 1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심에서 합의가 파기된 경우였다.

2심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다. 추가적인 합의의 여부가 재판의 유무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 〈표 4-30〉 1심 및 2심 유죄 여부에 따른 추가 합의 여부(N = 475)

1심 유죄 여부	2심 유죄 여부	추가 합의 여부	빈도
무죄	무죄	없음	46
무죄	유죄	없음	26
유죄	무죄	없음	27
유죄	유죄	1심 합의 → 2심 미합의	8
		없음	333
		1심 미합의 → 2심합의	134
		총계(Total)	475

나) 형종의 변화

합의 여부가 형의 종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1심 판결에서의 형의 종류와 2심에서 추가적인 합의값을 기반으로 2심에서 형의 종류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2심 판결결과(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에 대한 예측에서 1심 판결결과와 추가 합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15.606$, $df = 5$, $p < .001$). 1심에서 무죄($\beta = -3.977$, $p < .001$) 혹은 집행유예($\beta = -2.402$, $p < .001$)를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도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beta = 1.811$, $p < .001$)는 2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심에서 벌금형($\beta = -1.108$, $p = .151$)과 추가 합의가 없었던 경우($\beta = 0.960$, $p = .21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2심에서의 합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1심에서의 판결결과와 추가 합의 여부가 2심 판결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1심에서의 형의 종류가 무거울수록 2심에서의 형의 종류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표 4-31> 2심 판결결과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항목	추정치 (Estimate)	표준 오차 (Std. Error)	Wald	자유 도 (df)	유의확 률(Sig.)	95% 신뢰구간 (하한 - 상한)
임계값(Threshold)						
[2심 유무죄벌금형 = .00]	-1.998	0.210	90.127	1	.000	-2.410 to -1.586
[2심 유무죄벌금형 = 1.00]	-1.955	0.209	87.515	1	.000	-2.365 to -1.546
[2심 유무죄벌금형 = 2.00]	-0.087	0.170	0.258	1	.612	-0.421 to 0.248
위치(Location)						
[1심 유무죄벌금형 = .00]	-3.977	0.310	164.137	1	.000	-4.585 to -3.368
[1심 유무죄벌금형 = 1.00]	-1.108	0.772	2.062	1	.151	-2.621 to 0.405
[1심 유무죄벌금형 = 2.00]	-2.402	0.300	64.062	1	.000	-2.990 to -1.814
[1심 유무죄벌금형 = 3.00]	0	-	-	-	-	-
[추가 합의 여부 = -1.00]	0.960	0.778	1.522	1	.217	-0.565 to 2.486
[추가 합의 여부 = .00]	1.811	0.231	61.340	1	.000	1.358 to 2.264
[추가 합의 여부 = 1.00]	0	-	-	-	-	-

다) 형량의 변화

피고인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형량이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하고, 1심 실형기간과 추가적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2심에서의 실형기간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두 모형에서 모두 예측변인이 2심 실행기간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_집행유예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51)=41.16, p < .001$, 총 변량의 61.7%를 설명하였다($R^2 = .617$). 실행 모형의 경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437) = 921.08, p < .001$, 총 변량의 80.8%를 설명하였다 ($R^2 = .807$). 1심 실행기간은 두 모형(실행_집행유예, 실행) 모두에서 2심 실행기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67, p < .001$; $\beta = 0.876, p < .001$). 1심 실행기간이 길수록 2심에서도 실행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추가 합의 여부는 1심에서 실행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0.120, p < .001$), 2심에서 실행기간이 평균적으로 10.3개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심에서 추가 합의 여부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136, p = .124$).

» **〈표 4-32〉 2심 실행기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SE)	표준화 계수 Beta	t값	유의확률 (Sig.)
실행_집행유예 (모형 1)					
(Constant)	1.071	2.561	-	0.418	0.678
1심 실행기간 (개월)	0.879	0.099	0.767	8.842	< .001
추가합의 여부	-3.227	2.064	-0.136	-1.563	0.124
실행 (모형 2)					
(Constant)	1.737	1.576	-	1.102	0.271
1심 실행기간 (개월)	0.884	0.021	0.876	41.486	< .001
추가합의 여부	-10.305	1.815	-0.120	-5.679	< .001

다. 법관의 개인적 특성이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 2심에서 법관의 특성

가) 성별, 경력, 변호인과의 관계

1심과 2심 재판장의 성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1심 재판장에서 남성 재판장은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여성 재판장은 13.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2심에서도 남성 재판장이 87.6%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여성 재판장은 10.8%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1심과 2심 재판장 간의 성별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 = 2.14$, $df = 1$, $p = .144$). 이는 심급에 따라 재판장의 성별 구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표 4-33> 1심 및 2심 재판장 성별 분포

성별	1심 재판장 (N, %)	2심 재판장 (N, %)	총계 (N, %)
남성	491 (85.5%)	503 (87.6%)	994 (86.6%)
여성	77 (13.4%)	62 (10.8%)	139 (12.1%)
결측	6 (1.0%)	9 (1.6%)	15 (1.3%)
합계	574 (100%)	574 (100%)	1148 (100%)

나) 법관의 경력

<표 4-34>는 1심 재판장과 2심 재판장의 변호사 및 검사 경력을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1심에서 재판장이 변호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경우, 2심에서도 경력이 없는 경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9건은 2심에서 검사 경력을 가진 경우였다.

1심에서 변호사 경력이 있는 재판장은 32건 중 25건이 2심에서도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건은 검사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검사 경력이 있었던 재판장은 229건 중 153건이 2심에서도 경력이 없었으며, 76건은 검사 경력이 지속되었다.

변호사와 검사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8건에 불과하며, 5건은 2심에서 별도의 경력이 없는 경우, 3건은 검사 경력이 유지된 경우였다.

전반적으로 2심 재판장에서 검사 출신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드러나며, 변호사 출신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1심과 2심 재판장 간의 경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 = 2.84$, $df = 6$, $p = .828$). 이는 심급에 따라 재판장의 경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표 4-34〉 법관의 경력**

		2심 재판장 경력			Total
		없음	변호사	검사	
1심 재판장 경력	없음	195	1	99	295
	변호사	25	0	7	32
	검사	153	0	76	229
	변호사&검사	5	0	3	8
합계		378	1	185	564

다) 변호인과의 관계

(1) 동일고교 출신 여부

〈표 4-35〉는 1심 및 2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가 일치하는지를 분석한 교차표이다.

1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의 고등학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4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심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며, 항소심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단 3건에 그쳤다.

» **〈표 4-35〉 항소심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일치 여부**

		2심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대학교 일치 여부		계
		불일치	일치	
항소심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일치 여부	불일치	444	3	447
	일치	4	0	0
Total		448	3	451

(2) 동일대학 출신 여부

〈표 4-36〉은 1심 및 2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들이 동일한 대학 출신인지를 분석한 표이다. 1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가 대학교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304건으로 전체의 약 82%에 달하고, 일치하는 경우는 84건으로 전체 사례의 18%에 해당한다. 항소심에서도 불일치 사례는 355건(77.2%), 일치 사례는 105건(22.8%)으로 분석된다. 카이제곱 분석결과 1심보다 2심에서 동일한 대학 출신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15.805$, $df = 1$, $p < .001$).

▶▶ <표 4-36> 항소심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대학교 일치 여부

		2심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대학교 일치 여부		계
		불일치	일치	
1심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대학교 일치 여부	불일치	304	72	376
	일치	51	33	84
Total		355	105	460

(3) 동일 법원 경험 여부

교차분석 결과, 재판장과 변호사(판사 경험 있는 경우)가 같은 시기에 같은 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항소심 재판장과 변호사가 같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Pearson $\chi^2(1) = 52.58$, $p < .001$ 로 두 변인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1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의 경력이 중복된 경우, 항소심에서도 중복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법부에서 경력 중복이라는 요소가 항소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법원 내에서 네트워크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표 4-37> 항소심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동일법원 경험 여부

	2심 재판장과 변호사 경력 중복			합계
		중복없음	중복있음	
1심 재판장과 변호사 경력 중복	중복없음	427	24	451
	중복있음	5	7	12
합계	432	31	463	

(4) 법관-변호사간 경력의 차이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평균 = 5.83)가 항소심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평균 = 10.33)보다 유의미하게 작았다($t(465) = -7.232$, $p < .001$). 두 평균의 차이는 -4.502이며, 95% 신뢰구간은 -5.725에서 -3.279

로 나타났다. 이는 항소심 재판장이 1심 재판장보다 변호사에 비해 사법시험 합격 연도가 더 앞서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재판복잡성

가) 판결문 길이

(1)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대학 일치 여부에 따른 판결문 길이

쌍체표본 분석 결과, 재판장과 변호사의 대학교 일치 여부에 따라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교가 일치한 경우 1심 판결문 길이($M = 241.36$, $SD = 210.07$)가 불일치한 경우($M = 187.96$, $SD = 166.36$)보다 길었다. 2심에서도 일치한 경우($M = 219.58$, $SD = 199.37$)가 불일치한 경우($M = 170.91$, $SD = 159.70$)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판장과 변호사의 대학교가 2심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도 1심 판결문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학연이라기 보다는 사건이 복잡한 경우 오히려 동일한 대학 출신을 선호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표 4-38> 1심 및 2심 판결문 길이와 항소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대학교 일치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

대학교 일치 여부	측정 항목	평균	표준편차	N
일치	1심 판결문 길이(문장)	241.36	210.07	114
	2심 판결문 길이(문장)	219.58	199.37	114
불일치	1심 판결문 길이(문장)	187.96	166.36	383
	2심 판결문 길이(문장)	170.91	159.70	383

(2)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동일 지법 경력 유무에 따른 판결문 길이

재판장과 변호사의 경력 중복 여부는 판결문 길이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 평균 판결문 길이가 253.13문장으로, 중복되지 않은 경우(198.10문장)보다 길었다. 2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중복된 경우 평균 판결문 길이가 234.68문장으로, 중복되지 않은 경우(179.90문장)보다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 중복이 있는 경우 판결문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판결문 길이의 차이는 재판장과 변호사 간의 네트워크 및 경험 공유가 사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복된 경우 판결문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은 사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나 법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만, 1심 판결문에서도 판결문의 길이가 2심 변호사와 법관의 경력 중복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복잡한 사건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 〈표 4-39〉 1심 및 2심 판결문 길이와 항소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경력 중복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

	경력 중복 여부	평균	표준편차	N
1심 판결문 길이 (문장)	중복 없음	198.10	176.90	473
	중복 있음	253.13	205.73	31
	합계	201.49	179.06	504
2심 판결문 길이 (문장)	중복 없음	179.90	170.27	473
	중복 있음	234.68	178.97	31
	합계	183.27	171.14	504

(3) 법관-변호사간 경력의 차이

2심 재판장과 변호사들 중 가장 빠른 연령의 변호사의 경력차이가 1·2심 판결문 길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p=.287, .317$).

나) 2심 판결 시간

판결 기간(1심-2심 소요 기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항소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치 여부, 동일 법원 근무 경력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교 일치 여부에 따라 불일치 그룹($M = 159.04, SD = 76.76$)과 일치 그룹($M = 162.09, SD = 86.41$)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t(496) = -0.361, p = .718$ 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일치 여부에 따른 불일치 그룹($M = 160.21, SD = 79.36$)과 일치 그룹($M = 127.33, SD = 27.43$) 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t(491) = 0.717, p = .474$ 로 분석되었다. 동일 법원 근무 경력 여부에 따라 중복 없음 그룹($M = 158.94, SD = 79.35$)과 중복 있음 그룹($M = 179.19, SD = 81.39$) 간의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으며, $t(503) = -1.375, p = .170$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판장과 변호사의 학연 및 법원 내 경력 중복 여부가 판결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2심 재판장과 변호사들 중 가장 빠른 연령의 변호사와의 경력 차이가 1심 선고 후

2심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과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r=-.025$, $p=.574$).

3) 양형의 변화

가) 유무죄 판단의 변화

(1)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대학 일치 여부에 따른 유무죄 판단의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심 유무죄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1심 유무죄 여부 및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를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분석에서,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610$). 유사하게, 1심 유무죄 여부와 출신 대학교 일치 여부를 예측변인으로 한 별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출신 대학교 일치 여부는 2심 유무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 > .650$). 2심 재판장과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같은 지법에서 일한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 > .505$).

(2) 2심 재판장의 성별에 따른 유무죄 판단의 변화

2심 재판장의 성별에 따라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2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되는 비율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성 재판장이 항소심을 맡은 경우,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의 93.8%(412/439)가 2심에서도 유죄를 유지하였다. 반면, 여성 재판장이 맡은 경우,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은 100%(54/54) 2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되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의 경우, 남성 재판장은 43건(67.2%)을 무죄로 유지하고, 21건(32.8%)은 유죄로 변경하였다. 여성 재판장은 1심 무죄 사건 중 5건(62.5%)을 유죄로 변경하고, 3건(37.5%)을 무죄로 유지하였다.

▶▶▶ <표 4-40> 1심 유죄 여부와 2심 유죄 여부 간의 교차분석(항소심 재판장 성별에 따른 결과)

항소심 재판장 성별	1심 유죄 여부	2심 유죄 여부	빈도 (Count)
결측값	유죄	유죄	9
		무죄	0
	합계		9
1 (남성)	무죄	유죄	21
		무죄	43
	유죄	유죄	412
		무죄	27
	합계		503
2 (여성)	무죄	유죄	5
		무죄	3
	유죄	유죄	54
		무죄	0
	합계		62

추가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심에서의 유죄 여부는 1심 유죄 여부와 항소심 재판장의 성별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측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2 로그 우도(-2 Log Likelihood) 값이 296.10으로 나타났으며, Cox & Snell $R^2 = .218$, Nagelkerke $R^2 = .406$ 으로 설명력은 40.6% 수준이었다. 이는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2심 유죄 여부)의 변동을 상당 부분 설명함을 의미한다.

분류 정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91.0%의 사례가 정확히 분류되었다. 무죄 사례는 58.9%의 정확도로, 유죄 사례는 95.7%의 정확도로 예측되었다. 회귀 계수 분석에서 1심 유죄 여부는 $B = 3.515$, $p < .001$ 로 매우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오즈비(Exp(B))는 33.618로, 1심에서 유죄였던 경우 2심에서 유죄일 가능성이 33배 높았다. 또한, 항소심 재판장의 성별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 $B = 1.645$, $p = .017$ 로 나타났으며, 여성 재판장이 있을 경우 유죄 가능성이 약 5.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재판장의 성별이 2심 판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재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유지하거나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성별에 따라 판결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지 여부는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재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유지하거나 1심 무죄판결을 2심에서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성별에 따라 판결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는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표 4-41> 2심에서의 유죄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변인	B	표준오차 (S.E.)	Wald	자유도(df)	p값 (Sig.)	Exp(B)
1심 유죄 여부 (1=유죄, 0=무죄)	3.515	.327	115.64	1	.000	33.618
항소심 재판장 성별 (1=남자, 2=여자)	1.645	.688	5.718	1	.017	5.182
상수(Constant)	-2.409	.803	9.009	1	.003	.090

(3) 법관-변호사간 경력의 차이

2심 재판장과 변호사들 중 가장 빠른 연령의 변호사의 경력차이가 2심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심 유죄 여부(1 = 유죄, 0 = 무죄)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2 로그 가능도(-2 Log Likelihood)는 284.11이었으며, Cox & Snell R^2 는 .204, Nagelkerke R^2 는 .375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가 적절함을 시사하였다. 재판장과 변호사의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는 2심 유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4$, $p=.096$). 이러한 결과는 1심 판결이 2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법조인의 경력 차이는 2심 유죄 여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나) 형종의 변화

(1)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교·대학 일치 여부에 따른 형종의 변화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대학 일치 여부,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 그리고 동일 지법 경력 유무가 형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 재판 형종의 ordinal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치 여부, 동일 지법 경력 유무, 그리고 1심 재판 형종의 ordinal 데이터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이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LL = 166.38, $\chi^2(6) = 125.53$, $p < .001$). Pseudo R^2 지표는 Cox & Snell $R^2 = .224$, Nagelkerke $R^2 = .266$, McFadden $R^2 = .136$ 으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Pearson 카이제곱 검정($\chi^2(39) = 109.93$, $p < .001$)과 Deviance 검정($\chi^2(39) = 117.99$, $p < .001$)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데이터에 완벽하게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변인 분석 결과,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일치 여부는 2심 형종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s > .05$). 또한, 동일 지법 경력 여부 역시 형종 변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1심 재판 형종은 2심 형종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심 형종이 2심 형종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p < .001$). 구체적으로 1심이 무죄인 경우,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았다($B = -3.07$, $SE = 0.30$, $Wald = 104.79$, $p < .001$). 1심이 실형_집행유예인 경우, 2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B = -1.75$, $SE = 0.30$, $Wald = 34.71$, $p < .001$). 1심이 벌금형인 경우, 2심 판결과의 유의미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B = -0.22$, $SE = 0.76$, $Wald = 0.08$, $p = .776$).

결론적으로, 재판장과 변호사의 학연 또는 동일 지법 경력은 2심 형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심 형종은 주로 1심 형종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2) 2심 재판장의 성별에 따른 형종의 변화

2심 판결 형종(유무죄 및 벌금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1심 판결 형종(ordinal data)과 항소심 재판장의 성별(남성=1, 여성=2)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이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LL = 159.01, $\chi^2(4) = 143.69$, $p < .001$).

주요 변인 분석 결과, 재판장의 성별은 2심 형종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 = -0.235$, $SE = .301$, $Wald \chi^2 = 0.61$, $p = .435$). 이 결과는 2심 판결이 1심 결과에 크게 의존하며, 재판장의 성별과 같은 개인적 요인은 판결 형종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3) 법관-변호사 간 경력의 차이

법관과 변호사 간 경력의 차이가 형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ordinal logistic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여러 범주에서 추정치가 유의미하지 않았고($p > .05$), 이 결과는 재판장과 변호사의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는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 형량의 변화

(1)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교·대학 일치 여부에 따른 형량의 변화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대학 일치 여부,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 그리고 동일 지법 경력 유무가 실행(집행유예 포함)을 피고인에게 선고한 후 2심에서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 재판 형량(개월수)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치 여부, 동일 지법 경력 유무, 그리고 1심 재판 형량 데이터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4, 489) = 487.86$, $p < .001$, 총 변량의 80.0%를 설명하였다($R^2 = .800$, 조정된 $R^2 = .798$).

주요 독립변인 분석결과,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일치 여부는 2심 형량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_s > .05$). 또한, 동일 지법 경력 여부 역시 형량 변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1심 재판 형량은 2심 형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심 형량이 2심 형량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p < .001$).

결론적으로, 재판장과 변호사의 학연 또는 동일 지법 경력은 2심 형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심 형량은 주로 1심 형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2) 1심 실행기간 및 2심 재판장의 성별에 따른 형량의 변화

1심 실행기간 및 2심 재판장의 성별에 따른 형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 562) = 1044.38$, $p < .001$, 총 변량의 78.8%를 설명하였다($R^2 = .788$, 조정된 $R^2 = .787$).

주요 독립변인 분석 결과, 2심 실행기간(개월)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1심 실행기간(개월)과 항소심 재판장 성별(남성=1, 여성=2)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1심 실행기간은 2심 실행기간에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B = .849$, $SE = .019$, $\beta = .884$, $t = 45.460$, $p < .001$), 이는 1심 실행기간이 길수록 2심 실행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항소심 재판장의 성별도 2심 실행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 = 5.673$, $SE = 2.444$, $\beta = .045$, $t = 2.322$, $p = .021$),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 **〈표 4-42〉** 형량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2심 실행기간: 종속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p
(Constant)	-4.153	2.894	-	-1.435	.152
1심 실행기간 (개월)	.849	.019	.884	45.460	< .001
항소심 재판장 성별 (1=남자, 2=여자)	5.673	2.444	.045	2.322	.021

Note. 종속변인: 2심 실행기간 (개월)

(3) 법관-변호사 간 경력의 차이

법관과 변호사 간 경력의 차이가 2심 양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심 형량과 경력차이 값을 독립변인으로, 2심 형량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전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 562) = 1044.38$, $p < .001$, 총 변량의 78.8%를 설명하였다($R^2 = .788$, 조정된 $R^2 = .787$).

주요 독립변인 분석 결과, 경력차이는 2심 형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96$, $t = 1.378$, $p > .150$).

라. 변호사의 경험이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 2심에서 변호인의 특성

개별 변호사의 성별이나 경력을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통계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변호인단에 여성 변호사가 포함되었는지와 변호사 이외의 경력이 포함되었는지를 하나의 변인으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가) 변호인의 성별

1심과 2심에서 변호인단 내 여성 변호사의 존재 여부를 비교한 결과, 1심에서는 변호인단에 여성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77.0%로, 포함된 경우(23.0%)보다 훨씬 많았다. 2심에서도 변호인단에 여성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80.8%로 나타나, 포함된 경우(19.2%)보다 많았다. 심급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1) = 2.31$, $p = .129$ 으로 나타났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변호인단 내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43〉 1심 및 2심 변호인단 내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에 대한 빈도 분석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	1심		2심	
	빈도 (Frequency)	백분율 (Percent)	빈도 (Frequency)	백분율 (Percent)
있음	132	23.0	110	19.2
없음	442	77.0	464	80.8
합계	574	100.0	574	100.0

나) 변호인의 경력

1심과 2심에서 변호인단 내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를 비교한 결과, 1심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포함된 경우가 21.9%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78.1%)보다 적었다. 2심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포함된 경우가 28.2%로, 1심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chi^2(1) = 5.09$, $p = .024$ 로 나타났으며, 이는 1심과 2심에서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2심에서 전관 변호사의 비율이 1심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급이 올라갈수록 전관 변호사가 더 자주 선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표 4-44〉 1심 및 2심 변호인단 내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에 대한 빈도 분석**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	1심		2심	
	빈도 (Frequency)	백분율 (Percent)	빈도 (Frequency)	백분율 (Percent)
있음	112	19.5	144	25.1
없음	399	69.5	366	63.8
합계	511	89.0	510	88.9
누락 (Missing)	63	11.0	64	11.1
총합계	574	100.0	574	100.0

1심과 2심에서 변호인단 내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를 비교한 결과, 1심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포함된 경우가 21.9%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78.1%)보다 적었다. 2심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포함된 경우가 28.2%로, 1심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chi^2(1) = 5.09$, $p = .024$ 로 나타났으며, 이는 1심과 2심에서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2심에서 전관 변호사의 비율이 1심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급이 올라갈수록 전관 변호사가 더 자주 선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재판복잡성

가) 판결문의 길이

(1) 여성 변호사의 존재가 판결문 길이에 미치는 영향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에 따른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 변호사가 포함된 경우 평균적으로 더 긴 판결문이 작성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심에서 여성 변호사가 없는 경우 평균 판결문 길이는 195.98문장, 있는 경우 214.91문장으로 나타났으나, $t = -1.03$, $p = .304$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여성 변호사가 없는 경우 평균 판결문 길이는 174.58문장, 있는 경우 203.29문장으로 나타났으며, $t =$

-1.64, $p = .102$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 변호사의 존재 여부가 판결문 길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표 4-45>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에 따른 1심 및 2심 판결문 길이 기술통계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	1심			2심		
	1심 평균 (Mean)	1심 표준편차 (Std. Deviation)	1심 표본수 (N)	2심 평균 (Mean)	2심 표준편차 (Std. Deviation)	2심 표본수 (N)
있음	214.91	223.288	110	203.29	220.289	110
없음	195.98	159.451	462	174.58	149.571	462
전체	199.62	173.493	572	180.10	165.691	572

(2) 전관 변호사의 존재가 판결문 길이에 미치는 영향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에 따른 1심 및 2심 판결문 길이를 비교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전관 변호사의 존재는 판결문 길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전관 변호사가 있는 경우 평균 판결문 길이는 229.31문장으로, 없는 경우의 189.81문장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t = -2.26$, $p = .024$). 2심에서도 전관 변호사가 있는 경우 평균 판결문 길이는 208.90문장으로, 없는 경우의 172.49문장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t = -2.18$, $p = .030$). 이는 전관 변호사가 포함된 재판에서 판결문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1심에서도 복잡한 사건에 전관변호사가 2심에 선임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 <표 4-46>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에 따른 1심 및 2심 판결문 길이 기술통계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	1심 평균 (Mean)	1심 표준편차 (Std. Deviation)	1심 표본수 (N)	2심 평균 (Mean)	2심 표준편차 (Std. Deviation)	2심 표본수 (N)
있음	229.31	204.310	144	208.90	192.474	144
없음	189.81	166.187	364	172.49	160.239	364
전체	201.01	178.508	508	182.81	170.595	508

나) 2심 판결 시간

1심 선고에서 2심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을 비교한 결과, 2심에서 여성 변호사가 존재하는 경우(평균 = 161.52일, 표준편차 = 76.017일)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평균 = 158.79일, 표준편차 = 79.548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571) = -0.325$, $p > .745$). 이는 2심에서 여성 변호사의 존재 여부가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1심 선고에서 2심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을 비교한 결과, 2심에서 전관 변호사가 존재하는 경우(평균 = 168.03일, 표준편차 = 79.901일)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평균 = 157.09일, 표준편차 = 79.072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507) = -1.401$, $p = .162$). 이는 2심에서 전관 변호사의 존재 여부가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3) 양형의 변화

가) 유무죄 판단의 변화

(1) 2심에서 여성 변호사의 참여

2심에서 여성 변호사의 참여 여부가 2심 유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변인(종속변인)은 2심 유죄 여부(1 = 유죄, 0 = 무죄)이며, 예측변인(독립변인)은 1심 유죄 여부(1 = 유죄, 0 = 무죄)와 2심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1 = 있음, 0 = 없음)로 설정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2 로그 가능도(-2 Log Likelihood)는 303.15였으며, Cox & Snell $R^2 = .209$, Nagelkerke $R^2 = .391$ 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독립변인 분석 결과, 여성 변호사의 존재는 2심 유죄 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435$, $SE = 0.364$, Wald $\chi^2 = 1.427$, $p = .232$, $\text{Exp}(B) = 0.647$). 이는 2심에서 여성 변호사가 참여했는지 여부가 유죄판결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전관 변호사의 존재여부

2심에서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가 2심 유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 유죄 여부(1 = 유죄, 0 = 무죄)이며, 독립변인은 1심 유죄 여부(1 = 유죄, 0 = 무죄)와 2심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1 = 있음, 0 = 없음)로 설정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2 로그 가능도(-2 Log Likelihood)는 270.57이었으며, Cox & Snell $R^2 = .213$, Nagelkerke $R^2 = .397$ 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독립변인 분석 결과, 2심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는 2심 유죄 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B = -0.898$, $SE = 0.378$, Wald $\chi^2 = 5.646$, $p = .017$, $\text{Exp}(B) = 0.407$). 이는 전관 변호사가 있는 경우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약 0.407배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전관 변호사의 존재가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 관계 판단 및 법적인 판단의 변화 유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관변호사가 있는 경우 2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개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사실인정 유죄 개수와 법률적 판단 유죄 개수는 전관변호사가 없는 경우보다 각각 낮았으며($p = .036$, $p = .041$), 이는 전관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에 효과적으로 기여해 유죄 인정 가능성을 줄이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전관변호사가 있는 경우 더 낮게 평가되었으며($p = .001$, $p = .012$), 이는 전관변호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2심 사실인정 및 법률적 판단에서 무죄 개수는 전관변호사가 있는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05$). 이는 전관변호사가 일부 무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전관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 전략에서 유죄 판단을 줄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형종의 변화

(1) 2심에서 여성 변호사의 참여

2심 판결 형종(유무죄 및 벌금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ordinal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2심 판결 형종(ordinal data)이며, 예측 변수는 1심 판결 형종(ordinal data)과 2심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1 = 있음, 0 = 없음)로 설정되었다. 심 판결 형종(유무죄 및 벌금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ordinal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 판결 형종(ordinal data)이며, 예측변인은 1심 판결 형종(ordinal data)과 2심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1 = 있음, 0 = 없음)로 설정되었다. 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 최종 모형이 절편만 포함된 기본 모형보다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Log Likelihood = 159.418, $\chi^2(4) = 146.765$, $p < .001$). Pseudo R^2 지표는 Cox & Snell $R^2 = .226$, Nagelkerke $R^2 = .269$, McFadden $R^2 = .141$ 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예측변인 분석 결과, 여성 변호사의 존재 여부는 2심 판결 형종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96$, $p = .389$). 이는 여성 변호사의 존재가 2심에서 형종 변화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2심 판결 형종은 주로 1심 판결 형종에 의해 결정되며, 여성 변호사의 참여는 판결 형종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관 변호사의 존재여부

2심 판결 형종(유무죄 및 벌금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ordinal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 판결 형종(ordinal data)이며, 예측변인은 1심 판결 형종(ordinal data)과 2심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1 = 있음, 0 = 없음)로 설정되었다. 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 최종 모형이 절편만 포함된 기본 모형보다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Log Likelihood = 159.418, $\chi^2(4) = 146.765$, $p < .001$). Pseudo R^2 지표는 Cox & Snell $R^2 = .226$, Nagelkerke $R^2 = .269$, McFadden $R^2 = .141$ 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심 전관 변호사의 존재 여부는 2심 판결 형종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24$, $p = .125$). 이는 전관 변호사의 존재가 2심에서 형종 변화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2심 판결 형종은 주로 1심 판결 형종에 의해 결정되며, 전관 변호사의 참여는 판결 형종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형량의 변화

(1) 2심에서 여성 변호사의 참여

1심 실행기간과 2심에서 여성 변호사의 존재 여부가 2심 실행기간(개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 실행기간(개월)이며, 독립변인은 1심 실행기간(개월)과 2심 여성 변호사 존재 여부(1 = 있음, 0 = 없음)로 설정되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전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 571) = 1054.88$, $p < .001$, 총 변량의 78.7%를 설명하였다($R^2 = .787$, 조정된 $R^2 = .786$). 주요 변인 분석 결과, 1심 실행기간은 2심 실행기간에 매우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며($B = 0.852$, $\beta = 0.887$, $t = 45.926$, $p < .001$), 이는 1심 실행기간이 길수록 2심 실행기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2심에서 여성 변호사의 존재 여부는 2심 실행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56$, $\beta = -0.003$, $t = -0.133$, $p = .894$). 이는 여성 변호사의 참여 여부가 2심 실행기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2심 실행기간은 주로 1심 실행기간에 의해 결정되며, 여성 변호사의 존재는 2심 실행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관 변호사의 존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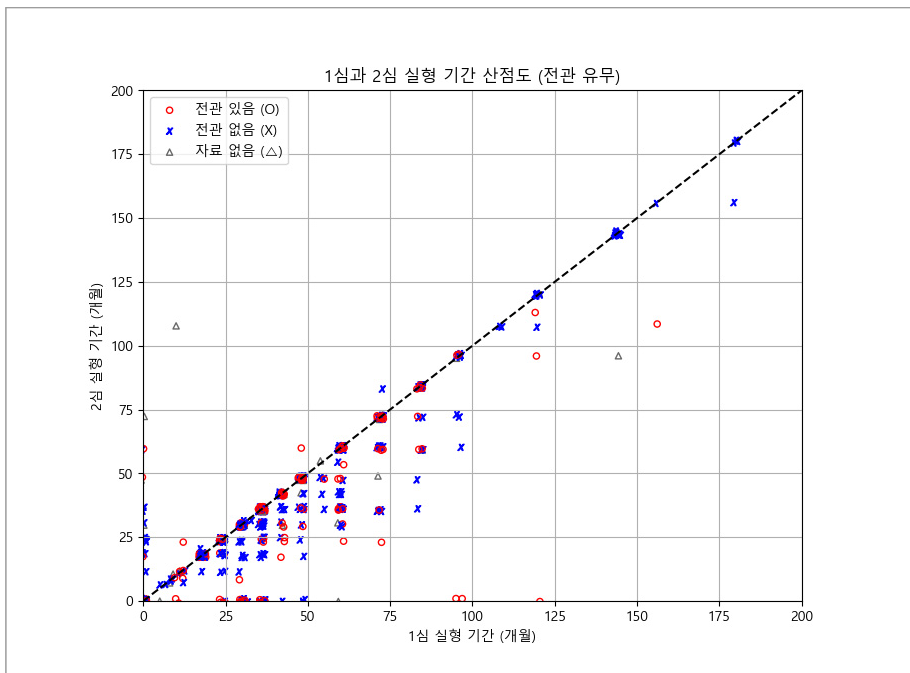
1심 실행기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관 변호사의 존재 여부가 2심 실행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 실행기간(개월)이며, 독립변인은 1심 실행기간(개월)과 2심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1 = 있음, 0 = 없음)로 설정되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전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 507) = 1034.96$, $p < .001$, 총 변량의 80.3%를 설명하였다($R^2 = .803$, 조정된 $R^2 = .802$). 주요 예측변인 분석 결과, 1심 실행기간은 2심 실행기간에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B = 0.863$, $\beta = 0.896$, $t = 45.484$, $p < .001$). 이는 1심 실행기간이 증가할수록 2심 실행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관 변호사의 존재 여부도 2심 실행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3.922$, $\beta = -0.044$,

$t = -2.237$, $p = .026$), 이는 2심에서 전관 변호사가 있을 경우 실행기간이 약 3.92개월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2심 실행기간은 1심 실행기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시에, 전관 변호사가 참여한 경우 실행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관 변호사의 존재가 2심 형량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그림 4-2] 1심과 2심 실행기간 산점도(전관 유무)



이 그래프는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실행기간을 비교하여 전관 변호사의 존재와 자료 유무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양형은 그래프의 편의상 200개월을 최대치로 작성하였다.

대각선 점선은 1심과 2심의 형량이 동일한 경우를 나타내며, 점선 아래의 데이터는 2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경우, 점선 위의 데이터는 형량이 증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프에는 전관이 있는 경우(빨간 ○), 전관이 없는 경우(파란 x), 그리고 자료가 없는 경우(회색 △)로 구분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전관 변호사가 있는 경우(빨간 ○) 2심에서 형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전관 변호사가 없는 경우(파란 x)에는 2심에서 형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 이는 전관 변호사의 개입이 2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료가 없는 경우(회색 △)는 데이터의 수가 적으며, 형량 변화에 있어 명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전관 변호사가 있을 때 1심과 2심 간의 형량 차이가 더 큰 경우가 많아, 전관 변호사의 존재가 2심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 횡령·배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요인에 대한 연구

1. 판결문 수집 방법과 내용

가. 표집

본 절에서는 재산범죄 중의 하나이며 대표적인 경제범죄인 배임·횡령죄에 있어 심급별 재판 결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배임·횡령죄의 1심과 2심 판결을 비교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검색을 사용하여, ‘배임’과 ‘횡령’이라는 키워드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심 판결이 이루어진 판결문을 검색하였다. ‘배임’ ‘횡령’이라는 키워드로 기간 중 2심이 완결된 총 1,243건의 판결문이 검색되었고, Casenote pro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추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요 죄명이 ‘배임’이나 ‘횡령’이 아닌 경우, 또는 판결문에 내용이 부족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판례 등을 제외하고 총 754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판결문과 함께 판결문에 기재된 판사와 변호사의 경력에 대해서는 본 연구원과 MOU를 맺고 있는 「법률신문」의 협조를 받아 ‘한국법조인대관’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판결문의 판사에 대해서는 재판장 1인에 대해서, 변호사는 최대 3명까지의 경력을

조사하였다.

나. 변인구성

판결문 및 ‘한국법조인대관’을 활용하여 수집한 변인은 아래 <표 4-47>과 같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변인을 추출하였으며, 일부 변인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아 결측값이 다소 많이 나타났다. 법관, 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추출하였기 때문에, 동명이인이거나 비실명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측값으로 표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분석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이 활용되었으나, 이 중에서 중요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표 4-47> 변인구성

분류	변인 목록
사건 정보	파일명, 사건번호(1심), 사건번호(2심), 1심 양형, 2심 양형, 1심 집행유예 여부, 2심 집행유예 여부, 1심-2심 기간(일), 위력(무기, 제압 등) 여부
피고인 정보	성별(1=남자, 2=여자), 피고인 전과 여부, 피고인 연령, 반성 여부 (1심), 반성 여부 (2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1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2심)
피해 관련 정보	피해자수, 피해금액
판결문 정보	1심 판결문 길이(문장), 2심 판결문 길이(문장), 1심 사실인정 (유죄/무죄), 1심 법률적 판단 (유죄/무죄), 2심 사실인정 (유죄/무죄), 2심 법률적 판단 (유죄/무죄), 양형인자 (감경·가중)
재판장 정보 (1심)	재판장 성별, 재판장 고교졸업연도, 재판장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재판장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재판장 출신지역, 재판장 출신고교명, 재판장 출신대학명, 재판장 출신학과명, 재판장 변호사/검사 경력 여부, 재판장의 선고 당시 직위
재판장 정보 (2심)	재판장 성별, 재판장 고교졸업연도, 재판장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재판장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재판장 출신지역, 재판장 출신고교명, 재판장 출신대학명, 재판장 출신학과명, 재판장 변호사/검사 경력 여부, 재판장의 선고 당시 직위
변호인 정보 (1심)	변호사 성별, 고교졸업연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출신지역, 출신고교명, 출신대학명, 출신학과명, 판사/검사 경력 여부, 최종직위(부장검사 등), 법무법인 소속 여부
변호인 정보 (2심)	변호사1~3 성별, 고교졸업연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출신지역, 출신고교명, 출신대학명, 출신학과명, 판사/검사 경력 여부, 최종직위(부장검사 등), 법무법인 소속 여부
재판장-변호사 관계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일치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대학교 일치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판사 경험 있는 경우)의 경력 중복 여부(같은 시기에 같은 지법에서 일한 경우),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사법(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차이(양수: 판사가 빠른 경우, 음수: 변호사가 빠른 경우)

2. 판결문의 기술적 통계

가. 1·2심 법관 및 변호인 정보

1) 1·2심 재판장 특성

가) 성별

1심과 2심 재판장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두 심급 모두 남성 재판장의 비율이 높았다. 1심 재판장의 경우 남성이 73.7%, 여성 재판장은 26.3%로 나타났다. 2심 재판장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남성 재판장이 84.3%, 여성 재판장은 15.7%를 차지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여성 재판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항소심(2심)에서 남성 재판장의 비율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8> 1심 및 2심 재판장 성별 분포(N = 754)

성별	1심	2심
남성	556(73.7%)	636(84.3%)
여성	198(26.3%)	118(15.7%)
합계	754(100.0%)	754(100.0%)

나) 경력

1심과 2심 재판장의 변호사 및 검사 경력 분포를 분석한 결과, 두 심급 모두에서 검사 출신 재판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13.48$, $p < .001$). 1심 재판장의 경우, 검사 출신이 35.5%(25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변호사 출신은 11.1%(81명)로 확인되었다. 검사와 변호사 두 경력을 모두 가진 재판장은 0.3%(2명)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재판장은 53.2%(388명)로 나타나, 전체 1심 재판장의 절반 이상이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을 거치지 않고 판사직을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2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재판장의 비율이 60.6%(445명)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항소심 재판장에서 이러한 경력 유형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반영한다. 검사 출신 재판장은 29.3%(215명)로 1심보다 소폭 감소하

였고, 변호사 출신 재판장은 9.0%(66명)로 나타나, 1심보다 다소 낮아졌다. 또한, 검사와 변호사 경력을 모두 가진 재판장은 1.1%(8명)로, 1심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항소심(2심)으로 갈수록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재판장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특히 변호사 출신 재판장의 비율은 감소하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 <표 4-49> 1심 및 2심 재판장 이전 경력 분포(N = 754)

경력 구분	1심 N(%)	2심 N(%)
검사	259 (35.5%)	215 (29.3%)
변호사	81 (11.1%)	66 (9.0%)
검사&변호사	2 (0.3%)	8 (1.1%)
없음	388 (53.2%)	445 (60.6%)
결측값	24 (3.2%)	20 (2.7%)
합계	754 (100.0%)	754 (100.0%)

2) 변호인 특성

가) 성별

(1) 변호사 별 성별 분포

1심과 2심 변호사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 변호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변호사1의 경우 남성이 56.1%(423명), 여성이 11.4%(86명)로 집계되었으며, 결측값이 32.5%(245명)로 나타났다. 2심 변호사1에서도 남성이 64.3%(48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여성은 11.5%(87명), 결측값은 24.1%(182명)로 확인되었다.

한편, 1심 변호사2와 변호사3, 2심 변호사2와 변호사3에서는 결측값이 상당히 많았다. 1심 변호사2에서는 결측값이 86.0%(648명), 1심 변호사3에서는 95.2%(718명)를 차지하며, 확인된 인원 수가 매우 적었다. 2심 변호사2에서도 결측값이 89.7%(677명), 2심 변호사3에서는 96.7%(729명)로 나타났다. 배임·횡령 범죄의 경우 성범죄와 달리 법관과 변호인의 성별이 판결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생략하였다.

▶▶▶ <표 4-50> 1심 및 2심 변호사 성별 분포(N = 754)

구분	남성 N(%)	여성 N(%)	결측값 N(%)	총계
1심 변호사1	423 (56.1%)	86 (11.4%)	245 (32.5%)	754
1심 변호사2	87 (11.5%)	19 (2.5%)	648 (86.0%)	754
1심 변호사3	31 (4.1%)	5 (0.7%)	718 (95.2%)	754
2심 변호사1	485 (64.3%)	87 (11.5%)	182 (24.1%)	754
2심 변호사2	63 (8.4%)	14 (1.9%)	677 (89.7%)	754
2심 변호사3	19 (2.5%)	6 (0.8%)	729 (96.7%)	754
합계	1108 (53.7%)	217 (10.5%)	3199 (35.8%)	4,524

1심과 2심 변호사의 이전 경력을 분석한 결과,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변호사 중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이 37명, 판사 출신이 26명으로 총 63명이 판사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변호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이 55명으로 1심보다 많았으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총 38명이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청장, 부장검사, 검사 출신으로 구분되며, 1심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 57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부장검사 출신이 42명, 검사 출신이 15명이었다. 2심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총 57명으로 1심과 동일한 규모였으며, 부장검사 출신이 42명, 검사 출신이 13명이었다. 검찰 경력에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2심에서만 2명이 확인되었다.

군 법무관 및 군 관련 직책을 가진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군판사 출신 변호사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1명씩 활동하고 있었으며, 육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도 일부 포함되었다. 공익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군 관련 직책을 가진 변호사의 활동 비율이 항소심에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표 4-51〉** 심급별 변호사 이전 경력 분포(N = 754)

직위	1심 변호사1	1심 변호사2	1심 변호사3	2심 변호사1	2심 변호사2	2심 변호사3	총계
지원장	3	0	1	2	1	1	8
수석부장판사	3	0	2	4	1	1	11
부장판사	37	4	1	43	9	3	97
판사	26	5	1	25	5	1	63
지청장	0	0	0	1	0	1	2
부장검사	17	2	1	20	2	0	42
검사	23	5	1	22	6	0	57
공익법무관	0	0	0	1	0	0	1
군판사	9	1	0	9	0	0	19
고등군판사	1	0	0	1	0	0	2
공군법무감	1	0	0	1	0	0	2
육군법무관	1	0	1	4	0	0	6
군법무관	3	0	0	3	1	0	7
군경찰	1	0	0	0	0	0	1
법무참모	1	0	0	0	0	0	1
고등검찰관	0	0	0	1	0	0	1
변호사	434	99	32	475	62	20	1,122
미기재 (-)	62	635	714	86	666	725	2,918
합계	754	754	754	754	754	754	4,524

심급별 변호인단 내 전관 변호사 포함 여부를 분석한 결과, 심급 간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 = 2.85$, $p = .091$). 1심에서는 전체 사건의 19.5%에서 전관 변호사가 포함된 반면, 2심에서는 21.8%로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전관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 또한 1심 56.1%, 2심 60.7%로 항소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결측값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전관 변호사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 **〈표 4-52〉** 심급별 변호인단 내 전관 변호사 존재 여부(N = 754)

심급	전관 변호사 있음 N(%)	전관 변호사 없음 N(%)	미기재 N(%)	총계
1심	147 (19.5%)	423 (56.1%)	184 (24.4%)	754
2심	164 (21.8%)	458 (60.7%)	132 (17.5%)	754

3) 법관-변호인 관계

가) 출신학교 일치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출신이 동일한 경우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극히 드물었으며, 고등학교 일치 여부에 대한 1심과 2심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1.89$, $p=0.17$).

대학교의 경우, 일치율이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심에서는 13.0%(98명), 2심에서는 16.7%(126명)가 같은 대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 불일치율은 각각 59.5%(1심), 65.0%(2심)로 확인되었다. 이는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 간의 학연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교 일치 여부에서는 1심과 2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4.37$, $p=0.03$). 이는 2심에서 같은 대학교 출신 변호사가 재판장과 함께하는 경우가 1심보다 유의미하게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 **〈표 4-53〉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치 여부(N = 754)**

구분	출신고교		출신대학		총계
	일치 N(%)	불일치 N(%)	일치 N(%)	불일치 N(%)	
1심	2 (0.3%)	526 (69.8%)	98 (13.0%)	449 (59.5%)	754
2심	9 (1.2%)	584 (77.5%)	126 (16.7%)	490 (65.0%)	754
합계	11 (0.7%)	1110 (73.6%)	224 (14.9%)	939 (62.1%)	1,508

나) 경력 중복 여부

재판장과 변호사 간 판사 경력의 중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는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사례가 2.6%(14명)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인 97.4%(549명)는 중복되지 않았다.

2심에서는 판사 경력 중복 비율이 3.5%(22명)로 1심보다 다소 높았으며, 중복되지 않은 비율은 96.5%(598명)였다. 이는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가 과거 동일한 법원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1심보다 다소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중복 사례는 매우 드문 수준임을 보여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심급 간 판사 경력 중복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 = 3.21$, $p = 0.07$). 이는 2심에서 판사 경력 중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우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심급별로 재판장과 변호사 간의 과거 네트워크 형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표 4-54> 재판장과 변호사의 판사 경력 중복 여부 (N = 754)

심급	중복 있음 N(%)	중복 없음 N(%)	총계
1심	14 (1.9%)	549 (72.8%)	191 (25.3%)
2심	22 (2.9%)	598 (79.3%)	134 (17.8%)

다) 경력 차이(법관-변호사 간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

재판장과 변호사 간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장과 변호인단 내 최고참 변호사 간의 평균 차이는 0.31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판장이 변호사보다 평균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2심에서는 평균 차이가 6.39년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변호사보다 평균적으로 약 6년 더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솟값을 살펴보면, 1심에서는 -50으로 변호사가 재판장보다 최대 50년 먼저 합격한 경우도 있었지만, 2심에서는 -46이 최솟값으로, 변호사가 재판장보다 먼저 합격한 경우의 최대 차이는 1심보다 작았다.

통계적으로 1심과 2심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심급 간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4.87, p < .001$). 이는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 간의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가 1심보다 유의미하게 크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1심과 비교했을 때 항소심에서 재판장의 연차가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관과 변호사 간 경력과 지위 차이가 2심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 <표 4-55> 재판장과 변호사 간 사법시험 합격 연도 차이(N = 754)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양수: 판사 빠름, 음수: 변호사 빠름)	표준편차
1심 재판장과 변호사	563	-50	32	0.31	12.265
2심 재판장과 변호사	617	-46	36	6.39	12.091
유효 사례 (listwise)	501				

나. 피고인 및 피해자 정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는 피고인의 연령, 성별, 전과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강간 범죄와 달리 배임·횡령 범죄에서는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피고인의 연령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양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점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결측값이 상당히 존재했다. 반면, 경제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1) 피고인 연령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은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실명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총 분석대상 판결문 754건 중 판결문을 통해 연령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전체의 0.7%인 5건에 불과하고, 99.3%인 749건의 판결문에서 연령을 유추해 볼 수 없었다. 연령이 유추한 5건의 경우 피고인의 연령은 22세, 42세, 45세, 56세, 72세로 어떤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없었다.

2) 피고인 전과

분석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전과를 동종전과와 이종전과로 구분하였으며, 판결문에 전과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이 없거나 양형 판단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전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5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46.3%로 나타났다. 전과가 있는 피고인 중에서는 동종전과 보유자가 30.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종전과만 보유한 경우는 15.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 <표 4-56> 피고인 전과 여부 분포(N = 754)

전과 여부	빈도 (N)	비율 (%)
동종 전과 있음	229	30.4
전과 있음 (동종 전과 없음)	120	15.9
없음	405	53.7
합계	754	100.0

3)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

경제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고용 및 직장 관계’로, 회사와 직원, 고용주와 직원,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법인 대표와 주주, 직장 동료 등의 관계가 포함된다. 둘째, ‘사업 및 동업 관계’로, 동업자, 공동 투자자, 사업 거래 상대방, 사업 파트너, 공사업자와 고객 등의 관계가 해당된다. 셋째, ‘계약 및 거래 관계’로, 계약 당사자, 금융 거래 관계, 임대차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의 계약상 관계가 포함된다. 넷째, ‘개인적 관계’로, 가족, 연인, 친구, 지인, 교수와 대학원생 등의 관계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법적 및 기관 관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가해자, 협회와 회장, 조합과 조합장, 법률사무 대리인과 의뢰인 등의 관계가 포함된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관계 유형은 ‘고용 및 직장 관계’로, 279건(37.0%)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는 직장 내 관계에서 경제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시사한다. 회사와 직원, 고용주와 직원,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죄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계약 및 거래 관계’가 185건(24.5%)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계약 당사자 간의 금전 거래, 투자 계약, 임대차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등에서 경제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적 계약 관계에서도 경제적 갈등이 주요 범죄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 법적 및 기관 관계’는 148건(19.6%)으로 나타났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가해자, 협회와 회장, 조합과 조합장, 법률사무 대리인과 의뢰인 등 법적·제도적 관계에서도 경제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 및 동업 관계’는 96건(12.7%)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업자, 공동 투자자, 사업 거래 상대방, 사업 파트너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를 포함한다. 이는 사업상의 금전 거래 및 지분 분쟁이 경제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경제범죄는 39건(5.2%)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연인, 가족, 지인, 친구, 교수와 대학원생 등 사적인 관계에서도 경제범죄가 일부 발생하나,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범죄가 주로 직장 내 관계 및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특히, 직장 관계에서 상하관계 및 기업 내부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 관계에서도 법적 분쟁이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관계 유형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경제범죄의 발생 맥락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양형 결정이나 판결결과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4-5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포(N = 754)**

관계 분류	빈도 (N, %)	비율 (%)
고용 및 직장 관계	279	37.0
사업 및 동업 관계	96	12.7
계약 및 거래 관계	185	24.5
개인적 관계	39	5.2
기타 법적 및 기관 관계	148	19.6
결측값	7	1.0
합계	747	100.0

다. 판결 정보

1) 심급별 양형

가) 유무죄 판단, 집행유예 비율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분포와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무죄 선고 사례는 1심에서 73건(9.7%)이었으며, 2심에서는 94건(12.5%)으로 증가했

다. 벌금형은 1심 71건(9.4%), 2심 90건(11.9%)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일부 실형이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음을 시사한다.

징역형에서는 2심에서 형량 변화가 두드러졌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99건(13.1%)이었으나, 2심에서는 317건(42.0%)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음을 보여준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심 511건(67.8%)에서 2심 251건(33.3%)으로 감소하였다.

장기 실형(60개월 이상)에서도 감경 사례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72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심에서 40건(7.0%)이었으나, 2심에서는 28건(4.9%)으로 감소했다. 120개월(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례에서도 일부 감경이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80개월(40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1건(0.2%)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형이 선고된 경우 일부 감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 **〈표 4-58〉**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분포

			1심		2심	
무죄			73		94	
유죄	벌금형		71		90	
	징역형	개월수	집행유예	실형	집행유예	실형
		2	1	2		1
					1	1
		4	8	19	24	16
		5	1	7	6	3
		6	25	73	69	25
		7		1		1
		8	18	47	45	14
				60		1
		10	7	79	47	15
		12	22	7	47	30
		14	2	2	11	6
		15		8	2	1
		16		1	2	6

»» <표 4-58>의 계속

			1심		2심	
		17		44		
		18	8	1	28	23
		20		1	1	4
		22		56		
		24	5	15	24	30
						2
		30		2	5	12
		32		1		3
						1
		34		34		
		36	1	1	3	20
		38		13		1
		42		15		10
		48		1		8
		50		8		
						2
		60	1	5	1	3
		72		4		4
		84		3		5
		96		1		
		108				1

나) 심급별 판단 차이

(1) 유무죄 판단

1심과 2심의 유죄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도 유죄를 유지한 비율은 96.2%로 매우 높았다. 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도 무죄로 유지된 비율은 64.4%였으며, 나머지 35.6%는 2심에서 유죄로 변경되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 중 일부가 2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1심과 2심의 유죄 여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89.37$, $p < .001$). 이는 1심과 2심 간 유죄 여부에 강한 연관성이 있

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가 특정 조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도 대부분 유죄가 유지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심에서 유죄로 번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항소심에서의 법적 다툼이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 <표 4-59> 1심 유죄 여부와 2심 유죄 여부 간 교차분석(N = 754)

1심	2심		합계
	유죄 N(%)	무죄 N(%)	
유죄	635 (84.2%)	46 (6.1%)	681 (90.3%)
무죄	25 (3.3%)	48 (6.4%)	73 (9.7%)
합계	660 (87.5%)	94 (12.5%)	754 (100.0%)

(2) 집행유예 비율

1심과 2심에서의 판결 변화를 무죄,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징역형(실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심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2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가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3건 중 48건(65.8%)은 2심에서도 유지되었으나, 25건(34.2%)은 유죄로 변경되었다. 이 가운데 19건(26.0%)은 실형으로 강화되었으며, 6건(8.2%)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감경되었다. 이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2심에서 유죄로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결과가 실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조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1건 중 52건(73.2%)은 2심에서도 유지되었고, 15건(21.1%)은 무죄로 감경되었다. 2심에서 벌금형이 증가한 점도 특징적이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71건이었으나, 2심에서는 90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일부 사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음을 시사하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99건 중 70건(70.7%)은 2심에서도 유지되었으며, 16건(16.2%)은 실형으로 변경되었고, 13건(13.1%)은 벌금형이나 무죄로 감경되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11건 중 239건(46.8%)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었다. 즉,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심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는 비율이 높지만, 형량 감경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11건 중 243건(47.6%)은 2심에서도 유지되었으나, 239건(46.8%)은 집행유예로 감경되었으며, 19건(3.7%)은 무죄로 번복되었다. 즉,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절반가량이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형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2심에서는 1심보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증가한 반면, 실형 선고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례 중 상당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었으며, 이는 항소심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형량을 완화하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표 4-60> 1심과 2심의 형량별 판결 변화 교차분석(N = 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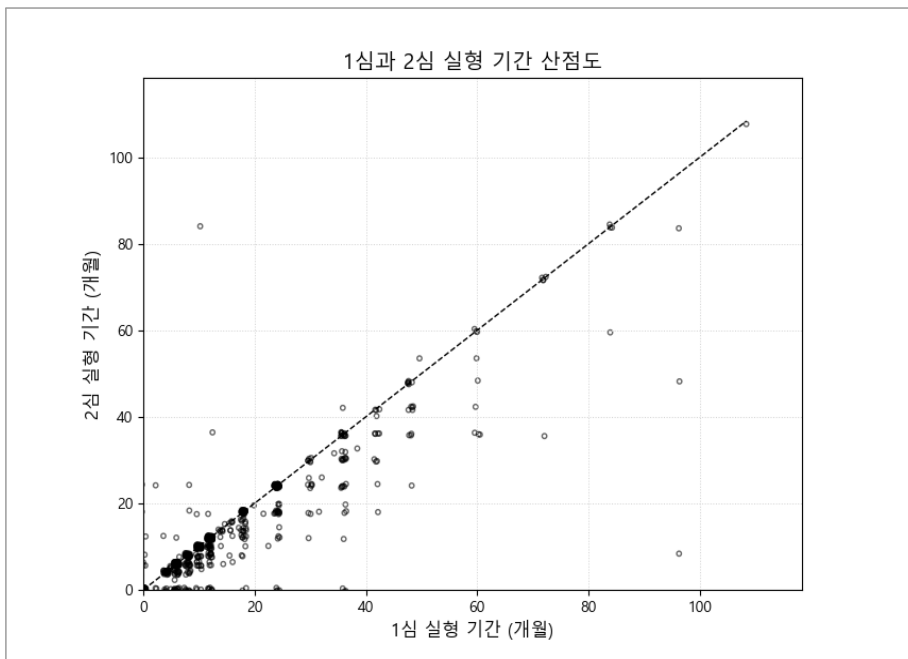
	1심 판결결과	2심				합계
		무죄 N(%)	벌금형 N(%)	징역형(집행유예) N(%)	징역형(실형) N(%)	
1심	무죄	48 (65.8%)	15 (20.5%)	9 (12.3%)	1 (1.4%)	73 (9.7%)
	벌금형	15 (21.1%)	52 (73.2%)	1 (1.4%)	3 (4.2%)	71 (9.4%)
	집행유예	12 (12.1%)	13 (13.1%)	70 (70.7%)	4 (4.0%)	99 (13.1%)
	실형	19 (3.7%)	10 (2.0%)	239 (46.8%)	243 (47.6%)	511 (67.8%)
	합계	94 (12.5%)	90 (11.9%)	319 (42.3%)	251 (33.3%)	754 (100.0%)

[그림 4-3]은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실형기간을 비교한 그래프로, 1심의 형량(개월 단위)을 x축, 2심의 형량을 y축으로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많은 점들이 대각선(45도선)을 따라 분포하는데, 이는 1심과 2심의 형량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각선 아래에 분포하는 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2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사례가 상당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

유예(0)로 변경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일부는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대각선 위에 위치한 점들은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한 경우를 나타내지만,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2심에서 더 줄어드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죄 및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바뀐 경우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2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변화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재판부가 형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그림 4-3] 1심과 2심 실형기간 산점도



2) 판결 정보

가) 사건 복잡성 지표

(1) 심급별(1심, 2심) 판결문 길이

(가) 평균

1심과 2심 판결문의 평균 길이를 비교한 결과, 1심 판결문이 평균 94.14문장으로 2심 판결문(평균 78.61문장)보다 길었다. 이는 1심 판결문이 2심 판결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판결문 길이의 표준편차는 1심에서 113.04, 2심에서 95.27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변동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표준편차 값이 모두 크다는 점에서 판결문 길이에 대한 개별 사건 간 차이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시사된다.

상관분석 결과,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 간의 상관계수는 .975로 매우 높았으며, 유의확률 $p < .001$ 로 두 판결문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심 판결문이 길수록 2심 판결문도 길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aired t-검정을 실시한 결과,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 간의 평균 차이는 15.53문장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602) = 8.72$, $p < .001$). 효과 크기(Cohen's d)는 .321로, 중간 수준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1심 판결문이 2심 판결문보다 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효과 크기가 크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2심 판결문이 1심 판결문보다 간결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항소심에서의 심리 과정이 1심보다 특정한 논점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표 4-61>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에 대한 기술통계(N = 603)

변인	평균 (Mean)	표준편차 (SD)
1심 판결문 길이 (문장)	94.14	113.04
2심 판결문 길이 (문장)	78.61	95.27

(나) 심급별 유무죄 여부에 따른 판결문 길이

1심과 2심 판결문 길이의 차이를 형량 변화별로 분석한 결과, 심급에 따라 판결문 길이의 변화 양상이 일관되지 않으며, 일부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죄판결이 유지된 경우, 1심 판결문이 2심보다 평균 20.71문장 더 길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7) = 3.71, p = .001$). 이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보다 상세하게 서술되는 반면, 2심에서는 판결문이 축약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형이 유지된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1심 판결문이 2심보다 평균 23.19문장 더 길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93) = 8.02, p < .001$).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된 경우에도 1심 판결문이 평균 17.23문장 더 길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51) = 3.63, p = .001$). 이는 2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유지되더라도 판결문이 보다 간략하게 작성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반면, 벌금형에서 무죄로 변경된 경우, 1심 판결문이 2심보다 평균 19.83문장 더 길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1) = -2.68, p = .021$). 이는 일부 형량 변경 사례에서는 판결문 길이 차이가 크지 않으며, 판결문 길이 변화가 명확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표 4-62> 1심과 2심 판결문의 길이 차이에 대한 Paired t-검정 결과(N = 각 판결별)

비교쌍	평균 차이 (Mean Diff.)	표준편차 (SD)	표준오차 (SE)	t	df	p (2-tailed)	95% 신뢰구간 (CI)
무죄 → 무죄	20.71	34.39	5.58	3.71	37	0	(9.78, 31.65)
무죄 → 벌금형	-19.57	25.55	6.83	-2.87	13	0.01	(-32.96, -6.19)
무죄 → 실형 집행유예	-11.78	6.69	2.23	-5.28	8	0	(-16.15, -7.41)
벌금형 → 무죄	-19.83	25.6	7.39	-2.68	11	0.02	(-34.32, -5.35)
벌금형 → 벌금형	1.66	19.48	3.16	0.52	37	0.6	(-4.54, 7.85)
실형 집행유예 → 무죄	-13	6.65	2	-6.49	10	0	(-17.47, -8.53)
실형 집행유예 → 벌금형	5.67	14.99	4.33	1.31	11	0.22	(-3.86, 15.19)
실형 집행유예 → 실형 집행유예	17.23	34.23	4.75	3.63	51	0	(7.70, 26.76)
실형 집행유예 → 실형	0.5	6.76	3.38	0.15	3	0.89	(-10.25, 11.25)
실형 → 무죄	0.06	50.51	12.25	0.01	16	1	(-25.91, 26.03)

전반적으로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무죄, 집행유예,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 2심 판결문이 축약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2심 판결문이 1심보다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는 2심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이나 결론 부분이 보다 간략하게 서술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1-2심 판결 간 기간

1심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간 2심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평균 315.07일(SD = 125.05, SE = 14.74)이 소요된 반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평균 294.29일(SD = 236.83, SE = 9.09)이 소요되었다. 두 집단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296.28일(SD = 228.44, SE = 8.34)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749) = 0.733$, $p = .464$). 평균 차이는 20.78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이 차이는 -34.85일부터 76.40일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이는 집단 간 차이가 우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다($t(133.27) = 1.20$, $p = .232$). 신뢰구간은 -13.47일부터 55.02일까지로 관찰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표 4-63> 1심 유죄 여부에 따른 2심 선고까지의 기간 차이

1심 유죄 여부	N	평균 (Mean)	표준편차 (SD)	표준오차 (SE)
무죄	72	315.07	125.046	14.737
유죄	679	294.29	236.834	9.089

(3) 증거 및 주요 판단 요소

(가) 피해금액 증거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피해 금액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1심 피해 금액은 59,993.80만 원, 2심 피해 금액은 59,430.48만 원으로 나타났다. 두 심급의 피해 금액 평균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산도 비슷한 수준이다. 최대 피해 금액은 두 심급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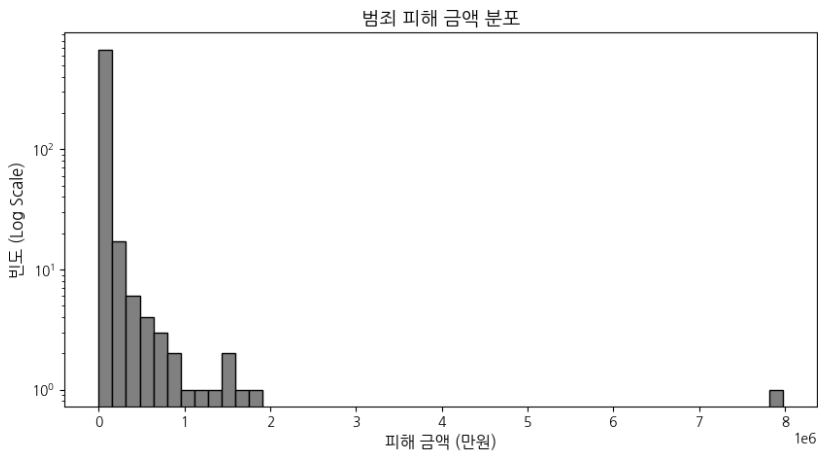
동일하며, 표준편차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피해 금액 변동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표 4-64〉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피해금액**

심급	N	최솟값(Minimum)	최댓값(Maximum)	평균 (Mean)	표준편차(SD)
1심	719	0	79,750,670,000	599,938,000	3,405,142,000
2심	714	0	79,750,670,000	594,304,800	3,416,217,000

[그림 4-4]는 범죄 피해 금액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매우 큰 경우부터 작은 경우까지의 빈도를 나타낸다. 로그 스케일을 적용한 히스토그램에서는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집중되어 있지만, 일부 극단적인 고액 피해 사례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 금액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즉, 소수의 고액 피해 사례가 평균을 크게 끌어올리는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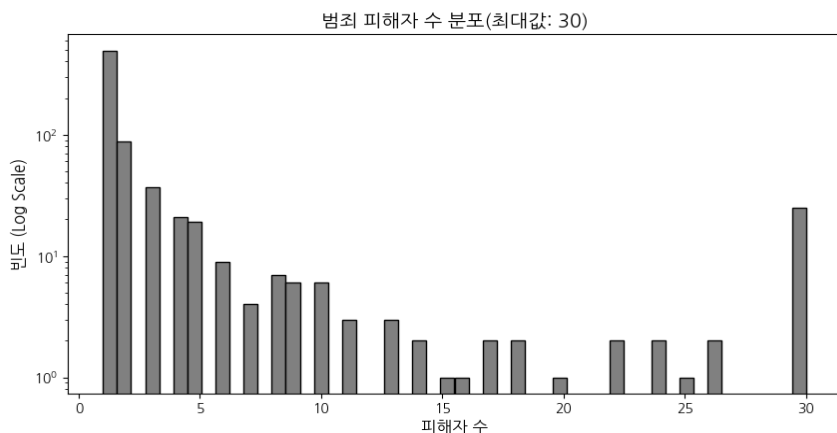
» **[그림 4-4] 범죄피해금액 분포**



(나) 피해자(기업) 수

이 그래프는 범죄 피해자의 수(기업 포함)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분석을 위해 피해자 수의 최댓값을 30으로 제한하여 시각화하였다. 피해자의 평균 수는 약 3.70명이며, 표준편차는 약 6.31로, 피해자 수가 다양하게 분포되었음을 보여준다. 최빈값은 1명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개인 또는 단일 기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다수의 피해 기업이 포함되며, 이러한 경우 평균 대비 큰 편차를 보인다.

▶▶ [그림 4-5] 범죄피해자 수 분포



(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비교한 결과, 1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1%에 불과했다.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13.4%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였다. 즉,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낮고,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 회복 없이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25.5%로 1심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으며,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도 24.7%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49.9%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1심과 비교했을 때 2심에

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형량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음을 시사한다. 특히,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 중 일부가 2심에서 전부 또는 부분 합의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 감경을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 <표 4-65> 1심과 2심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N = 754)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1심 N(%)	2심 N(%)
합의있음	23 (3.1%)	192 (25.5%)
부분합의	101 (13.4%)	186 (24.7%)
합의없음	630 (83.6%)	376 (49.9%)
합계	754 (100.0%)	754 (100.0%)

(라) 혐의 감경·가중요인

다음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양형 기준에 따른 양형인자들의 빈도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 4-66>은 배임 및 횡령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혐의 가중 및 감경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총 660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횡령 범행 여부 85.5%, 범행수법의 불량함 69.7%, 그리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51.8% 등이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 53.3%, 동종 누범 22.9%, 이종 누범 10년 이내 실행 전과 포함 22.7% 등 피고인의 전과 여부도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하였다. 피해 규모와 관련하여 대량 피해자 발생 또는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46.7% 역시 형을 무겁게 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반면, 감경요인으로 작용한 요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63.8%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경제범죄에서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범죄수익을 대부분 소비하지 못한 경우 16.8%,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8.6%,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0.8% 등도 감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소극적 가담 1.2%이나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3.5%처럼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개입 정도가 제한적일 경우에도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임, 횡령 사건에서 법원이 범행의 방식과 의도적 은닉 여부, 피해의 심각성, 전과 여부 등을 주요 가중요인으로 고려하며, 반대로 피해 회복, 자수 및 내부 고발, 피고인의 소극적 가담 여부 등을 감경요인으로 판단함을 보여준다. 경제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려는 경향과도 연관될 수 있다.

형의 감경 및 가중요인은 1심과 2심의 형종과 형량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심급 간 차이를 유의미하게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요인들이 1심과 2심 사이의 판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 **〈표 4-66〉 배임·횡령 사건 유죄판결 시 고려된 양형인자 및 비율**

	가중·감경요인	빈도 (N)	비율 (%)
가중요인			
	대량 피해자 발생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308	46.7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342	51.8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460	69.7
	형사처벌 전력 있음	352	53.3
	동종 누범	151	22.9
	이종 누범 (10년 이내 실행 전과 포함)	150	22.7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101	15.3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27	4.1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 목적	36	5.5
	횡령 범행인 경우	564	85.5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1	0.2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18	2.7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35	5.3
감경요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4	0.6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22	3.3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57	8.6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23	3.5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6	0.9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5	0.8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	9	1.4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111	16.8
소극 가담	8	1.2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1	0.2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2	0.3
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0.2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421	63.8
상당한 피해 회복	421	63.8
총합	660	100

3. 1심과 2심 판결결과 차이

심급별 형종과 형량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1심 형량과 2심 형량과 형종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법관의 특성, 변호사의 특성, 법관과 변호사의 관계, 피고인의 특성, 2심에서의 추가적 합의 여부, 피해금액과 피해자수, 기타 양형인자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분석을 실시했다. 형량과 형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이 상당히 많고,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도 상당하기 때문에, 보고서의 간략한 구성을 위해 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거나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인자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가. 법관의 개인적 특성이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급별 양형의 차이

1) 법관의 경력

〈표 4-67〉은 1심과 2심 판사의 경력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1심에서는 판사로서 경력을 시작한 경우가 51.5%(388명)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경력이 있는 경우가 34.4%(259명)로 그 뒤를 이었다. 변호사 경력자는 10.7%(81명)로 비교적 적었고, 변호사와 검사 경력을 모두 가진 판사는 극소수(0.3%, 2명)에 불과했다.

2심에서도 판사로 경력을 시작한 경우가 59.0%(445명)로 가장 많았고, 검사 경력자는 28.5%(215명)로 1심보다 약간 감소했다. 변호사 경력자는 8.8%(66명)로 역시 1심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변호사와 검사 경력을 모두 가진 경우는 1.1%(8명)로 다소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1심과 2심 모두 판사 출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검사 출신이 변호사 출신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두 심급 간 경력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3.10$, $df = 3$, $p = .004$). 이는 1심과 2심에서 판사의 경력 분포가 동일하지 않으며, 2심에서 판사 출신의 비율이 증가하고 검사 출신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 **〈표 4-67〉 법관의 경력**

경력 유형	빈도 (비율)	총합
판사로 경력 시작	388 (51.5%)	445 (59.0%)
변호사 경력	81 (10.7%)	66 (8.8%)
검사 경력	259 (34.4%)	215 (28.5%)
검사 변호사 경력	2 (0.3%)	8 (1.1%)
결측값	24(3.2%)	20(2.%)
	754(100.0%)	754(100.0%)

2) 법관의 경력이 형종 변화에 미치는 영향

1심 판사의 경력이 이후 2심 재판 형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에서는 1심 판사의 경력을 ① 판사로 시작한 경우, ② 변호사 경력이 있는 경우, ③ 검사 경력이 있는 경우, ④ 변호사 및 검사 경력을 모두 가진 경우로 구분했다. 형종 변화는 1심과 2심 간 형이 감경된 경우, 동일한 경우, 가중된 경우로 범주화하여 두 변인 간 관계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1심 판사의 초기 직업적 배경이 2심에서 형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chi^2(6) = 4.050$, $p = .670$), 1심 판사의 직업적 배경에 따른 형종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심 판사의 경력 유형이 2심에서의 형량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며, 형량 결정 과정에서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1심 판사 중 판사 경력으로 시작한 경우, 형이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해당 집단에서는 57.2%가 형을 유지했으며, 39.2%가 감경되었고, 3.6%가 가중되었다. 검사 출신 판사는 감경 비율이 43.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변호사 출신 판사는 46.9%가 감경되었다. 이는 법관의 초기 경력 유형에 따라 양형 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표 4-68> 1심 판사의 경력에 이후 2심 판결에 미치는 영향

1심 판사 경력 유형	감경	동일	가중	총합
판사로 경력 시작	152 (39.2%)	222 (57.2%)	14 (3.6%)	388
변호사 경력	38 (46.9%)	38 (46.9%)	5 (6.2%)	81
검사 경력	112 (43.2%)	136 (52.5%)	11 (4.2%)	259
검사 및 변호사 경력	1 (50.0%)	1 (50.0%)	0 (0.0%)	2
총합	303	397	30	730

2심 판사의 경력이 형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형종 변화는 1심과 2심 간 형이 감경된 경우(-1), 동일한 경우(0), 가중된 경우(1)로 범주화하여 두 변인 간 관계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판사의 직업적 배경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2심 판사 중 판사 경력으로 시작한 경우, 형이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해당 집단에서는 52.6%가 형을 유지했으며, 42.2%가 감경되었고, 5.2%가 가중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다른 경력 유형보다 형종 유지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판사로 경력을 시작한 경우, 변호사나 검사 경력을 거친 판사들에 비해 형을 감경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검사 출신 판사는 감경 비율이 37.2%로 가장 낮았고, 변호사 출신 판사는 감경 비율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는 법관의 초기 경력 유형이 양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chi^2(6) = 18.744$, $p = .005$), 판사의 직업적 배경에 따라 형종 변화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경력으로 시작한 경우 상대적으로 형종 유지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판사 본연의 판단 기준을 유지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표 4-69> 2심 판사 경력과 1심-2심 간 형종 변화 교차표

(단위: 빈도, 괄호 안 비율%)

2심 판사 경력	감경	동일	가중	총계
판사 경력	188 (42.2%)	234 (52.6%)	23 (5.2%)	445 (100%)
변호사 경력	38 (57.6%)	27 (40.9%)	1 (1.5%)	66 (100%)
검사 경력	80 (37.2%)	129 (60.0%)	6 (2.8%)	215 (100%)
검사+변호사 경력	0 (0%)	8 (100%)	0 (0%)	8 (100%)
총계	306 (41.7%)	398 (54.2%)	30 (4.1%)	734 (100%)

3) 법관의 경력이 형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법관의 경력이 형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심과 2심 판사의 경력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1심과 2심의 형량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분산분석(ANOVA)을 수행했다. 형량 변화는 2심 형량에서 1심 형량을 뺀 값으로 계산되었으며, 벌금형의 경우 0으로 처리되었고 집행유예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1심 판사의 경력($F = .895, p = .443$), 2심 판사의 경력($F = .317, p = .813$), 그리고 1심과 2심 판사 경력의 상호작용($F = .895, p = .510$)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사의 경력 유형이 1심과 2심 사이의 형량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4-70> 집단 간 효과 검정(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수정된 모형(Corrected Model)	798.929	13	61.456	1.196	.278
절편(Intercept)	122.446	1	122.446	2.383	.123
1심 판사 재판장 경력	137.992	3	45.997	.895	.443
2심 판사 재판장 경력	48.834	3	16.278	.317	.813
1심 × 2심 판사 재판장 경력 상호작용	321.860	7	45.980	.895	.510
오차(Error)	32,936.048	641	51.382	-	-
전체(Total)	37,717.000	655	-	-	-
수정된 총합(Corrected Total)	33,734.977	654	-	-	-
결정계수(R^2)= .024	조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 .004				

나. 변호사의 개인적 특성이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 전관 변호사의 유무와 형종·형량 변화

가) 형종의 변화

1심과 2심 변호인단에 전관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가 2심에서의 형량 변화(감경, 동일, 가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심 변호인단의 전관변호사 유무는 2심에서의 형량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0.533$, $df = 2$, $p = .766$). 즉, 1심 변호인이 전관변호사라고 해서 2심에서 형량 감경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거나, 가중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2심 변호인단의 전관변호사 유무 역시 형량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760$, $df = 2$, $p = .252$). 2심 변호인이 전관변호사일 경우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가중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2심 변호인단의 특성이 형량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심과 2심 변호인단에 전관변호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2심에서의 형량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관변호사의 존재가 형량 결정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표 4-71〉 1심 및 2심 변호인단 전관변호사 유무에 따른 2심 형량 변화**

변호인단	전관변호사 유무	감경	동일	가중	총합
1심 변호인단	없음	168 (39.7%)	238 (56.3%)	17 (4.0%)	423 (100%)
	있음	57 (38.8%)	82 (55.8%)	8 (5.4%)	147 (100%)
2심 변호인단	없음	185 (40.4%)	255 (55.7%)	18 (3.9%)	458 (100%)
	있음	77 (47.0%)	79 (48.2%)	8 (4.9%)	164 (100%)
총합		262 (42.1%)	334 (53.7%)	26 (4.2%)	622 (100%)

나) 양형의 변화

1심과 2심 변호인단에 전관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2심에서의 형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며, 형량 변화는 2심 형량에서 1심 형량을 뺀 값으로 계산되었다. 벌금형의 경우 0으로 처리하였고, 집행유예는 반영하지 않았다. 독립변인은 1심과 2심 변호인단에 전관변호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이며, 종속변인은 심급 간 형량 변화(양수가중)이다.

분석 결과, 1심 변호인단에 전관변호사가 포함된 여부가 2심 형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 0.008$, $p = .930$). 또한, 2심 변호인단의 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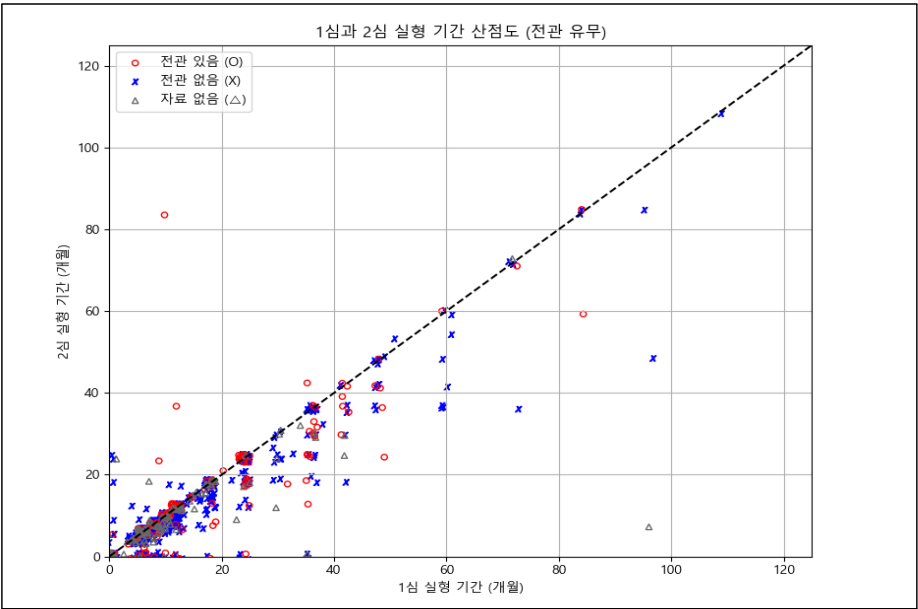
변호사 유무도 형량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 = 0.038, p = .845$). 나아가, 1심과 2심 변호인단의 전관변호사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 0.345, p = .557$).

결론적으로, 1심과 2심 변호인단에 전관변호사가 포함된 여부는 2심에서의 형량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관변호사의 존재가 형량 감경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으며, 전관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 <표 4-72> 집단 간 효과 검정(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모형	13.711	3	4.570	0.117	.950
절편	1942.177	1	1942.177	49.856	.000
1심 변호인단 전관변호사 유무	0.298	1	0.298	0.008	.930
2심 변호인단 전관변호사 유무	1.495	1	1.495	0.038	.845
1심* 2심 변호인단 전관변호사 유무	13.457	1	13.457	0.345	.557
오차	17530.115	450	38.956		
총합	21147.000	454			
수정 총합	17543.826	453			

▶▶ <그림 4-6> 1심과 2심 실행기간 산점도(전관 유무)



다) 재판 복잡성에 대한 영향

변호인단에 전관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2심 재판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1심과 2심 변호인단에 전관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며, 종속변인은 2심 판결문의 길이이다. 이를 통해 전관변호사의 유무가 법원의 판결 서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1심 변호인단에 전관변호사가 포함된 여부가 2심 판결문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 2.294$, $p = .131$). 마찬가지로, 2심 변호인단에 전관변호사가 포함된 여부도 판결문 길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 = 0.744$, $p = .389$). 또한, 1심과 2심 변호인단의 전관변호사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 0.186$, $p = .666$).

결과적으로, 전관변호사의 유무는 2심 판결문의 길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관변호사의 존재가 법원이 판결문을 서술하는 방식이나 판결의 논리적 서술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 <표 4-73> 전관변호사의 유무에 따른 1심과 2심 판결 기간 분석 결과

요인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값	p값
모형	213,382.935	3	71,127.645	2.369	.070
절편	20,913,579.483	1	20,913,579.483	696.681	.000
1심 변호인단 전관변호사 유무	121,182.163	1	121,182.163	4.037	.045
2심 변호인단 전관변호사 유무	712.295	1	712.295	0.024	.878
1심 * 2심 변호인단 전관변호사 유무	4,899.557	1	4,899.557	0.163	.686
오차	15,069,477.926	502	30,018.880		
총합	57,798,030.000	506			
수정 총합	15,282,860.862	505			

2) 전관 변호사의 선정 변화와 형종·형량 변화

가) 형종의 변화

전관 변호사 선정 변화가 1심과 2심 간의 형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전관 변호사 선임 유형으로, ① 1·2심 모두 전관 변호사 없음, ② 1심에서만 전관 변호사 선임, ③ 2심에서만 전관 변호사 선임, ④ 1·2심 모두 전관 변호사 선임의 네 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에서 무죄(0) 또는 유죄(1)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로 설정되었다. 전관 변호사가 없는 변호인단을 유지한 경우(전관없는변호인단)가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였으며(전체 525건 중 351건), 이 중 128건(36.5%)에서 형이 감경되었고, 206건(58.7%)에서는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으며, 17건(4.8%)에서는 형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1심만 전관 변호인단)에는 31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이 중 10건(32.3%)에서 형이 감경되었고, 20건(64.5%)에서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으며, 1건(3.2%)에서 형이 가중되었다.

반면, 2심에서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2심만 전관 변호인단)에는 44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이 중 27건(61.4%)에서 형이 감경되었고, 17건(38.6%)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형이 가중된 사례는 없었다.

모든 재판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모든 재판 전관 변호인단)에는 99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이 중 43건(43.4%)에서 형이 감경되었고, 50건(50.5%)에서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으며, 6건(6.1%)에서 형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관 변호사의 선정 변화 유형과 형종 변화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6) = 13.36, p = .038$). 이는 전관 변호사의 유무 및 변동이 1심과 2심 간의 형종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심에서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감경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61.4%), 1심에서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경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32.3%), 오히려 형이 동일하게 유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4.5%). 또한, 모든 재판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감경된 비율이 43.4%로 나타나, 전관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형 감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표 4-74> 전관 변호사 선정 변화와 형종 변화 교차표

	감경	유지	가중	합계
전관없는변호인단	128	206	17	351
1심만 전관 변호인단	10	20	1	31
2심만 전관 변호인단	27	17	0	44
모든재판 전관 변호인단	43	50	6	99
총합	208	293	24	525

* 앞서 분석보다 표본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1심만 혹은 2심만 결측값을 갖는 경우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나) 집행유예의 변화

전관 변호사의 선정 변화가 심급 간 집행유예 여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관 변호사의 유무 및 변동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패턴이 달라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chi^2 = 21.226$, $df = 6$, $p = .002$).

분석 결과, 전체 384건 중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비율(2심만 집행유예)은 148건(38.5%)이었으며,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유지한 경우는 233건(60.7%)으로 나타났다. 반면, 1심에서만 집행유예였으나 2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된 경우는 3건(0.8%)으로 극히 적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관 변호사를 2심에서만 선임한 경우 36건 중 22건(61.1%)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었으며, 1·2심 모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66건 중 33건(50.0%)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다. 반면, 전관 변호사를 전혀 선임하지 않은 경우 258건 중 86건(33.3%)만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으며, 1심에서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24건 중 7건(29.2%)만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심에서 새롭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을 유도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심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2심에서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2심에서의 전관 변호사 유지 또는 신규 선임이 집행유예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표 4-75> 전관 변호사 선정 변화 유형과 심급 간 집행유예 변화

전관 변호사 선정 변화 유형	실행 유지	1심만 집행유예	2심만 집행유예	총합
전관 없는 변호인단	171 (66.3%)	1 (0.4%)	86 (33.3%)	258
1심만 전관 변호인단	17 (70.8%)	0 (0.0%)	7 (29.2%)	24
2심만 전관 변호인단	14 (38.9%)	0 (0.0%)	22 (61.1%)	36
모든 재판 전관 변호인단	31 (47.0%)	2 (3.0%)	33 (50.0%)	66
합계	233 (60.7%)	3 (0.8%)	148 (38.5%)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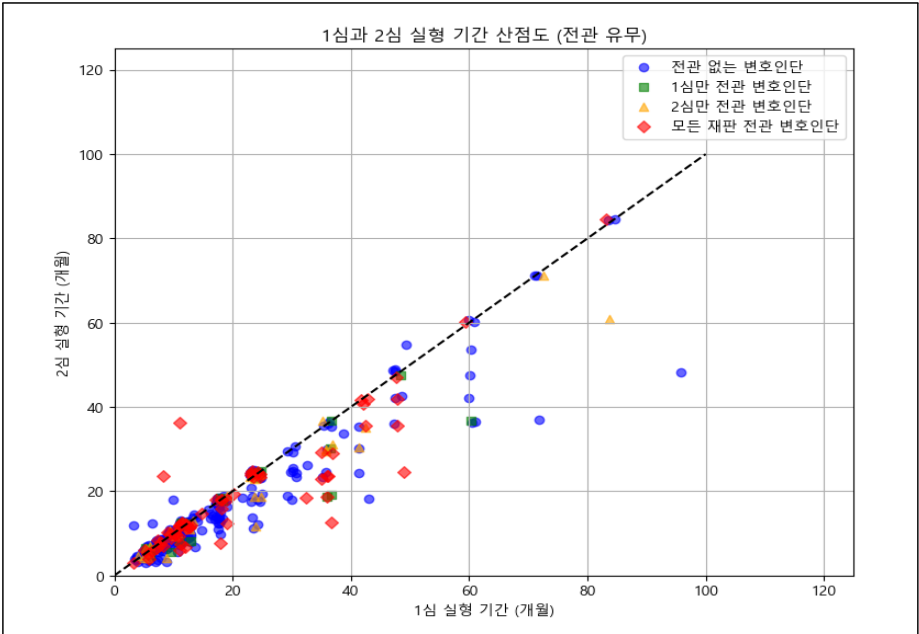
다) 형량의 변화

전관 변호사의 선정 변화가 심급 간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행(집행유예 여부 무관)이 선고된 사례들에 대해 형량의 변화량을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관 변호사 고용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형량 변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 0.12, p = 0.912$). 다만, 모든 집단에서 형량은 -2.35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76> 심급별 형량차이(2심 형량-1심 형량)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전관없는변호인단	258	-2.2791	5.42437
1심만 전관 변호인단	24	-3.1667	6.59161
2심만 전관 변호인단	36	-2.3889	4.98729
모든재판 전관 변호인단	66	-2.3030	6.90367
Total	384	-2.3490	5.72367

▶▶▶ [그림 4-7] 1심과 2심 실행기간 산점도(전관 유무)



다.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관계가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 동일고교 출신 여부

아래 <표 4-77>은 1심과 2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출신 고등학교가 일치하는지를 분석한 교차표이다. 1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의 고등학교가 일치한 경우는 1건이고, 2심에서 일치한 경우는 9건에 그쳤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 <표 4-77> 1심·2심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

	1심 재판부와 변호사	2심 재판부와 변호사
일치	2 (0.3%)	9 (1.2%)
불일치	526 (69.8%)	584 (77.5%)
결측값	226 (30 %)	161 (21.4%)
총계	754 (100%)	754 (100%)

2) 동일 대학 출신 여부

이 <표 4-78>은 1심 및 2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들이 동일한 대학 출신인지를 분석한 표이다. 1심에서 재판장과 변호사가 대학교가 일치하는 경우는 98건으로 전체의 약 13.0%이고, 항소심에서 동일 대학 출신일 확률은 126건으로 16.7%로 소폭 상승했다. 카이제곱 분석결과 1심보다 2심에서 동일한 대학 출신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 = 590.460$, $df = 1$, $p < .001$).

▶▶ <표 4-78> 1심·2심 재판장과 변호사들의 출신 대학교 일치 여부

	1심 재판부와 변호사	2심 재판부와 변호사
일치	98 (13.0%)	126 (16.7%)
불일치	449 (59.5%)	490 (65.0%)
결측값	207 (27.5 %)	138 (18.3%)
총계	754 (100%)	754 (100%)

3)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관계와 형종·형량 변화

가) 형종의 변화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대학 일치 여부,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 그리고 동일 지법 경력 유무가 형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 재판 형종의 순서(ordinal)값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치 여부, 동일 지법 경력 유무, 그리고 1심 재판 형종의 순서 데이터를 포함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대학교 일치 여부,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 동일 지방법원 근무 경력 유무는 2심에서의 형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의 형량 변화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F = 1.196$, $p = .278$), 모형의 설명력 또한 낮았다($R^2 = .024$, Adjusted $R^2 = .004$). 독립변인 중 1심 재판장의 경력과 2심 재판장의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895$, $p = .510$). 개별 요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장의 경력($F = .895, p = .443$)과 2심 재판장의 경력($F = .317, p = .813$)은 형종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대학교 및 고등학교 일치 여부가 형종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법조 내 학연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다른 변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1심과 2심 재판장의 동일 지방법원 근무 경력 유무 역시 형종 변화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재판장 간 네트워크가 형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판결이 보다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1심에서 결정된 형종이 2심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나, 감경 또는 가중될 가능성이 변호인단과 재판장의 학력적·경력적 연계성과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 즉, 1심 판결 자체의 특성이 2심에서의 판단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양형의 변화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대학 및 고등학교 일치 여부, 그리고 동일 지법 경력 유무가 2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에서 선고된 형량(개월 단위)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 출신 대학교 일치 여부, 그리고 동일 지방법원 경력 유무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들이 2심 형량의 변화를 82.4%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결정계수(R^2)는 .824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모형이 2심 형량의 변동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ANOVA 검정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 = 689.951, p < .001$). 그러나 개별 독립변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2심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으며($B = .831, p < .001$), 이는 1심 형량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B = -2.356, p = .266$), 출신 대학교 일치 여부($B = .336, p = .603$), 동일 지방

법원 경력 유무($B = .231, p = .868$)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심에서 형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1심에서의 형량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재판장과 변호인의 학력적 배경이나 법원 내 경력적 연계성이 형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재판장과 변호사가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동일한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더라도, 이러한 요소가 피고인의 2심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 재판 복잡성에 대한 영향

2심 재판에서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대학 및 고등학교 일치 여부, 그리고 동일 지방법원 경력 유무가 2심 재판의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심 재판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인을 2심 판결문의 길이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1심 판결문의 길이,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 출신 대학교 일치 여부, 그리고 동일 지방법원 경력 유무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689.247, p < .001$), 독립변인들이 2심 판결문의 길이를 93.6%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2 = .936$). 특히, 1심 판결문의 길이가 2심 판결문의 길이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B = .843, p < .001$), 이는 1심 판결문이 길수록 2심 판결문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사건의 복잡성을 시사한다. 반면,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B = -13.592, p = .312$) 및 출신 대학교 일치 여부($B = -.279, p = .927$)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지방법원 경력 유무($B = 11.218, p = .072$)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t 값을 보여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후 2심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1심 판결 후 2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개월 단위)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고등학교 일치 여부,

출신 대학교 일치 여부, 그리고 동일 지방법원 경력 유무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5.067$, $p = .002$), 독립변인들이 1심과 2심 사이의 기간을 약 2.5%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2 = .025$). 이는 전체적인 설명력은 낮지만, 특정 변인이 기간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대학교 일치 여부($B = 77.745$, $p = .002$)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고등학교 일치 여부($B = -52.866$, $p = .512$)와 동일 지방법원 경력 유무($B = 87.163$, $p = .1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2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변호사와 재판장의 학력적 배경이나 동일 법원 경력보다 대학교 일치 여부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2심 재판장과 변호사의 출신 대학교가 일치할 경우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특정 네트워크나 법조 경력의 유사성이 절차적 논의나 사건 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라. 범죄의 특성이 심급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 피해금액

피해 금액이 형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피해 금액과 1심 형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2심 형종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순차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순차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심 형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1심 형종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도 검토 결과, $-2 \text{ Log Likelihood}$ 가 122.294로 감소하면서 모델이 적절히 적합함을 보였고, 나겔커케(R^2) 값이 0.941로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Pearson 카이제곱 검정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나타나 과적합(overfitting)의 가능성이 있으며, 다수의 셀에서 빈도가 0인 경우가 존재하여 데이터 분포의 불균형이 확인되었다.

1심 형종이 2심 형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기준(reference)으로 설정된 가운데,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각각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였다(무죄: $\beta = -5.984$, $p = .042$; 벌금형: $\beta = -12.191$, $p < .001$; 집행유예: $\beta = -7.503$, $p < .001$). 이는 1심에서 형량이 낮을수록 2심에서도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 금액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에 한해, 1심 형량과 피해 금액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2심 형량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 1심 형량과 피해 금액이 2심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를 보면, 2심 형량의 평균은 13.86개월(표준편차 = 14.024), 1심 형량의 평균은 15.77개월(표준편차 = 15.868)로 나타났으며, 피해 금액의 평균은 약 5억 1,459만 원(표준편차 = 17억 8,219만 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결정계수(R^2)는 0.819로 나타나 독립변인들이 2심 형량의 약 81.9%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으며(ANOVA 결과: $F = 1439.958$, $p < .001$), 표준 오차(5.974)도 비교적 낮아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 독립변인의 회귀계수를 보면, 1심 형량($\beta = .821$, $p < .001$)은 2심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1심 형량이 1개월 증가할 때 2심 형량도 평균적으로 약 0.726개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금액($\beta = .159$, $p < .001$)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증가할 때 2심 형량은 평균적으로 약 0.01252개월(약 0.37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의 표준화 회귀계수($\beta = .159$)는 1심 형량($\beta = .821$)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2심 형량 결정에 있어 1심 형량이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1심 형량이 2심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피해 금액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2) 피해자수

피해자 수가 형종 변화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심 형종과 피해자 수를 독립변인으로 형종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순차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2심 형종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은 1심 형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수의 영향

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2 \text{ Log Likelihood}$ 값이 143.666으로 감소하면서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고($\chi^2 = 445.537$, $p < .001$), 나겔커케(Nagelkerke) R^2 값은 0.569로 중간 수준의 설명력을 가졌다. 1심 형종이 2심 형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무죄($\beta = -4.056$, $p < .001$), 벌금형($\beta = -6.555$, $p < .001$), 집행유예($\beta = -2.480$, $p < .001$)를 받은 경우 2심에서도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 수 변인은 일부 값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예: 피해자 수 1명, $\beta = -2.600$, $p = .005$; 피해자 수 2명, $\beta = -2.205$, $p = .021$), 다수의 피해자 수 범주에서는 추정치가 극단적으로 크거나(예: 피해자 수 10명, $\beta = 16.890$) Wald 검정이 유의하지 않아 해석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자 수가 형량의 변화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심 형량과 2심에서 인정된 피해자 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2심 형량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심 형량은 2심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피해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결과, 2심 형량의 평균은 13.34개월(표준편차 = 13.882), 1심 형량의 평균은 15.09개월(표준편차 = 15.487)이며, 2심에서 인정된 피해자 수의 평균은 2.89명(표준편차 = 8.131)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보면, 결정계수(R^2)는 0.798로 나타나 독립변인들이 2심 형량의 약 79.8%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으며(ANOVA 결과: $F = 1201.670$, $p < .001$), 표준 오차(6.248)도 비교적 낮아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독립변인의 회귀계수를 보면, 1심 형량($\beta = .895$, $p < .001$)은 2심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1심 형량이 1개월 증가할 때 2심 형량도 평균적으로 약 0.802개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 수($\beta = -0.026$, $p = .157$)는 2심 형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회귀계수도 미미한 수준(-0.044)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2심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등을 통한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이 형종 변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심 형종과 2심에서의 합의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2심 형종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순차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순차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심에서의 합의 여부와 1심 형종이 2심 형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2 \text{ Log Likelihood}$ 값이 102.672로 감소하면서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고($\chi^2 = 456.096$, $p < .001$), 나겔커케(Nagelkerke) R^2 값은 0.579로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Pearson 카이제곱 검정과 Deviance 검정 모두 p 값이 0.000으로 나타나 데이터 적합성에 대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1심 형종이 2심 형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무죄($\beta = -5.122$, $p < .001$), 벌금형($\beta = -7.279$, $p < .001$), 집행유예($\beta = -2.835$, $p < .001$)를 받은 경우 2심에서도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beta = 2.259$, $p < .001$)와 부분 합의를 한 경우($\beta = 1.698$, $p < .001$)는 전부 합의를 이룬 경우보다 높은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2심 형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심 형종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수록 2심에서의 형량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으나 2심에서 부분 혹은 전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1심에서 부분 합의였으나 2심에서 전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형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순차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2심에서 선고된 형종(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이며, 독립변인으로는 1심에서 선고된 형종과 2심에서 추가적인 합의 여부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합의의 변화가 피고인의 형종 변경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4) = 469.530$, $p < .001$), 독립변인들이 2심 형종의 변화를 상당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seudo R^2 값은 Nagelkerke 기준 .50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모형이 2심 형종의 변동을 절반 이상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ANOVA 검정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독립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의 형종이 2심 형종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무죄였던 경우($\beta = -5.516$, $p < .001$)와 벌금형이었던 경우($\beta = -4.301$, $p < .001$), 그리고 집행유예였던 경우($\beta = -2.503$, $p < .001$)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우보다 2심에서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심에서의 형종이 2심에서도 유지되거나 일정한 패턴을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2심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beta = 0.928$, $p < .001$), 형종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1심에서의 형량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2심 형량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심 형량은 2심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결과, 2심 형량의 평균은 13.86개월(표준편차 = 14.179), 1심 형량의 평균은 15.71개월(표준편차 = 15.985)이며, 2심 피해자 합의 여부의 평균값은 0.8485(표준편차 = 0.83625)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보면, 결정계수(R^2)는 0.807로 나타나 독립변인들이 2심 형량의 약 80.7%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으며(ANOVA 결과: $F = 1369.733$, $p < .001$), 표준 오차(6.246)도 비교적 낮아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독립변인의 회귀계수를 보면, 1심 형량($\beta = .893$, $p < .001$)은 2심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1심 형량이 1개월 증가할 때 2심 형량도 평균적으로 약 0.792개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beta = -0.035$, $p = .045$)는 2심 형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심 형량이 평균적으로 약 0.588개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상급심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인은 2심에서 선고된 형량(개월 단위)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상급심에서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2심에서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인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381.013$, $p < .001$), 독립변인들이 2심 형량의 변화를 80.8%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2 = .808$). 이는 본 모형이 2심 형량의 변동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독립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2심 형량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B = .790$, $p < .001$). 이는 1심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될수록 2심에서도 유사한 수준에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상급심에서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심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439$, $p = .004$). 이는 상급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의 형량이 평균적으로 약 1.4개월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2심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에 비해 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원이 상급심에서의 피해 회복을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가 단순히 형종의 변화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2심 형량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1심 형량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한 형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 대법원 판례가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영향: 성인지 감수성 판례의 변화

1. 판결문 수집 방법과 내용

가. 표집

본 절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 판결결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재판 과정은 범죄 유형, 피고인 및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제출된 증거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므로, 개별 사건을 직접 비교하여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도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 중 해당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1심과 2심 판결 간 차이를 검토하여 성인지 감수성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판례와 변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절차적인 내용보다 사실인정과 관련된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대법원 판결이 무엇인지 자문한 결과,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 분석을 위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과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을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두 판결은 법관 출신 변호사들과의 자문을 거쳐 그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된 사례들로, 2018도7709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대법원 판례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서 이후 법관의 판단 변화에 대한 분석 기준이 될 수 있다. 반면, 2023도13081 판결은 최신 대법원 판례로서, 성인지 감수성이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했는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비교 대상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판결 선고 기간을 설정하였다. 동일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관이 어떻게 판단을 달리 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영향을 검토하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특정 대법원 판결이 1심 판결이 있고 2심 판결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판결을 분석했다. 예를 들어, 2018도7709 판결이 하급심 및 대법원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결 선고 이전 1심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2심 판단이 내려진 사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2023도13081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1심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 이후 2심 판단이 내려진 사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제출된 증거가 1심과 2심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보다 명확히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토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진술 신빙성 판단, 양형의 차이, 피고인-피해자 관계, 피해자 연령대 등 다양한 변인들이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핵심 요소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건들을 ‘2018 판례군’(2018도7709 판결을 근거로 한 사건)과 ‘2024 판례군’(2023도13081 판결을 근거로 한 사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의 법적 기준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기준이 판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1) 2018 판례군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검색을 통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을 인용한 판결을 2018년 10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검색한 결과, 총 858건이 확인되었다. 이 중 1심 판결이 2018년 10월 25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2심 판결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 중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을 인용한 사건만을 선별하였다. 성범죄가 아닌 사건(폭력 등)을 제외한 결과, 49건의 판결문이 추출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요 죄명이 성범죄가 아닌 사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건의 판결문을 2018 판례군으로 분류했다.

2) 2024 판례군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검색을 이용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을 인용한 판결은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총 79건이 확인되었다. 이 중 1심 판결이 2024년 1월 4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2심 판결이 그 이후에 내려진 사건을 선별하였다. 이들 중 성범죄가 아닌 사건을 제외한 결과, 18건이 추출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요 죄명이 성범죄가 아닌 사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건의 판결문을 2024 판례군으로 분류했다.

나. 변인 구성

판결문에서 수집한 변인은 <표 4-47>과 같다. 재판정보, 피고인 및 피해자 정보, 1심·2심 판결 내용, 심급별 판단 비교 등의 정보를 추출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추출하다보니,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같은 정보들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이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비교분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경우 별도의 수집을 하지 않았다.

» **<표 4-79> 변인구성**

분류	변인
재판정보	판결번호, 판례군(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법원이름(1심, 2심 법원 이름), 판결 선고 일자(1심, 2심)
피고인 및 피해자 정보	피고인 성별, 피고인 연령, 피고인 직업, 피고인 전과여부, 피해자 연령, 피해자 성별과 수, 피해자-피고인의 관계
1심 판결	1심 유무죄, 양형, 집행유예 여부, 판결문 길이,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 1심 사실인정(유죄취지/무죄취지), 1심 법률적 판단(유죄취지/무죄취지), 1심 합의/반성/자백 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2심 판결	2심 유무죄, 양형, 집행유예 여부, 판결문 길이,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 2심 사실인정(유죄취지/무죄취지), 2심 법률적 판단(유죄취지/무죄취지), 1심 합의/반성/자백 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심급별 판단 비교	심급별 동일한 판단, 심급별 달라진 판단, 달라진 판단의 이유

2. 판결문의 기술적 통계

가. 재판정보

1) 사건 판결 법원

2018 판례군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건이 발생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2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 각각 3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2건이 발생해 2심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1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갔으며, 춘천지방법원에서는 1건이 서울고등법원(춘천)으로 이송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는 2건이 발생해 각각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춘천)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1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3건이 발생해 2심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처리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2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1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2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는 1건이 대전고등법원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2건이 발생해 2심도 청주지방법원에서 처리되었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는 1건이 청주지방법원으로 갔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3건이 대구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 1건이 대구고등법원으로 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2건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처리되었고, 울산지방법원에서는 1건이 부산고등법원 울산에서 2심이 진행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2건이 발생해 광주고등법원 전주에서 2심이 이루어졌으며, 제주지방법원에서는 1건이 광주고등법원 제주에서 처리되었다.

2024 판례군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2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1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1건이 대구고등법원으로 갔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2건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처리되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도 1건이 부산고등법원 울산에서 2심이 진행되었으며, 창원지방법원에서는 3건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으로 이송되었다.

각 판례군에서 수집된 사건 수는 2018 판례군이 44건, 2024 판례군이 11건으로

집계되었다.

▶▶ <표 4-80> 사건판결 법원

1심 법원	2심 법원	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4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2	1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3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3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2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고등법원		1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서울고등법원	1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고등법원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고등법원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서울고등법원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고등법원	1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1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3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고등법원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2	2
울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울산	1	1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광주고등법원 전주	2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	1	
총합		44	11

2) 판결선고 일자

<표4-81>은 수집된 판례군의 1심과 2심 선고일자를 ‘최초’와 ‘최근’으로 구분해 정리한 내용이다.

2018 판례군에서는 1심 선고가 2017년 10월 12일에 처음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 1심 판결은 2018년 10월 25일에 있었다. 2심의 경우 2018년 11월 14일에 최초로 선고되었고, 가장 최근 2심 판결은 2019년 12월 19일에 내려졌다. 1심에서 2심 선고까

지 걸린 기간을 일수로 계산했을 때, 평균 307.15일이 소요되었다.

2024 판례군에서는 1심 선고가 2023년 2월 2일에 시작되어 2023년 11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2심은 2024년 1월 24일에 시작되어 2024년 7월 11일에 가장 최근 판결이 이루어졌다. 1심에서 2심까지의 선고일자 차이는 평균 299.55일로 계산되었다.

두 판례군 사이의 선고기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32.47)=0.13$, $p = .90$).

» **〈표 4-81〉 판결선고 일자**

	1심 선고일자		2심 선고일자	
	최초	최근	최초	최근
2018 판례군	2017.10.12	2018.10.25	2018.11.14.	2019.12.19.
2024 판례군	2023.2.2.	2023.11.22.	2024.1.24.	2024.7.11.

3) 여성판사 재판참여여부

〈표 4-82〉는 2018 판례군과 2024 판례군에서 1심 및 2심 판결에 여성 판사가 참여한 비율을 보여주며, 여성 판사의 재판 참여 여부를 판결문에 기재된 판사 정보로 확인한 결과를 나타낸다. 판결문에서 여성 판사가 재판장이 아니더라도 재판부에 참여했다면 해당 사건은 여성 판사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2018 판례군에서는 1심 판결 44건 중 8건(18.18%)에서 여성 판사가 참여했고, 2심에서는 44건 중 9건(20.45%)에서 여성 판사가 참여했다.

2024 판례군에서는 1심 판결 11건 중 7건(63.64%)에서 여성 판사가 참여하였으며, 2심에서는 11건 중 8건(72.73%)에서 여성 판사가 참여했다.

이 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2024 판례군에서 1심과 2심 모두에서 여성 판사의 참여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 **〈표 4-82〉 여성 판사 참여 비율**

판례군	1심 여성판사참여/전체판결(비율)	2심 여성판사참여/전체판결(비율)
2018 판례군	8/44 (18.18%)	9/44(20.45%)
2024 판례군	7/11 (63.64%)	8/11(72.73%)

나. 피고인 및 피해자 정보

1) 피고인 연령

〈표 4-83〉은 2018 판례군과 2024 판례군에서 피고인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피고인은 남성으로, 성별에 대한 별도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 〈표 4-83〉 판례군별 피고인 연령

연령대	2018 판례군 (비율)	2024 판례군 (비율)
20대	6 (14.6%)	1 (9.1%)
30대	6 (14.6%)	0 (0.0%)
40대	13 (31.7%)	1 (9.1%)
50대	3 (7.3%)	0 (0.0%)
60대 이상	1 (2.4%)	0 (0.0%)
미기재	12 (29.3%)	9 (81.8%)
합계	44 (100%)	11 (100%)

2018 판례군에서는 전체 44건 중 12건(29.3%)에서 피고인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연령이 확인된 피고인 중에서는 40대가 13명(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30대 피고인이 각각 6명(14.6%)으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했다. 50대는 3명(7.3%), 60대 이상은 1명(2.4%)으로 나타났다.

2024 판례군에서는 전체 11건 중 9건(81.8%)에서 피고인의 연령이 명시되지 않았다. 연령이 확인된 피고인 중에서는 20대와 40대가 각각 1명(9.1%)씩 기록되었으며, 3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연령 기재가 없었다.

2) 피고인 전과여부

〈표 4-84〉는 2018 판례군과 2024 판례군에서 피고인의 전과 여부를 나타낸다. 판결문에 ‘초범’ 또는 ‘동종전과없음’으로 기재된 경우는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며, 다른 범죄 전과나 과태료도 ‘없음’으로 동일하게 표기되었다.

2018 판례군에서는 전체 44건 중 38건(86.36%)에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었으며, 6건(13.64%)에서는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었다.

2024 판례군에서는 전체 11건의 판례에서 모든 피고인(100%)이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 <표 4-84> 판례군별 피고인 전과여부

전과 여부	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없음	38 (86.36%)	11 (100%)
있음	6 (13.64%)	0 (0%)
합계	44 (100%)	11 (100%)

3) 피해자 연령대

<표 4-85>는 2018 판결군과 2024 판결군에서 연령대별 피해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10대 미만 피해자는 2018 판결군에서 1명, 2024 판결군에서는 없었다. 10대 피해자는 2018 판결군에서 8명, 2024 판결군에서 6명으로 나타났다. 20대 피해자는 2018 판결군에서 12명, 2024 판결군에서 3명으로 집계되었다. 30대 피해자는 2018 판결군에서 8명, 2024 판결군에서 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40대 피해자는 2018 판결군에서 5명, 2024 판결군에서는 없었다. 50대 피해자는 2018 판결군에서 1명, 2024 판결군에서는 없었고, 60대 이상 피해자는 2018 판결군에서는 없었으나 2024 판결군에서 1명이 기록되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018 판결군에서 27.9세(표준편차 10.8), 2024 판결군에서 23.5세(표준편차 14.7)로 나타났다.

▶▶ <표 4-85> 판례군별 피해자 연령대

연령대	2018 판결군 피해자 수	2024 판결군 피해자 수
10대 미만	1	0
10대	8	6
20대	12	3
30대	8	1
40대	5	0
50대	1	0
60대 이상	0	1
평균(표준편차)	27.9 (10.8)	23.5 (14.7)

4) 피해자 수

〈표 4-86〉은 2018 판례군과 2024 판례군에서 피해자 수에 따른 사건 분포를 보여준다.

2018 판례군에서는 전체 44건 중 1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38건(86.36%)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은 4건(9.09%), 3명인 사건은 2건(4.55%)이었으며, 피해자가 4명 이상인 사건은 없었다.

2024 판례군에서는 전체 11건 중 1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9건(81.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은 1건(9.09%)이었으며, 3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없었다. 반면, 4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1건(9.09%) 기록되었다.

전체적으로 두 판례군 모두에서 피해자가 1명인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 〈표 4-86〉 피해자 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총합
2018 판례군	38 (86.36%)	4 (9.09%)	2 (4.558%)	0 (0%)	44
2024 판례군	9 (81.82%)	1 (9.09%)	0 (0%)	1 (9.09%)	11

5) 피고인-피해자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가족 및 친밀 관계’는 친부모, 계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거나 배우자, 동거인,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등을 포함한다. 특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아동 성범죄 및 친족 성범죄와 관련이 깊다.

둘째, ‘지인 및 사회적 관계’는 친구, 동료, 선후배, 이웃 등 일상적 지인과 학교, 직장, 종교 모임 등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특징은 일상적 환경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반복적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크고, 데이트 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셋째, ‘위계 및 권력관계’는 교사-학생, 상사-부하, 코치-선수, 종교 지도자-신도, 경찰이나 군대 상급자 등 공적 권력관계를 이야기한다. 이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

자의 신분이나 상황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보복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넷째, ‘낯선 사람 (Stranger)’은 범행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관계로, 공공장소, 길거리,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관계이다. 범죄의 불확실성과 충동성이 특징이고, 피해자가 범행을 피하거나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2018 판결군에서는 총 44건의 판결문이 포함됐다. 지인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판결문이 17건(38.63%)으로 가장 많았고, 위계 및 권력관계에서의 판결문이 11건(25.00%)이었다. 가족 및 친밀 관계에서의 판결문은 9건(20.45%)으로 뒤를 이었으며, 낯선 사람에 관한 판결문은 7건(15.90%)이었다. 지인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판결문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 4-87> 피고인-피해자 관계

관계 분류	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 및 친밀 관계	9	20.45%	2	18.18%
지인 및 사회적 관계	17	38.63%	5	45.45%
위계 및 권력관계	11	25.001%	3	27.27%
낯선 사람 (Stranger)	7	15.90%	4	36.36%
총합	44	100%	11	100%

2024 판결군에서는 총 11건의 판결문이 다뤄졌다. 지인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판결문이 5건(4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계 및 권력관계에서의 판결문이 3건(27.27%)이었다. 가족 및 친밀 관계에서의 판결문은 2건(18.18%)으로 나타났고, 낯선 사람에 관한 판결문은 4건(36.36%)이었다. 지인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판결문이 가장 많았다.

다. 판결 정보

1) 1심 판결 정보

가) 양형

1심 판결결과 2018 판례군에서는 총 44건의 판결문 중 7건이 무죄로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37건은 유죄판결이었다. 유죄판결 중 벌금형은 8건, 징역형은 29건으로 징역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징역형 중 9건은 집행유예였고, 20건은 실형이 선고되었다. 실형기간은 6개월에서 144개월까지 다양하며, 특히 36개월(3건), 60개월(3건), 84개월(3건) 등 중형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유죄판결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2024 판례군에서는 총 11건의 판결문 중 6건이 무죄로 선고되었으며, 유죄판결은 5건에 불과했다. 유죄판결 중 벌금형은 1건, 징역형은 4건이었다. 징역형 중 1건은 집행유예였고, 3건은 실형으로 선고되었다. 실형기간은 12개월(2건)과 36개월(2건)으로, 중·단기 징역형이 주를 이룬다. 2024 판례군에서는 유죄판결이 적지만, 유죄판결 중에서도 징역형 비율이 높아 실형 선고가 두드러진다.

» **〈표 4-88〉 양형**

		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무죄			7		6	
유죄	벌금형		8		1	
	징역형	개월수	집행유예	실형	집행유예	실형
		4	1			
		6	3	1		
		8	2	1		
		12	1	2	0	2
		18		2		
		24		2		
		30	1	1		
		36		3	0	2
		48		1		
		60		3		
		72		1		
		84		3		
		144		1		
합계			9	20	0	4

나) 판결문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

판결문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판결문의 동향과 법원의 해석 기준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단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했다. 이는 법원이 특정 법리에 대해 어떤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유사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하게 한다.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판례는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이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 확실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판결의 정당성과 법률 적용 방식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89〉는 2018 판례군과 2024 판례군에서 1심 재판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와 인용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2018 판례군에서는 총 37회의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으며, 판결문 당 0.84건으로 1심 재판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가장 많이 인용된 판례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로 4회 인용되었다. 이 외에도 2010도9633 판결(3회), 2011도16413 판결(3회), 2010도14487 판결(3회) 등이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 인용된 판례들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에 선고된 판례들이 주를 이루며, 최근 10년 이내의 판례보다는 과거 판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된 경향을 보인다.

2024 판례군에서는 총 20회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으며, 판결문 당 1.8건으로 2018 판례군에 비해서 더 많았다. 인용된 판결문들 중에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이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

▶▶ <표 4-89> 판례군별 인용횟수

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판례	인용 횟수	판례	인용 횟수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2102 판결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3257 판결	2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5395 판결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91 판결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917 판결	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84 판결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2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B095 판결	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판결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4733 판결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4		
총합	37		20

다) 사실인정 및 법률적 판단

(1) 유죄취지

피해자의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과 신뢰성이다.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이를 강력한 증거로 간주한다. 분석된 사례 중 12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판결에 반영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일 경우 유죄로 인정되

는 경우가 많았다. 5건에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며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행동을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직후 이루어졌을 경우, 이는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나온 증언으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된다. 3건의 사례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 등 공적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 무의식,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도 법원이 주목하는 핵심 사항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6건의 판결에서 언급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상태를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의학적 소견서, 당시의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인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제3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보고가 판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남자친구나 부모 등 가까운 지인에게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1건, 직장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사례는 1건이었다. 이러한 제3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피해자가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거나 사건 직후 사과한 경우(1건), 법원은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했다.

(2) 무죄취지

무죄취지로 사실인정된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 및 증거 부족이다. 분석된 사례 중 9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주요 부분에서 모순이 발견되어 무죄로 판단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친밀한 행동을 하거나, CCTV 영상 등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강간 피해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객관적인 증거의 부족도 무죄판결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7건의 사례에서 피해

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되었다.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도 6건 있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깨어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긴 했으나 강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거나, 가해자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5건에서는 피해자가 범행 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점이 무죄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보인 행동이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었음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1심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판례는 2018 판례군에서는 전체 44건 중 9건(20.45%), 2024판례군에서는 전체 11건 중 6건(54.54%)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충분' vs. '부족')과 판례군(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성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판례군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유의미성에 근접한 수준(marginally significant)으로 나타났다, $\chi^2(1, N = 55) = 3.58, p = .058$. 2018 판례군에 비해서 2024 판례군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표 4-90>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행 레이블	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총합계
부족	9 (20.45%)	6 (54.54%)	15 (27.27%)
충분	35 (79.55%)	5 (45.46%)	40 (72.73%)
총합계	44	11	55

2) 2심 판결 정보

가) 양형

2018 판례군에서는 2심 판결결과 총 44건의 판결문 중 무죄판결은 없었고, 모든 판결문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유죄판결 중 벌금형은 7건 징역형은 37건이었다. 징역형 중 11건이 집행유예, 26건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실형의 경우 8개월부터 144개월까지 다양한 기간이 선고되었으며, 특히 36개월(5건), 30개월(3건), 60개월(3건) 등의 중장기형이 많다. 전반적으로 유죄판결이 압도적이며, 실형 비율이 높은 징역형이 주를 이룬다.

2024 판례군에서는 2심 판결결과 총 11건의 판결문 중 8건이 무죄로 선고되었으며, 유죄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유죄판결 중 벌금형은 2건, 징역형은 1건이었다. 징역형 중 1건은 집행유예였다. 2024 판례군에서는 유죄판결이 적고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표 4-91〉 판례군별 양형**

			2018 판례군		2024판례군	
무죄			0		8	
유죄	벌금형		7		2	
	징역형	형량	집행유예	실형	집행유예	실형
		4	1			
		6	4			
		8	3	2		
		12		2	1	
		18		3		
		24		2		
		30	2	3		
		36	1	5		
		42		1		
		48		1		
		54		1		
		60		3		
		84		2		
		144		1		
합계			11	26	1	0

나) 판결문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

〈표 4-92〉는 2018 판례군과 2024 판례군에서 2심 재판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와 그 인용 횟수를 나타낸다.

2018 판례군에서는 자료 선별 기준이었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을 제외하면, 대법원 2006. 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이 16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이 10회로 두 번째로 자주 인용되었다.

반면 2024 판례군에서는 자료 수집 기준이었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 13081 판결을 제외하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8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 〈표 4-92〉 판례군별 2심 재판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와 그 인용 횟수

판례 이름	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43	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0	10
대법원 2006. 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16	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0	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5	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1	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0	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0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도261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8도156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7도932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340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2018 판례군에서 1회 인용, 2024에서 0회 인용된 판례	

판례 이름	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763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5395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3257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1998도250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다) 사실인정 및 법률적 판단

(1) 유죄취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빙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하거나 사과한 경우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6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배척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반박보다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격자의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경우도 유죄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4건에서는 목격자의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 나오면 법원은 목격자 진술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받아들였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경우가 5건에 달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 상태를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피해자의 상태와 진술이 일관되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배척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관계가 2심에서도 변화 없이 유지된 사례는 10건이었다. 이 경우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검토하고,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지 않았다. 이는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을 경우, 2심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무죄취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되거나 변경된 사례는 주로 증거 부족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에 기인했다.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과 다르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지속된 정황이 드러난 경우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영상 촬영과 관련한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 무죄로 이어졌다. 동영상 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여러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을 뒤집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데 법원이 신중함을 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표 4-93〉은 2심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다. 2심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판례는 2018 판례군에서는 전체 44건 중 1건(2.27%), 2024판례군에서는 전체 11건 중 10건(90.90%)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충분’ vs. ‘부족’)과 판례군(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성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판례군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 N = 55) = 37.85, p < .001$. 두 판례군 간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며, 판례군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 <표 4-93>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행 레이블	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총합계
부족	1 (2.27%)	10 (90.90%)	11 (20.00%)
충분	43 (97.72%)	1 (9.09%)	44 (80.00%)
총합계	44	11	55

3. 대법원 판례 전후 심급 간 판결 비교

가. 유무죄 판단 변화

<표 4-94>는 판례군별 심급 간 유무죄 판단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8년 판례군에서 1심과 2심의 양형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부분 유죄로 변경되는 비율이 높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중 7건이 2심에서 모두 유죄로 번복되었으며, 이 중 5건은 실형으로, 1건은 벌금형으로, 1건은 실형(집행유예)로 변경되었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 중에서도 2건은 2심에서 실형 및 실형(집행유예)으로 형량이 가중되었다. 반면, 실형(집행유예)을 받은 사건은 7건이 유지된 반면 1건은 실형으로 전환되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 20건은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이 유지되며 형량이 감경되거나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는 없었다. 2018년 판례군에서는 1심의 무죄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변경되는 비율이 높았고, 벌금형 사건의 일부는 2심에서 실형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판례군에서는 1심과 2심 간의 양형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6건은 2심에서도 모두 무죄로 유지되었으며, 벌금형 사건 1건 또한 2심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실형(집행유예)을 받은 사건 역시 2심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건 중 2건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며, 1건은 벌금형으로 감형되었고, 나머지 1건만이 실형으로 유지되었다. 2024년 판례군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무죄판결이 2심에서 번복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실형 사건에서 감형되거나 무죄로 판결이 변경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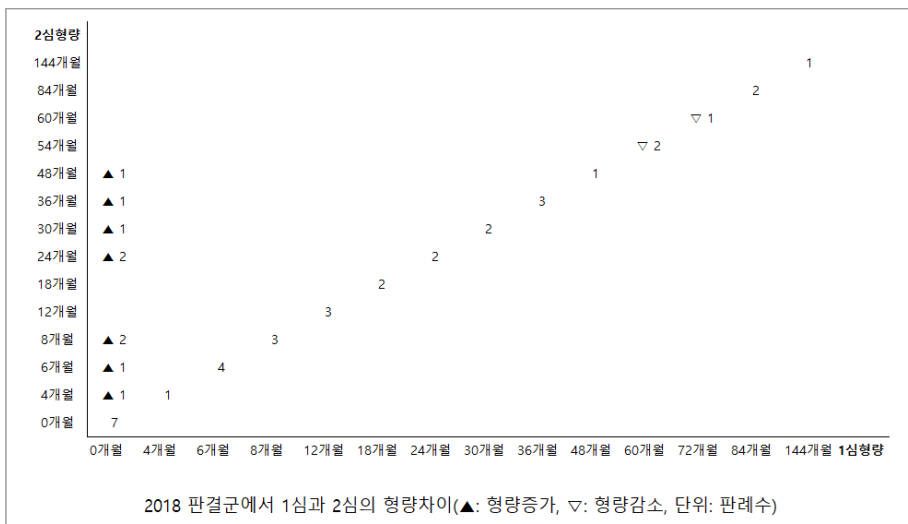
▶▶▶ <표 4-94> 판례군별 심급 간 유무죄 판단 변화

		2018 판례군						2024 판례군			
		2심 유무죄						2심 유무죄			
		무죄	벌금형	실형 (집행 유예)	실형			무죄	벌금형	실형 (집행 유예)	실형
1심 유무죄	무죄		1	1	5	1심 유무죄	무죄	6			
	벌금형		6	1	1		벌금형		1		
	실형 (집행유예)			7	1		실형 (집행유예)				
	실형				20		실형	2	1		1

나. 양형 변화

[그림 4-8]은 2018 판결군에서 1심 형량에서 2심 형량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며, 0개월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나타낸다. 2018년 판례군에서는 1심과 2심 사이에 실행개월 수가 동일하게 유지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1심에서 실행이 없었던 사건 중 2심에서 18개월, 12개월, 30개월 등 실행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다. 이는 1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이었던 사건이 2심에서 실행으로 반복된 경우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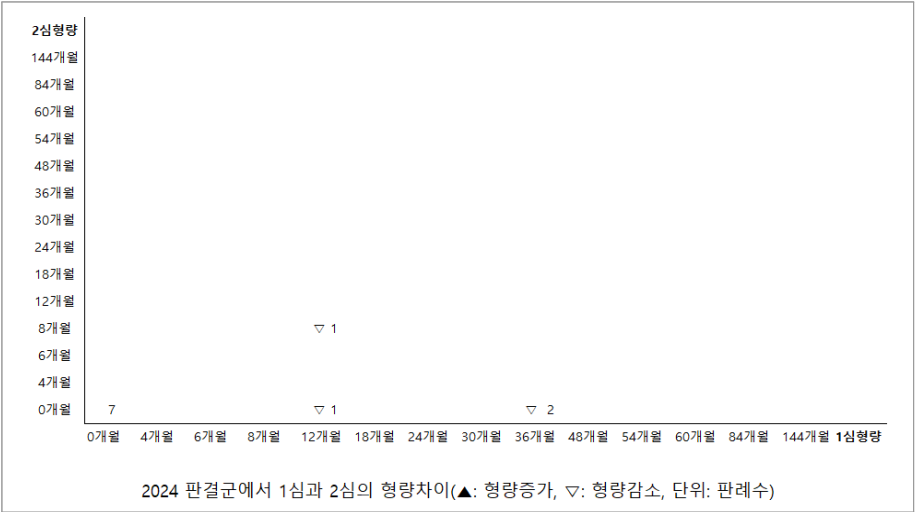
▶▶▶ [그림 4-8] 2018년 판결군에서의 1심과 2심의 형량차이



반면, 1심에서 높은 실형이 선고된 사건 중 일부는 2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도 소수 관찰된다. 예를 들어 1심에서 84개월이었던 사건이 2심에서 60개월로 감경된 사례가 있다.

[그림 4-9]는 2024년 판례군에서 1심 양형에서 2심 양형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2024년 판례군에서는 2심에서의 감형 판결만이 존재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 중 2심에서 실형이 0개월로 감형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무죄나 집행유예로 변경된 경우로 해석된다. 36개월 실형이 2심에서 0개월로 감형된 경우가 두 건, 12개월 실형이 0개월로 감형된 경우가 한 건 관찰된다. 반면,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한 사례는 없으며, 1심에서 실형이 없었던 사건들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등 형량 유지 또는 감경이 주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 [그림 4-9] 2024년 판결군에서의 1심과 2심의 형량차이



다. 재판기간

[그림 4-10]는 판례군별 1심 2심 심급별 유무죄 판단 변화와 1심 판단에서 2심 판단까지의 시간을 보여준다.

2018년과 2024년 판례군 간 1-2심 일수 차이. 2018년 판례군의 1-2심 일수 차이 평균은 209.3일(SD = 95.31)로 나타난 반면, 2024년 판례군에서는 331.5일(SD =

73.42)로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두 그룹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t(16) = -2.98$, $p = .009$. 이는 2024년 판례군에서 2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018년 판례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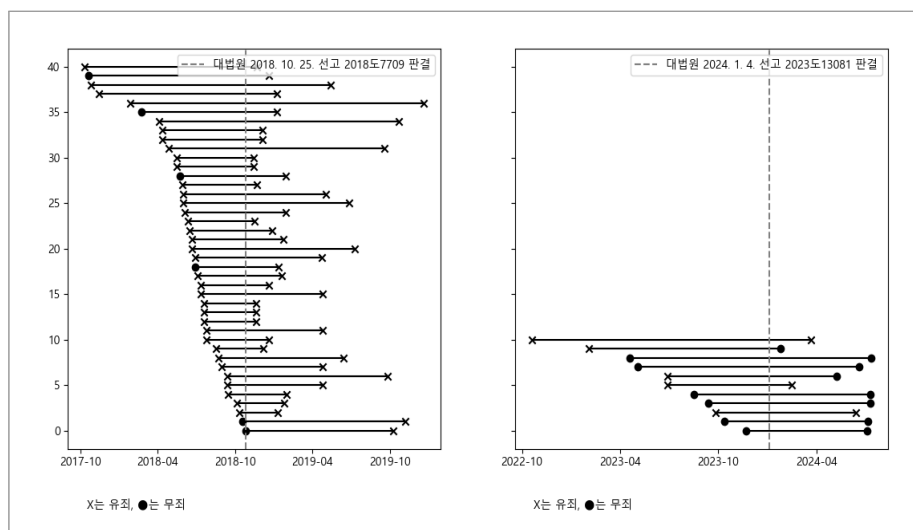
이 결과는 2심에서의 절차 진행 시간이 최근 들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판례군에서 1-2심의 진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은, 사건의 복잡성 증가나 절차적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죄와 무죄판결에 따른 1-2심 일수 차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평균 1-2심 일수 차이는 230.3일($SD = 99.60$)이었으며,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는 330.2일($SD = 85.85$)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수준 .05에 근접했다, $t(16) = -2.09$, $p = .053$. 이는 무죄판결 사건에서 2심까지의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무죄 사건에서 2심에서의 신중한 검토 및 추가적인 심리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유죄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심 일수 차이의 분포. 1-2심 일수 차이의 평균은 263.61일($SD = 104.56$)로 나타났다으며, 최솟값은 76일, 최댓값은 449일이었다. 1사분위수($Q1$)는 196.25일, 중앙값(Mdn)은 269.5일, 3사분위수($Q3$)는 324.75일이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1-2심 일수 차이가 크게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별로 판결까지의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처리 속도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2심 선고 시점이 상당히 차이 나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3사분위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복잡도가 높거나 절차상의 지연이 있었던 경우로 분석된다.

1-2심 일치 여부에 따른 일수 차이. 1심과 2심이 일치한 사건의 평균 1-2심 일수 차이는 235.5일($SD = 98.10$)로 나타났으며, 불일치한 사건에서는 362.0일($SD = 60.47$)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t(16) = -2.42$, $p = .028$. 이 결과는 1-2심이 불일치한 사건에서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더 많은 심리와 증거 검토가 이루어지며, 사건 진행 과정이 길어지는 경향을 반영한다.

▶▶▶ [그림 4-10] 판례군별 1심 2심 심급별 유무죄 판단 변화와 1심 판단에서 2심 판단까지의 시간



라. 심급별 판단이 달라진 경우와 그 이유

〈표 4-95〉는 1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총 8건의 사례 중 5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되었고, 1건은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나머지 2건은 벌금형이 2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로 가중된 경우였다.

형이 변경된 주된 사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재평가로, 전체 사례 중 5건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2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결과이며,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예: CCTV)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1심에서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이 2심에서 피고인의 강제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2심에서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법 절차에서 증거 및 진술의 재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심의 심리가 사건의 본질을 다시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시사한다.

▶▶ <표 4-95> 심급별 판단이 달라진 경우와 그 이유

1심 양형	2심 양형	형 변경 사유
무죄	실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재평가
무죄	실형	증거 부족, 피고인의 강제성 인정
무죄	실형	추가 증거 및 공소장 변경
무죄	실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CCTV 증거 고려
무죄	집행유예	피해자 진술 재평가, 새로운 증거 고려
벌금형	실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벌금형	집행유예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표 4-96>은 2024년 판례군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경우와 그 주요 사유를 정리했다. 1심에서는 11건 중 5건이 무죄로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11건 중 8건(72.7%)이 무죄로 선고되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던 4건의 사건들 중에서 2건은 무죄로 변경되었고, 1건은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실형이 유지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주요 사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강간 및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 행동 특성에 대한 심리 부족으로 인해 벌금형이 유지된 사례도 존재한다. 실형이 유지된 1건은 2심에서 별도의 감경이나 무죄 선고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이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고의성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사건별로 판결이 달라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표 4-96> 2024년 판례군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경우와 그 주요 사유

		변경 사유	2심 판결			계
			무죄	벌금형	실형	
1심 판결	무죄	검사의 증거만으로 고의성 입증 불충분	1			1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간 불일치	1			1
		피해자 진술과 정황의 불일치, 증거 부족	1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증거 불충분	1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객관적 증거 미비	1			1

		변경 사유	2심 판결			계
			무죄	벌금형	실형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의성과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움	1			1
	벌금형	장애인 행동 특성에 대한 심리 부족		1		1
	실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1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목시적 동의 판단	1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강간 고의 부재	1			1
		없음			1	1
		NA			1	1
		총합계	8	2	1	11

마. 대법원 판결 인용의 변화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집단(M = 3.13, SD = 2.03)과 유죄판결을 받은 집단(M = 3.17, SD = 1.95) 간 인용된 대법원 판례 수의 평균 차이는 0.0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53) = -0.05, p = .96$). 이는 유죄 여부에 따른 대법원 판례 인용 수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판결의 결과와 인용 판례 수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이 없음을 시사한다.

»» **〈표 4-97〉** 2심에서 유무죄 판단, 판결변화여부에 따른 인용한 대법원 판결수

무죄			유죄		
판례 수	평균	표준편차	판례 수	평균	표준편차
8	3.13	2.03	47	3.17	1.95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판결 변화 집단(M = 3.75, SD = 2.22)과 판결 유지 집단(M = 3.06, SD = 1.85) 간 2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 수 평균 차이는 0.69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53) = 0.80, p = .43$). 가장 큰 이유로는 판결이 변화된 판결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표 4-98〉** 2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 수 평균 차이

판결변화			판결유지		
판례 수	평균	표준편차	판례 수	평균	표준편차
8	3.75	2.22	47	3.06	1.85

제4절 | 소결

1. 강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요인

본 연구는 강간 범죄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판결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 여부, 재판장의 성별 및 경력, 변호인의 특성 등 여러 변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1심과 2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나, 집행유예 여부와 같은 형종보다는 형량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여러 변인들 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는 2심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재판의 복잡성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합의는 유무죄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량이나 형종 변경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추가 합의를 통해 평균적으로 10.3개월의 형량 감소가 예상되었다. 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심 재판장의 성별은 일부 재판 결과에 미미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재판장이 여성인 경우,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차이는 형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형량 변화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셋째, 재판장과 변호인의 학연 관계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장과 변호인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출신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판이 사적 관계가 아닌 사건의 법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변호인의 전관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관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에서는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법률적 판단 변화에 전관 변호인의 전문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관 변호인의 존재가 형종 변경이나 형량 감소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법관과 변호인 간의 개인적 관계는 재판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사법적 판단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전관 변호인의 전문성이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개인적 관계보다는 변호인의 경력이 법률적 논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2심 재판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판결문에서 추출한 데이터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비실명화로 인해 일부 변인의 결측값이 존재하여 분석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표본의 대표성이 특정 지역이나 기간에 제한될 수 있어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량적 분석에 집중하여 판결의 질적 측면이나 심리적 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2. 횡령·배임범죄에 있어서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 요인

본 연구에서는 비폭력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배임·횡령 사건에서 심급 간 판결 간 차이를 분석하고, 법관 및 변호사 간의 특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대부분이 2심에서도 유지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의 절반가량이 2심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2심에서 받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판사 및 변호사의 경력과 출신 배경이 판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1심과 2심 재판결과를 단순히 전관 변호사의 유무만을 고려할 경우 형종 변화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사건 내에서 1심과 2심에서 전관 변호사의 선임 여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형종 감경 및 집행유예 판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1심에서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심에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반대로 1심에서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형종 감경과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전관 변호사의 유무만으로는 명확한 효과를 찾기 어려웠지만, 같은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전관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건 특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감경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된 경우 형량 감경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법원의 형량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법원이 합의를 형량 감경의 주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3. 대법원 판례가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영향: 성인지 감수성 판례의 변화

본 연구는 2018년과 2024년 대법원 주요 판결이 항소심에서의 유무죄 판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8년 판례군에서는 주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재평가와 새로운 증거 제출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반면, 2024년 판례군에서는 1심 무죄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이 2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판례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2018년과 2024년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력을 완벽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8년 판례는 주로 유죄로 판결된 사건에서 인용되는 반면, 2024년 판례는 무죄판결에서 자주 인용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8년 판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유죄로 번복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24년 판례는 반대로 1심 유죄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될 때 주로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단순한 법적 기준을 넘어 사실관계 판단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상급심 판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같은

구체적 사실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2024년 판례와 같이 새로운 판례는 선고 이후 빠르게 하급심 재판에 적용되어 판결의 방향성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유죄와 무죄판결에 따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판결의 변화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제 5 장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변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결론

홍영오 · 최이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은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이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로 항소심에서의 판결변복이 많기 때문일 수 있기에 심급별 판결변복(유무죄의 변복 또는 감경/가중으로 인한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 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지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항소율이 높은 것이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의 고질적인 문제이기에 대법원에서도 2014년에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015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 재판사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피라미드형의 이상적 심급 구조 실현방안을 제시하였었다.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 및 비효율성 초래, 소송의 지연, 법원과 관련 기관의 자원 낭비, 형사사건에서의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가능성 저하, 판결의 확정 지연, 항소 남용의 우려, 재판 당사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최근 20년간의 항소율을 분석한 결과, 항소율은 2004년 32.8%에서 2014년 38.6%로 20%와 3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2015년 항소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비판으로,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다양한 실현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27.2%로 감소한 이후 2016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4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 41.6% 이후 2023년 48.1%에 이르기까지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23년에는 판결인원의 거의 절반가량이 항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해 강간과 추행의 죄 및 횡령과 배임의 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강간과 추행의 죄는 2004년 이후 판결인원수 및 항소인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항소율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3년에는 60.6%까지 높았다. 이와 달리 횡령과 배임의 죄는 2004년 이후 판결인원수 및 항소인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항소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59.5%로 높았다. 즉 강간과 추행의 죄 및 횡령과 배임의 죄의 항소율은 60%나 될 정도로 높았다.

항소주체별 항소율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2008년 71.9%에서 2022년 47.8%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검사의 항소율은 2008년 59.4%에서 2018년 48.3%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51.4%, 2020년 58.3%, 2021년 64.3%, 2022년 63%로 최근 4년간 다소 증가하였다. 즉 최근에는 피고인의 항소율은 50%를 넘지 않는 반면, 검사의 항소율은 60%를 넘고 있다. 이는 판결이 엄중하지 않아 검사의 구형에 비해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만족스런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형사공판사건의 원심파기율 및 상고파기율을 살펴본 결과, 원심파기율은 2004년 48.2%에서 2017년 31.3%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34.0%로 증가한 이후 2022년 42.8%, 2023년 41.1%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고파기율은 2004년 5.0%에서 2023년 1.6%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최근 2년간은 원심파기율이 40%가 넘는다. 유무죄가 반복되는 사례가 많지도 않고, 2심에서 가중되는 사례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2심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에 비해 항소율이 높은 상황에서 원심파기율도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결론이 유리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간범죄에 있어서의 심급별(1심과 2심) 판결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판결문과 법조인 경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나, 집행유예 여부와

같은 형종보다는 형량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여러 변인들 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는 2심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재판의 복잡성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합의는 유무죄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량이나 형종 변경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²⁾ 특히

- 2) 항소심에서 합의가 감경요인으로 중요하다는 결과는 특수강간 범죄에서도 드러났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대법원 판결문 검색 및 Casenote pro를 이용하여, ‘특수강간’으로 수집된 사건 중 2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사례들의 감경요인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55건으로 74.3%에 달했다. 이 외에 범행을 인정한 경우가 85.1%(63건), 책임을 수용한 경우가 79.7%(59건)였다.

》》〈표〉 특수강간범죄의 항소심 감경요인

감경요인	빈도	케이스 퍼센트(%)
책임수용	59	79.7
범행인정	63	85.1
전과	56	75.7
피해수준	11	14.9
합의·타원	55	74.3
정신질환	1	1.4
우발성	2	2.7
생활요인	2	2.7
연령	14	18.9
시행	10	13.5
합계	273	-

※ 합의 및 타원 여부 : 감경요인 중 합의나 타원, 선처, 처벌불원 등의 내용이 명시된 경우임.

① 합의는 피해자가 금전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하였거나 ‘합의를 써 줌’ 등이 명시된 경우.

② 처벌불원은 합의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범법에 요청하였다고 하는 경우, ③ 선처는 피고인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요청한 경우이며, ‘사회적 유대관계 존재’ 및 ‘사회적 지지가 튼튼하고’ 등이 항목도 선처의 항목에 포함함.

범행 인정 여부 : 감경요인 중 피의자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얼마나 인정하였는지가 감경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때 평정. ① 본범 인정은 본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성범죄 인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성범죄 단독인 경우 ‘모두 인정하였다’라고 기입된 경우에도 본범 인정 범위로 포함. ② 경합범죄 인정은 성범죄가 아닌 경합범죄에 대해서만 인정한 경우. ③ 모두 인정은 본 범죄와 경합범죄를 전부 인정한 경우이나, 성범죄 단독으로 기소된 경우 이는 이미 (1) 항목에 평정되었기 때문에 제외. ④ 일부 인정은 판결문에서 ‘범행을 일부/대부분 인정하였고’라고 기입되어 있으나 정확히 어느 범죄에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누락된 경우.

책임수용 & 피해복구 노력 : 감경요인 중 피의자가 ‘당심에 이르러’ 본인의 책임을 얼마나 수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감경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때 평정한 사유. ① 자백: 판결문에 범죄를 자백하였다고 명시된 경우, ② 반성은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③ 형사공탁: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형사공탁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④ 배상: 판결문에서 공탁이나 합의금이 아닌 별도의 금전을 건넨 경우. 그러나 판결문에 이 배상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합의에 평정. ⑤ 자수: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추가 합의를 통해 평균적으로 10.3개월의 형량 감소가 예상되었다. 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외적인 요인인 2심 재판장의 성별은 일부 재판 결과에 미미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재판장이 여성인 경우,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변호인의 전관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관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에서는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법률적 판단 변화에 전관 변호인의 전문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관 변호인의 존재가 형종 변경이나 형량 감소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재판장과 변호인의 학연 관계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장과 변호인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출신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판이 사적 관계가 아닌 사건의 법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관과 변호인 간의 개인적 관계는 재판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사법적 판단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간범죄와 달리 경제범죄인 횡령·배임범죄에서는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대부분이 2심에서도 유지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의 절반가량이 2심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는 경향을 보인 반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2심에서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외적인 요인으로서, 판사 및 변호사의 경력과 출신 배경이 판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1심과 2심 재판결과를 단순히 전관 변호사의 유무만을 고려할 경우 형종 변화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사건 내에서 1심과 2심에서 전관 변호사의 선임 여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형종 감경 및 집행유예 판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1심에서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심에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반대로 1심에서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형량 감경과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전관 변호사의 유무만으로는 명확한 효과를 찾기 어려웠지만, 같은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전관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건 특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앞의 강간범죄와 마찬가지로 양형 감경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된 경우 형량 감경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법원의 형량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법원이 합의를 형량 감경의 주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법원의 양형 기준 설정 및 정책적 대응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1심 판결에 대해 보다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전관 변호사의 유무를 기준으로 할 때 명확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별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전관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선임 여부가 횡령·배임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법적·사회적 인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경제범죄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과 2024년 대법원 주요 판결, 특히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결이 항소심에서의 유무죄 판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판례군에서는 주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재평가와 새로운 증거 제출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반면, 2024년 판례군에서는 1심 무죄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이 2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판례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2018년과 2024년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력을 완벽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상급심 판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같은 구체적 사실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2024년 판례와 같이 새로운 판례는 선고 이후 빠르게 하급심 재판에 적용되어 판결의 방향성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은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이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로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1심 판결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불공정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처럼 항소율이 높은 것이 항소심에서의 판결변복이 많기 때문일 수 있기에 심급별 판결변복(유무죄의 변복 또는 감경/가중으로 인한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 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지를 밝히고자 수행한 본 연구 결과, 2015년 사실심 충실화를 강조한 대법원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항소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소파기율 역시 40% 정도일 정도로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이에 항소하면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 등 문제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각성과 1심 재판의 충실화를 통해 항소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항소심의 구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속심이나 사후심적 요소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라는 견해와 원칙적으로는 사후심이나 속심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보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차승민, 2024), 제1심의 충실화는 대법원에서도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며, 상고제도의 개혁보다 1심 재판의 만족과 신뢰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임보미, 2018). 이에 또는 항소심 등 심급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사법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통계 분석과 판결문 분석 결과,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됨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실심 충실화를 강조한 대법원의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1심 판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판결의 일관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항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항소 제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제7차 회의에 대한 2015년 7월 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사실심 재판에서의 충실과 신속의 조화’에 대한 주제로 논의하여 ‘각 심급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합 분담’, ‘피라미드형의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 ‘재판 충실과 신속 가치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각 심급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합 분담’고 관련하여, 1심은 폭넓은 주장의 공방과 증거조사를 통한 충실한 사실 심리를 하고, 2심에서는 사후심적 운용(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제1심 판결의 절차 및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도록 하며, 3심은 법률심·정책심 기능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심급구조는 높은 항소·상고율로 인해 원통형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1심의 충실화, 2심의 사후심적 운용, 3심의 법률심·정책심 기능 강화를 통한 피라미드형의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을 강조하였다(대법원, 2015.7.9일자. 보도자료).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본 연구의 통계 결과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항소율뿐만 아니라 항소 파기율도 여전히 높다는 점과 판결문 분석 결과에서 감경에 주로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현재의 심급제도 운용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달리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과 법조인 경력 자료 수집에는 한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죄명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간범죄 및 횡령·배임범죄만을 분석하였으나, 폭행이나 살인 및 사기와 같은 사건은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범죄유형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조 정책 수립 및 사법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와 같은 실증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법원행정처
- 김면기·박미선. (2022). 주요 오판사건에서의 과학적 증거 오류에 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33(4), 163-195.
- 김민지. (2011). 미국의 오판사례 분석에 의한 형사정책적 시사점. 한국범죄심리연구, 7(1), 29-54.
- 김상준. (2013a).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경인문화사.
- 김상준. (2013b).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웅재. (2021). 이른바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8(1), 89-124.
- 김재현. (2021). 영장주의의 현대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3(3), 1-30.
- 김재형. (2001). 법관이 오판과 책임. 법조, 50(9), 72-91.
- 김종수. (1962). 誤判에 對한 批判 : 刑事裁判의 病理學. 법조, 11(12), 14-28.
- 김청택·최인철. (2010). 법정외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법학, 51(4), 317-345.
- 김형만. (2007). 형사절차상의 오판원인. 비교형사법연구, 9(1), 343-366.
- 김혜경. (2021). 피해자 합의 관련 양형인자의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9(2), 107-139.
- 김혜정. (2018).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사법, 45, 89-124.
- 김희은·박준영·김면기. (2024). 심리적 수사기법에 의한 허위자백의 실제: 수원상해치사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5(3), 265-293.
- 대법원. (2015). 2015. 7. 9.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2015.7.9.보도자료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2024).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
- 박노섭. (2011). 독일 오판사례분석과 그 시사점. 경찰학연구, 11(2), 271-300.
- 박미숙·김재현·박준영·김성룡. (2018).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II) : 오판 방지를 위한 사법 시스템 평가정비방안 연구: 재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미숙·서주연·최이문.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 - 국민참여 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호. (1994). 오판의 발생구조와 극복방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 253-269.
- 박성문·최이문. (2014).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3), 155-188.
- 안성수. (2009). 심급구조의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 76-123.
- 안재경·김세령·최이문.(2023). 성인지 감수성과 성적 불쾌감 표현이 성폭력범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 35(1), 7-42.
- 양천수. (2015).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형사정책연구, 26(4), 59-97.
- 이기수. (2012).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상원. (2012). 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3(1), 113-138.
- 이정원·이종섭. (2023). 국내 오판의 현황과 특성: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4(4), 31-67.
- 이종섭·이정원. (2022). 양형이탈 유발요인 탐색: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3(4), 197-231.
- 이지은·홍석민. (2014).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형사정책, 26(3), 135-162.
- 이창훈·데이비드 존슨. (2017). 오판의 개념 정립 및 오판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방향. 한국범죄학, 11(1), 3-52.
- 이호선. (2018). 미국의 형사 오판 사례에 나타난 법과학 증거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 임보미. (2018). 형사소송법상 상소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59(10), 327-357.
- 정영수. (2022). 미국의 소제기 전 증거개시와 우리의 증거보전절차에의 시사점. 강원법학, 66, 359-394.
- 조원철.(2009). 「심급별로 사실인정이 달라진 사건의 원인 분석(형사)」, 사법발전재단 엮음,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470-572.
- 차승민. (2024). 형사 항소심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법과 정책, 30(1), 339-369.
- 최이문. (2018).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활용한 성범죄의 집행유예 결정인자 연구. 형사정책, 30(1), 171-201.
- 최한수. (2021). 사법부 전관예우 분석: 경제학의 관점에서. 법경제학연구, 18(2), 155-191.
- 한유화. (2022). 국민참여재판 배심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 비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3(3), 111-143.
- 한유화·박광배. (2014). 합리적 의심의 단서. 한국심리학회지: 법, 5(3), 115-138.
- 허성욱. (2015).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터다임의 변화 방향. 국회의원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정책토론회자료집.
- 황지태·이천현·임정호·신동준. (2019).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II):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lbright, T. D., & Garrett, B. L. (2021). The Law and Science of Eyewitness Evidence.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102, 511-629.
- Alschuler, A. W. (1979). Plea Bargaining and Its History. *Columbia Law Review*, 79(1), 1-43.
- Audette, A. P., & Weaver, C. L. (2015). Faith in the court: Religious out-groups and the perceived legitimacy of judicial decisions. *Law & Society Review*, 49(4), 999-1022. <https://doi.org/10.1111/lasr.12167>.
- Bandes, S. (1999). Patterns of Injustice: Police Brutality in the Courts. *Buffalo Law Review*, 47(3), 1275-1341.
<https://digitalcommons.law.buffalo.edu/buffalolawreview/vol47/iss3/4>
- Beale, S. S. (2006). The News Media's Influence on Criminal Justice Policy: How

- Market-Driven News Promotes Punitiveness. *William & Mary Law Review*, 48(2), 397-481.
- Beloded D. R., Minenko I. F. (2021). Psychological features of the formation of jury prejudice against the defendant // Vestnik of St. Petersburg University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f Russia. – 2(90), 214-221; doi: 10.35750/2071-8284-2021-2-214-221.
- Bibas, S. (2004). Plea Bargaining Outside the Shadow of Trial. *Harvard Law Review* 117(8), 2463-2547. DOI:10.2139/ssrn.464880.
- Black, R. C., Johnson, T. R., Wedeking, J., & Wohlfarth, P. C. (2011). The influence of oral arguments on the U.S. Supreme Cour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1), 99-113.
https://doi.org/10.1017/S0003055410000514
- Blackstone, W. (1765).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Vol. 4). Oxford: Clarendon Press.
- Blanchette, I., & Richards, A. (2010). The influence of affect on higher level cognition: A review of research on interpretation, judgment, decision-making, and reasoning. *Cognition & Emotion*, 24(4), 561-595.
https://doi.org/10.1080/02699930903132496.
- Brainerd, C. J., & Reyna, V. F. (2005). The science of false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 Brewer, N., & Palmer, M. (2010). Eyewitness identification test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5, 77-96.
- Bright, S. B. (2010). The Right to Counsel in Death Penalty and Other Criminal Cases: Neglect of the Most Fundamental Right and What We Should Do About It.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25(3), 741-766.
- Brown, S. (2003). Crime and Law in Media Cultur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Bystranowski, P., Janik, B., Próchnicki, M., & Skórska, P. (2021). Anchoring effect in legal decision-making: A meta-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45(1), 1-23. https://doi.org/10.1037/lhb0000438.

- Campbell, K. M. (2022). The nature and extent of wrongful convictions. In N. A. Jackson, K. M. Campbell., & M. Pate(Eds.). *The Victimology of a wrongful conviction* (pp.23-34). Routledge.
- Cantone, J. A., Fogel, Hon. J., & Hoopes, M. (2024). Judicial Decision-Making. In M. K. Miller, L. A. Yelderman, M. T. Huss, & J. A. Cantone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Psychology and Legal Decision-Making* (pp. 49-66). chap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lson, K. A., & Russo, J. E. (2001). Biased interpretation of evidence by mock juror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7(2), 91-103. <https://doi.org/10.1037/1076-898X.7.2.91>
- Carvacho, P., Droppelmann, C., & Mateo, M. (2022). The effect of extralegal factors in decision-making about juvenile offenders in Chile: A quasi-experiment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7, 398-419. <https://doi.org/10.1177/0306624X211066839>
- Charman, S., Douglass, A. B., & Mook, A. (2019). Cognitive bias in legal decision making. In N. Brewer & A. B. Douglass, *Psychological science and the law* (pp.30-53). The Guilford Press.
- Cleary, H. M. D. (2017). Applying the lesson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to the study of juvenile interrogations: New directions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3(1), 118-130. <https://doi.org/10.1037/law0000120>
- Cohen, J., Mutz, D., Price, V., & Gunther, A. (1988). Perceived impact of defamation: An experiment on third-person effects. *Public Opinion Quarterly*, 52(2), 161-173. <https://doi.org/10.1086/269092>
- Cohen, J., Mutz, D., Price, V., & Gunther, A. (1988). Perceived impact of defamation: An experiment on third-person effects.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52(2), 161-173.
- Dervan, L. E., & Edkins, V. A. (2013). The innocent defendant's dilemma: An innovative empirical study of plea bargaining's innocence problem.

-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03(1), 1-48.
- Drizin, S. A., & Leo, R. A. (2004). 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s in the Post DNA World. *North Carolina Law Review*, 82, 891-1007.
- Dror, I.E., & Hampikian, G. (2011). Subjectivity and bias in forensic DNA mixture interpretation. *Science & Justice*, 51(4), 204-8.
- Eisenberg, T., & Heise, M. (2015). Plaintiphobia in state courts redux? An empirical study of state court trials on appeal.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12(1), 100-127.
- Elek, J. K. (2019) Judicial Perspectives on Emotion, Emotion Management, and Judicial Excellence in the USA. *Oñati Socio-Legal Series*, 9(5), 865-879.
- Englich, B., Mussweiler, T., & Strack, F. (2006). Playing dice with criminal sentences: The influence of irrelevant anchors on experts' judicial decision m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5), 643-653.
- Englich, B., Mussweiler, T., & Strack, F. (2006). Playing dice with criminal sentences: The influence of irrelevant anchors on experts' judicial decision m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2), 188-200.
- Eren, O., & Mocan, N. (2018). Emotional judges and unfair sentences: The effect of sentiment on judicial outcom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0(3), 171-205. <https://doi.org/10.1257/app.20160400>
- Fariña, F., Arce, R., y Novo, M. (2003). Cognitive bias and judicial decisions. In En M. Vanderhallen, G. Vervaeke, P.J. Van Koppen, y J. Goethals (Eds.), *Much ado about crime* (pp. 287-304). Bruselas: Uitgeverij Politeia NV. ISBN: D62003-8132-01.
- Feigenson, N., & Park, J. (2006). Emotions and attributions of legal responsibility and blame: A research synthesis. *Law and Human Behavior*, 30(2), 143-161. <https://doi.org/10.1007/s10979-006-9026-z>.
- Fisher, R. P., and Schreiber, N. (2017). "Interview protocols to improve eyewitness memory," in *The Handbook of Eyewitness Psychology: Memory for*

- Events, Vol. I, eds M. P. Toggia, J. D. Read, D. F. Ross, and R. C. L. Lindsa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53-80.
- Fox, C. R., & Birke, R. (2002). Forecasting trial outcomes: Lawyers assign higher probability to possibilities that are described in greater detail. *Law and Human Behavior*, 26(2), 159-173.
- Freedman, M. H. (1994).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Defense Lawyer: The Three Hardest Questions. *Michigan Law Review*, 64(8), 1469-1484.
- Garapon, A. (1996). Justice out of Court: The Dangers of Trial by Medi” In David Nelken(Ed.), *Law as Communication*, (pp.231-245). Aldershot: Dartmouth.
- Garrett, B. L. (2011). Convicting the innocent: Where criminal prosecutions go wrong.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4159/harvard.9780674060982>
- Garrett, B. L. (2020). Wrongful convictions.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3, 245-259. <https://doi.org/10.1146/annurev-criminol-011518-024739>(신민영 옮김, 2021, 오염된 재판, (주)한겨레엔)
- Garrett, B. L., & Mitchell, G. (2022). Error aversions and due process. *Michigan Law Review*, 121, 707. <https://doi.org/10.36644/mlr.121.4.error-aversions>.
- Garvey, S. P. (2000). The Emotional Economy of Capital Sentencing.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5(1), 26-73.
- Gould, J. B., Carrano, J., Leo, R. A., & Young, J. K. (2013). Predicting erroneous convictions: A social science approach to miscarriages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Greer, C., & McLaughlin, E. (2010). ‘Trial by media’: Policing, the 24-7 news mediasphere and the ‘politics of outrage’. *Theoretical Criminology*, 15(1), 23-46.
- Griffith, G., & Roth, L. (2006). DNA evidence, wrongful convictions and wrongful acquittals. NSW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Service.
- Gross, S. R., & O’Brien, B. (2008). Frequency and Predictors of False Conviction: Why We Know So Little, and New Data on Capital Cases. *Journal of*

- Empirical Legal Studies*, 5(4), 927-962.
- Guthrie, C. Rachlinski, J. J., & Wistrich, A. J. (2002). Judging by Heuristic: Cognitive illusion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Judicature*, 86(1), 44-50.
- Guthrie, C., Rachlinski, J. J., & Wistrich, A. J. (2001). Inside the Judicial Mind. *Cornell Law Review*, 86(4), 777-830.
- Haenni, R. (2012). Phenomenology of legal decision-making: Emotions as the foundation for ethical judgments. *Journal of Legal Theory*, 18(2), 211-236.
- Haire, S. B., Lindquist, S. A., & Songer, D. R. (2003). Appellate Court Supervision in the Federal Judiciary: A Hierarchical Perspective. *Law & Society Review*, 37(1), 143-67.
- Haran, U., Risen, J. L., & Gilovich, T. (2013). Overconfidence in jury decision making: The role of certaint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2), 194-199.
- Haran, U., Risen, J. L., & Gilovich, T. (2013). Overconfidence in probability and frequency judgments: A critical examin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20(2), 240-250.
- Harley, E. M. (2007). Hindsight bias in legal decision making. *Social Cognition*, 25(1), 48-63.
- Harvard Law Review. (2009). Cognitive biase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Harvard Law Review*, 122(8), 2124-2142.
- Heise, M. (2004). Criminal Case Complexity: An Empirical Perspective.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1(2), 331-369.
- Heller, K. J. (2006). The Cognitive Psychology of Circumstantial Evidence. *Michigan Law Review*, 105, 241-306.
- Hildebrand, M. M., & Najdowski, C. J. (2015). The potential impact of rape culture on juror decision making: Implications for wrongful acquittals in sexual assault trials. *Albany Law Review*, 78, 1059-1086.
- Huff, C. R. (2004). Wrongful convictions: The American experienc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46(2), 107-120.

- Huff, C. R., Rattner, A., & Sagarin, E. (1996). *Convicted but innocent: Wrongful conviction and public policy*. Sage Publications.
- Innocence Project. (2022). Annual report 2021-2022. Innocence Project. Retrieved from <https://report2022.innocenceproject.org/>
- Jennifer, T., Perillo., Saul, M., Kassin. (2011). 1. Inside Interrogation: The Lie, The Bluff, and False Confessions. *Law and Human Behavior*, doi: 10.1007/S10979-010-9244-2.
- Johnson, D. D., & Fowler, J. H. (2011). The evolution of overconfidence. *Nature*, 477(7364), 317-320.
- Joy, P. A.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ecutorial Misconduct and Wrongful Convictions: Shaping Remedies for a Broken System. *Wisconsin Law Review*, 2016(2), 399-432.
- Justice Policy Institute. (2011). System Overload: The Costs of Under-Resourcing Public Defense. Justice Policy Institute.
- Kadish, M. R., & Kadish. S. H. (1971).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Jury acquittals. *Journal of Social Issues*. 27(2), 199-217.
- Kahneman, D. (2011) *Thinking, Fast and Slow*. Penguin Books, London.
- Kassin, S. M. (2005). On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Does innocence put innocents at risk? *American Psychologist*, 60, 215-228.
- Kassin, S. M., & Gudjonsson, G. H. (2004).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ssu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2), 33-67. <https://doi.org/10.1111/j.1529-1006.2004.00016.x>
- Kassin, S. M., Dror, I. E., & Kukucka, J. (2013). The forensic confirmation bias: Problems, perspectives, and proposed solution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2(1), 42-52,
- Kassin, S. M., Tubb, V. A., Hosch, H. M., & Memon, A. (2001). On the 'general acceptance' of eyewitness testimony research: A new survey of the experts. *American Psychologist*. 56(5), 405-416.
- King, G., & Nielsen, R. (2019). Why propensity scores should not be used for matching. *Political analysis*, 27(4), 435-454.

- Klayman, J., & Ha, Y.-W. (1987). Confirmation, disconfirmation, and information in hypothesis testing. *Psychological Review*, 94(2), 211-228.
- Koehler, J. J. (1991). Explanation, imagination, and confidence in judg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0(3), 499-519.
- Kovera, M. B. (2002). The Effects of General Pretrial Publicity on Juror Decisions: An Examination of Moderators and Mediating Mechanisms. *Law and Human Behavior*, 26, 43-72.
- Kovera, M. B., & Borgida, E. (1997). Expert testimony in child sexual abuse trials: The admissibility of psychological scienc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105-129.
- Kukucka, J., & Dror, I. E. (2023). Human factors in forensic science: Psychological causes of bias and error. In D. DeMatteo & K. C. Scherr (Eds.), *The Oxford handbook of psychology and law* (online ed.). Oxford Academic.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7649138.013.36>
- Lan, C., Le, Y. H., Hoang, T. B., Nguyen, D. Q., Mai, T. S., & Luong, H. T. (2023). Wrongful convictions in Asian countrie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1-17.
- Langbein, J. H. (1979). Understanding the Short History of Plea Bargaining. *Law and Society Review*, 13, 261-272.
- Lassiter, G. D. (2010). Videotaped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What's obvious in hindsight may not be in foresight. *Law and Human Behavior*, 34(1), 41-42. <https://doi.org/10.1007/s10979-009-9202-z>
- Launay, C., & Py, J. (2017). Capturing the scene: Efficacy test of the re-enactment investigative instruction. *Journal of Forensic Practice*, 19(3), 174-189. <https://doi.org/10.1108/JFP-02-2015-0012>
- Le, L. C., Hoang, H. Y., Bui, T. H., Nguyen, Q. D., Mai, T. S., & Luong, T. H. (2023). Wrongful convictions in asian countrie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e, DOI:10.1080/01924036.2023.2188235

- Lefstein, N. (2011). Securing Reasonable Caseloads: Ethics and Law in Public Defense. American Bar Association.
- Leipold, A. D. (2005). How the pretrial process contributes to wrongful convictions.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42(4), 1123-1165.
- Leo, R. A. (2008). *Police Interrogation and American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조용환 옮김, 2014, 허위자백과 오판: 피의자신문과 형사사법의 구조, 서울: 천일).
- Lerner, J. S., Li, Y., Valdesolo, P., & Kassam, K. S. (2015). Emotion and decision mak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6(1), 799-823.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10213-115043>.
- Loftus, E. F. (2005). Distortions of Memory and the Role of Time. In A.-N. Perret-Clermont (Ed.), *Thinking time: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on time* (pp.39-44). Hogrefe & Huber Publishers.
- Loftus, E. F. (2005). Planting misinformation in the human mind: A 30-year investigation of the malleability of memory. *Learning & Memory*, 12(4), 361-366.
- Loftus, E. F., & Palmer, J. C. (1974). Reconstruction of automobile destruction: An example of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 Verbal Behavior*, 13(5), 585-589.
[https://doi.org/10.1016/S0022-5371\(74\)80011-3](https://doi.org/10.1016/S0022-5371(74)80011-3)
- Luke, T. J., Crozier, W., & Strange, D. (2017). Memory Errors in Police Interviews: The Bait Question as a Source of Misinformation.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6(3), 260-273.
- Lyon, T. D., Stolzenberg, S. N., & McWilliams, K. (2017). Wrongful acquittals of sexu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6), 805-825.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vin, Z. (2016). Wrongful convictions: A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https://doi.org/10.2139/ssrn.2899482>

- Medwed, D. S. (2012). *Prosecution Complex: America's Race to Convict and Its Impact on the Innocent*.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Moabelo, K. M. (2014). *Inconsistency in judicial decisions: The right to life in perspective*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Africa.
- Moulin, X., Xiong, R. G., Greenleaf, J., & Goldschmidt, J. (2017). Citizen attitudes toward errors in criminal justice: Implications of the declining acceptance of Blackstone's ratio.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8, 14-26.
- Mungan, M. C. (2017). The certainty versus the severity of punishment, repeat offenders, and stigmatization, *Economics Letters*, 150(C), 126-129.
- 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 (2022). Wrongful conviction. <https://doi.org/10.4324/9780367198459-reprw95-1>.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23). Wrongful Conviction: The Literature, the Issues, and the Unheard Voice. from <https://www.ojp.gov/pdffiles1/nij/251446.pdf>
- New England Innocence Project. (2017.). Eyewitness misidentification. Retrieved December 9, 2024, from <https://www.newenglandinnocence.org/eyewitness-misidentification>
- Niblett, A., & Yoon, A. H. (2015). Friendly precedent. *William & Mary Law Review*, 57(5), 1789-1820.
-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https://doi.org/10.1037/1089-2680.2.2.175>.
- O'Brien, B. (2009). Prime suspect: An examination of factors that aggravate and counteract confirmation bias in criminal investig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5(4), 315-334. <https://doi.org/10.1037/a0017881>
- Olalere, S. (2020). Issues in wrongful convictions: Procedural reform in criminal justice. *Journal of Criminology and Law*, 45(3), 112-128.
- Perillo J. T., Kassin S. M. (2011). Inside interrogation: The lie, the bluff, and

- false confessions. *Law and Human Behavior*, 35, 327-337.
- Perloff, R. M. (2013). *The Dynamic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edia and Politics in a Digital Age*. New York: Routledge.
- Poveda, T. G. (2001). Estimating Wrongful Convictions. *JUSTICE QUARTERLY*, 18(3), 689-708.
- Rachlinski, J. J. (2018). "Judicial decision-making," In E. Zamir & D. Teichman (Eds.),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p.525-565).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achlinski, J. J., & Wistrich, A. J. (2017). Judging the judiciary by the numbers: Empirical research on judge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13, 203-229.
- Redlich, A. D. (2007). Double jeopardy in the interrogation room for youths with mental illness. *American Psychologist*, 62(6), 609-611.
- Robbennolt, J. K., and Studebaker, C. A. (1999). Anchoring in the courtroom: The effects of caps on punitive damages. *Law Hum. Behav.* 23, 353-373. doi: 10.1023/A:1022312716354.
- Roberts, S., & Weathered, L. (2009). Assisting the Factually Innocent: The Contradictions and Compatibility of Innocence Projects and the Criminal Cases Review Commission.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29(1), 43-70. <https://doi.org/10.1093/ojls/gqn022>.
- Roediger, H. L., & McDermott, K. B. (1995). Creating false memories: Remembering words not presented in lis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1(4), 803-814. <https://doi.org/10.1037/0278-7393.21.4.803>.
- Saferstein, R. (2018). *Forensic Science: From the Crime Scene to the Crime Lab*, Student Value Edition. Pearson.
- Saks, M. J., & Koehler, J. J. (2005). The Coming Paradigm Shift in Forensic Identification Science. *Science*, 309, 892-895.
- Samuelson, W., & Zeckhauser, R. (1988). Status quo bias in decision making.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1(1), 7-59.

- Samuelson, W., & Zeckhauser, R. (1988). Status quo bias in decision making.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1(1), 7-59. <https://doi.org/10.1007/BF00055564>.
- Scheck, B., Neufeld, P. & Dwyer, J. (2000). Actual innocence. New York: Doubleday.
- Scherr, K. C., Redlich, A. D., & Kassin, S. M. (2020). Cumulative Disadvantage: A Psych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ow Innocence Can Lead to Confession, Wrongful Conviction, and Beyond.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5(2), 353-383.
- Simon, D. (2012). In doubt: The psychology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4159/harvard.9780674065116>.
- Simon, D., & Scurich, N. (2013). Judicial Overstating. *Chicago-Kent Law Review*, 88(2), 411-433.
- Steiker, C. S., & Steiker, J. M. (2005). The seduction of innocence: The attraction and limitations of the focus on innocence in capital punishment law and advocac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95(2), 587-624.
- Sunstein, C. R. (2003). Beyo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Pennsylvania Law Review*, 1003-1058. https://scholarship.law.upenn.edu/penn_law_review/vol151/iss3/10
- Surette, R. (2011). Media, Crime, and Criminal Justice: Images, Realities, and Policies (4th). CA: Wadsworth.
- Thaler, R. H., Kahneman, D., & Knetsch, J. L. (1991). Anomalies: The endowment effect, loss aversion, and status quo bia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1), 193-206. <https://doi.org/10.1257/jep.5.1.193>
- Thaler, R. H., Kahneman, D., & Knetsch, J. L. (1992). The endowment effect, loss aversion and status quo bias. In *The winner's curse: Paradoxes and anomalies of economic life* (pp.63-78).
- Tonry, M. (Ed.). (2012). Prosecutors and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Crime and justice*, volume 41: Prosecutors and politics: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1-3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4157), 1124-1131. <https://doi.org/10.1126/science.185.4157.1124>
- Tyler, T. R., & Huo, Y. J. (2002). Trust in the Law: Encouraging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urt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Ugazio, G., Lamm, C., & Singer, T. (2012). The role of emotions in moral psychology. *PLOS ONE*, 7(7), e4141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41419>.
- University of Michigan. (2022.). Exoneration registry tracks 10 years of data, but innocent defendants won't get day in court. Retrieved December 9, 2024, from <https://news.umich.edu/exoneration-registry-tracks-10-years-of-data-but-innocent-defendants-wont-get-day-in-court/>
- Wang, J. (2014). The political logic of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47(3), 631-669.
- Wason, P. C. (1960). On the failure to eliminate hypotheses in a conceptual task.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2(3), 129-140. <https://doi.org/10.1080/17470216008416717>
- Wason, P. C. (1960). On the failure to eliminate hypotheses in a conceptual task.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 Wells, G. L., Memon, A., & Penrod, S. D. (2006). Eyewitness Evidence Improving Its Probative Value.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7(2), 45-75.
- Westervelt, S. & Cook, K. (2010). Framing innocents: the wrongly convicted as victims of state harm. *Crime, Law, and Social Change*, 53, 259-275. DOI

10.1007/s10611-009-9231-z.

- White, W. S. (2001). Adjudication of Constitutional Fact and the Limits of Judicial Authority. *Michigan Law Review*, 91(5), 899-972.
- Wiener, R. L., Seib, H. M., & Holtje, M. (2006). Emotion and the law: A framework for inquiry. *Law and Human Behavior*, 30(3), 231-248.
<https://doi.org/10.1007/s10979-006-9025-0>.
- Wright, D. B., & McDaid, A. T. (1996). Comparing system and estimator variables using data from real line-up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0(1), 75-84. [https://doi.org/10.1002/\(SICI\)1099-0720\(199602\)10:1<75::AID-ACP364>3.0.CO;2-E](https://doi.org/10.1002/(SICI)1099-0720(199602)10:1<75::AID-ACP364>3.0.CO;2-E)
- Xiong, M. (2022). Criminal justice policies in East Asia and public support.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Law*, 10(3), cjac026.
- Zalman, M. (2016). Criminal justice system reform and wrongful conviction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7(2), 153-174.
- Zimmerman, C. (2001). From the jailhouse to the courthouse: The role of informants in wrongful convictions. In S. Westervelt & J. Humphrey (Eds.), *Wrongly convicted: Perspectives on failed justice* (pp.55-76). Newark: Rutgers University Press.
- Zorn, C. J., & Bowie, J. B. (2007). An empirical analysis of hierarchy effect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SSRN. <https://doi.org/10.2139/ssrn.987862>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s and Implications of Verdict Reversals by Courts of Appeal in Criminal Cases

Hong, Young-oh · Choi, Yi-Moon

Korea exhibits a notably high rate of appellate and Supreme Court reversals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is phenomenon fosters the expectation that an appeal may alter the outcome of a case, consequently contributing to the increased frequency of appellate filings. Such high appeal rates are associated with several systemic concerns, including diminished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prolonged litigation, inefficiencies in resource allocation among courts and legal institutions, inconsistencies in criminal sentencing, delays in finalizing verdicts, potential abuse of the appellate process, and the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imposed on litigant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judicial appeals system by analyzing both legal and extralegal factors influencing judicial reversals. By utilizing court rulings and legal professionals' career data, this research provid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ssessment of the determinants affecting appellate court decision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e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key areas:

First, the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conceptual discourse surrounding judicial reversals and wrongful convictions while examin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It also explores the cognitive biases and factual

evaluation processes that influence judicial decision-making.

Second, a statistical analysis is conducted using official judicial data sources, including the *Judicial Yearbook* published by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and the *White Paper on Crime* published by the Korea Institute of Justice. This analysis encompasses national statistics on appellate rates, reversal rates, and the rate of appellate court dismissals. Additionally, acquittal rates report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judiciary are analyzed separately due to methodological differences in their calculation.

Thir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appellate court reversals, the study constructs a comprehensive database of judicial rulings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between judges and attorneys. A specific focus is placed on rape cases, one of the most prevalent types of sexual offenses. Through an extensive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digital archives, 547 appellate cases decided between 2020 and 2021 were selected, encompassing a total of 1,094 first- and second-instance rulings. Legal career data were obtained in collaboration with *The Law Times* through an MOU with the research institution, whereby the career backgrounds of presiding judges and up to three defense attorneys per case were analyzed.

Fourth, the study evaluates the influence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appellate ruling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gender sensitivity jurisprudence. The analysis focuses on two landmark Supreme Court decisions: *Decision No. 2018Do7709* (October 25, 2018) and *Decision No. 2023Do13081* (January 4, 2024), which marked the formal adoption of gender sensitivity considerations in judicial rulings. A total of 44 rulings from 2018 and 11 rulings from 2024 were examined to assess the impact of these precedents on appellate court outcom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rends in Appellate Filings and Reversal Rates

The appeal rate for sexual offenses (rape and indecent assault) exhibited a significant increase, fluctuating from 40.0% in 2004 to 52.1% in 2019 before reaching 60.6% in 2023. In contrast,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cases experienced fluctuations, rising from 44.8% in 2004 to 47.9% in 2009, surpassing the 50% threshold in 2010 (53.5%), and reaching 59.5% in 2023.

When analyzed by appellant type, defendants' appeal rates demonstrated a declining trend, decreasing from 71.9% in 2008 to 47.8% in 2022. Conversely, prosecutors' appeal rates fluctuated, declining from 59.4% in 2008 to 48.3% in 2018 before increasing to 64.3% in 2021 and 63.0% in 2022. The high rate of prosecutorial appeals suggests dissatisfaction with sentencing leniency, potentially indicating that imposed sentences were perceived as insufficient compared to prosecutorial recommendations.

An examination of first-instance reversal rates revealed a general decline, falling from 48.2% in 2004 to 31.3% in 2017 before rising again to 42.8% in 2022 and 41.1% in 2023.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eversal rate exhibited an overall downward trend, declining from 5.0% in 2004 to 1.6% in 2023.

2. Determinants of Sentencing Disparities in Rape Cases

An analysis of first- and second-instance rulings in rape cases indicated that appellate courts were more likely to reduce sentence length rather than alter conviction status or probation rulings. Among various determinants, settlements between defendants and victims emerged as a crucial factor in appellate rulings. Cases in which defendants reached settlements with victims exhibited reduced trial complexity, and while settlements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conviction rates, they demonstrated a notable influence on sentencing outcomes.

The gender of the presiding judge in appellate courts had a minor but measurable effect on case outcomes. Specifically, cases that resulted in acquittals

in the first instance were more likely to be overturned to guilty verdicts in the second instance when the presiding judge was female. However, judicial gender did not influence sentencing type, and its effect on sentence length modific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marginal.

The presence of former high-ranking judicial officials as defense attorneys (“revolving-door lawyer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conviction reversals at the appellate level. This suggests that their legal expertise and influence may affect judicial decision-making. However, their impact on sentencing reductions or modifications was relatively limited. Furthermore, 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judges and attorneys were not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ppellate outcomes, reinforcing the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3. Determinants of Sentencing Disparities in the case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n the case of economic crimes such as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the appellate court tended to rule in favor of the defendant. Most of the cases that were found guilty in the first trial were upheld in the second trial, and while about half of the defendants who received a prison sentence in the first trial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or a reduced sentence in the second trial, the proportion of those who received a heavier sentence in the second trial than in the first trial was very low.

As for extra-legal factors, the impact of the career and background of judges and lawyers on the outcome of the ruling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re was no clear difference in the change in sentence when consider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former judge i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However, when looking at the change in the appointment of a public defender i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within individual cases, the results were favorable in the case

of a reduced sentence and suspended sentence if a public defender was appointed. In particular, if a former public prosecutor was appointed only in the first trial, the possibility of a reduced sentence in the second trial decreased. On the other hand, if a former public prosecutor was not appointed in the first trial but was appointed in the second trial,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sentence to be reduced and the percentage of suspended sentences to increase. This means that it was difficult to find a clear effect simply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presiding judge's lawyer, but it was possible to empirically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presiding judge's lawyer by considering whether the presiding judge's lawyer was appointed i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of the same case.

As with the previous rape case, the victim's agreement to the case's characteristics was a major factor in the sentence reduction, and the possibility of sentence redu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a case that had not been settled in the first instance was settled in the second instance. In particular, it was reaffirmed that whether or not the victim could recover the damag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urt's decision on the sentence in the case of economic crimes. In cases where a settlement was reached with the victim, the probability of a prison sentence being reduced to a suspended sentence increased significantly, suggesting that the court takes the settlement as a major factor in reducing the sentence.

4. Influence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Appellate Rulings: Gender Sensitivity Jurisprud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2018 and 2024 Supreme Court rulings demonstrated differing trends in appellate decision-making. In cases associated with the 2018 precedent, first-instance acquittals were frequently overturned in the appellate court, often due to reassessments of victim testimony credibility and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evidence. Conversely, cases associated with

the 2024 precedent exhibited a stronger tendency for first-instance acquittals to be upheld at the appellate level. Additionally, first-instance convictions resulting in prison sentences were more likely to be reduced to acquittals or fines in appellate proceedings under the 2024 precedent.

Although the limited number of analyzed cases poses constraints in fully delineating the causal impact of Supreme Court rulings, the data indicate that the 2018 precedent was more frequently cited in cases resulting in guilty verdicts, whereas the 2024 precedent was more commonly referenced in cases resulting in acquittals. This suggests that Supreme Court jurisprudence exerts substantive influence beyond mere legal interpretation, shaping factual determinations at the appellate level.

Conclusion

Despite the Supreme Court's 2015 policy initiative aimed at enhancing fact-finding in appellate courts, appeal rates have continued to rise, and appellate reversal rates remain elevated at approximately 40%.

Persistent issues—including inconsistencies in sentencing, delays in finalizing judgments, concerns over the abuse of appellate mechanisms, financial burdens on litigants, and expectations of favorable appellate outcomes—underscore the need for systematic judicial reforms. At a minimum,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enhance legal predictability, improve judicial efficiency, and reinforce public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judicial system.

연구총서 24-A-06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발행 |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정웅석

등록 | 제 1990-000010 호(1990. 3.2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 979-11-94631-27-9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